

2004년

증권제도동향

2005. 1

연구위원 정윤모

연구원 박기령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서 언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수많은 혁신적인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래 개혁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거래소시장·코스닥시장·선물시장으로 분리되었던 시장구조를 단일한 시장구조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부실공시·분식회계·시세조종 등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을 제정하여 자산운용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등, 증권시장 및 증권산업에 관한 법규들을 광범위하게 정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적인 경쟁을 핵심요소로 하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동안의 거시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미시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제도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종 제도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근원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찾아내고, 우리 증권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2004년에 변경된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의 확인·검토를 의무화하고, 주식선물거래시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수시공시제도를 재정비하여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공시사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관련사항을 개선하였다.

증권산업분야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확립하였고, 투자회사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도입하였다. 또한 증권회사의 일임매매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선물거래시의 일임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일임매매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요건

및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경영공시 등을 강화하여 재무 건전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증권행정감독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업무를 개선하였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조직 및 소관업무, 이사회 구성, 설립절차를 정하고 증권업협회 산하에 증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감리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투명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근거를 마련하고,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증권제도의 변경사항을 증권시장·증권산업·증권행정감독·발행기업·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감독위원회규정·증권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증권연구원의 정윤모 연구위원과 박기령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원고 정리와 편집을 담당한 김선옥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반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5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박 상 용

< 목 차 >

I. 증권시장	1
1. 주식시장	1
2. 채권시장	22
3. 파생금융상품시장	28
4. 증권예탁·결제	30
5. 기업공시	39
II. 증권산업	61
1. 증권회사	61
2. 자산운용회사	74
3. 투자자문회사	90
4. 선물회사	91
III. 증권행정감독	95
1. 법적규제기관	95
2. 자율규제기관	107
IV. 발행기업	118
1. 기업경영감시	118
2. 지원 및 관리제도	124

V. 기업구조조정	125
1. 일반기업	125
2. 금융기관	126
VI. 기 타	127

< 부록 > 규정별 변경내용

I. 법 령	137
1. 증권거래법	137
2. 증권거래법 시행령	138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39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40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42
6.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145
7.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46
8.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50
9. 선물거래법	153
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4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5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55
13. 부동산투자회사법	157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159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160
16. 법인세법	160
17. 소득세법	161
18. 증권거래세법	162
19.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163
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3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65
1.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65
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71
3. 증권업 감독규정	171
4.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175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176
6. 선물업 감독규정	184
7. 선물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187
8.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188
9.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89
1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91
1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92
1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97
13.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198
14.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00
15.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202
16.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203
17.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206
18. 은행업 감독규정	207
19.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208

Ⅲ. 증권거래소 규정	210
1. 업무규정	210
2. 업무규정 시행세칙	211
3.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215
4. 유가증권 상장규정	216
5.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219
6. 상장법인 공시규정	221
7.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228
8.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232
9. 공정공시제도 운영기준	234
Ⅳ. 증권업협회 규정	235
1.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35
2.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237
3.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241
4.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2
5.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245
6.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47
7.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248
8.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249
9.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50
10.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257
11.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관한 규정	258

12. 증권전문인력 시험에 관한 규정	259
13.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260

V. 증권예탁원 263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63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65
3.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66
4.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67
5.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267
6.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268
7.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269
8.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	270
9. 일반사무수탁업무규정	270
10. 수익자명부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1

I. 증권시장

1. 주식시장

가. 발행시장

○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의무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5조의8 : 2004/4/1 개정·시행)

— 대표이사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다음의 사실을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함

-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기재 또는 허위표시가 없다는 사실
-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

○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제도 적용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조의3 : 2004/4/1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에 대하여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모집·매출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일괄신고서 제출을 허용

나. 유통시장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증권거래법 시행령 83조의15 : 2004/4/1 개정, 7/1 시행)
 -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시간외바스켓매매 가격범위 확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32조의2 2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시간외바스켓 매매의 가격범위를 종가기준 $\pm 7\%$ 이내의 가격으로 확대 (당일의 상·하한가 이내)하고 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 의한 매매를 허용

- 위탁증거금 징수특례 적용 예외근거의 신설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70조의2, 80조 2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공매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결제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면, 위탁증거금 징수특례(위탁증거금 100%를 3개월간 징수)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회원에 대한 통보의무도 면제
 - 특례규정 미적용시, 회원에게 관련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부여

- 미수계좌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주문 제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66조 4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해 장개시전 시간외시장매매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미수정리를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되어 결제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문수탁을 허용

○ 정리매매채권의 대응증권 지정 제외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70조 2항 2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정리매매대상 상장채권을 대응증권지정대상에서 제외

○ 상장지수펀드의 유동성공급호가 관련규정 이관 및 정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4/7/26 개정, 8/2 시행)

- 상장지수펀드의 유동성공급호가에 관한 규정 중 매매수량단위에 관한 규정을 업무규정시행세칙으로 이관 (7조의2)
- 호가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의 여부를 표시하고, 유동성공급호가의 경우 조건(IOC, FOK) 부여를 제한 (9조, 11조)

○ 외국인 투자자집단에 대한 심리업무기반 강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4/7/26 개정, 8/2 시행)

- 외국인 투자자집단이 대표투자자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제출시에 대표투자자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9조 : 2004/10/1 시행)
-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의 계좌정보 및 배분내역, 회원 등의 명의로 투자등록한 경우 그 계산주체인 외국인의 기본정보 등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94조)

- 시간외바스켓매매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산정 근거마련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37조의2 : 2004/7/26 개정, 8/2 시행)
 - 시간외바스켓매매의 경우에도 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 의한 매매를 허용함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산정규정을 준용

- 간접투자기구의 운용대상 다양화에 따른 대용증권제도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71 ~ 73조, 76조, 76조의2, 78조 : 2004/7/26 개정, 8/2 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해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용증권의 인정범위를 확대
 -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은 대용증권지정에서 제외

-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등 감리종목지정제도 개선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86조, 87조 : 2004/7/26 개정, 8/2 시행)
 - 감리종목지정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감리종목지정요건 중 “30일 중 최고가격” 요건을 삭제
 - 일반감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우선주감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감리종목 지정요건을 우선적용
 - 이원화되어 있는 감리종목지정 해제요건의 단순화
 - 감리지정종목으로서, 감리종목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서 당일 종가가 3일전의 날의 종가 미만인 경우

- 최유리·최우선 지정가호가의 정정근거 신설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13조 2항 1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최유리·최우선 지정가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 수량의 정정 및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매매거래중단시의 매매거래 재개시간 단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26조 : 2004/9/22 개정, 10/1 시행)
 - 풍문으로 인한 매매거래중단의 경우 조회결과를 공시한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
 - 다만, 공시시점이 당일 장개시 전인 경우 장개시후 30분 경과시 매매거래재개, 장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재개

- 고가 종목의 매매수량단위 하향조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21조의2 : 2004/10/19 개정, 12/20 시행)
 - 10만원 이상 고가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를 1주로 인하함
 - 매매수량단위의 변경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기준
 - 호가일에 배당락·권리락 등으로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기준
 - 시가기준가 종목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되, 신규상장종목은 10주로 함

- 우량종목의 대응증권 사정비율 상향조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74조 : 2004/10/19 개정, 12/20 시행)
 - KOSPI 50을 구성하는 우량종목의 대응증권 사정비율을 인상
 - 종래 70% → 현행 80%
 - 이 비율 내에서 증권회사가 사정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선박투자회사의 상장기준 마련 (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 11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선박투자회사법의 인가를 받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 선박운항회사와 임대(대선)계약을 체결하고
 - 주식분산요건(모집·매출 30% 이상 및 주주수 30명 이상)을 충족할 것

- 선박투자회사의 관리종목지정기준 (유가증권 상장규정 42조의2 3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주주에게 수입의 미분배,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부적정,
공시의무 위반시

- 선박투자회사의 상장폐지기준 (유가증권 상장규정 37조 3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2년 연속 주주에게 수입의 미분배, 해산사유 해당, 업무 전부의 정지,
2년 연속 사업보고서 미제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부적정, 공시
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재차 공시의무 위반시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SOC펀드)의 상장요건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의4 1항 3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SOC펀드)로서, 모집·매출실적이 10% 이상이고 주주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 국내의 동시공모 퇴출요건 (유가증권 상장규정 37조 1항 7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국내의 동시공모상장시 진입과 동일하게 분산퇴출기준 적용예외를 인정

○ 공시규정의 별점제 도입사항 반영 (유가증권 상장규정 37조 1항 12호, 42조의2 1항 10호·4항 3호 : 2004/7/26 개정, 10/1 시행)

- 공시규정에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별점제 도입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을 “회수”에서 “점수”로 전환

- 별점 20점(종전 2회) : 관리종목 지정
- 별점 30점(종전 3회) : 상장폐지

○ 상장지수펀드의 상장폐지우려예고제도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42조의2 1항 5호·2항 4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상장지수펀드의 빈번한 괴리율 요건미달 공시로 인한 신뢰저하 방지

- 괴리율 3% 초과 1일 → 5일 연속 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괴리율 3% 초과일수가 10일 이상

○ 신규상장요건 중 부채비율 요건 현실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 1항 5호
가목, 8항 4호 가목 : 2004/12/27 개정 · 시행)

— 상장법인의 부채비율 감소현상 등을 감안하여 부채비율 적용기준 및 적용배율을 개선하여 부채비율 요건을 현실화

- 부채비율 적용기준을 동업종 평균부채비율과 전체 주권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 중 높은 비율로 변경(다만, 5사 이하인 경우에는 종래와 동일하게 전체 주권상장법인의 평균부채비율 적용)
- 적용 부채비율을 동업종 (전체)평균의 1.5배에서 2배로 확대

기 존	개 정
동업종 소속 6사 이상 : 업종평균 × 1.5배 미만	동업종 소속 6사 이상 : MAX(업종평균, 전체평균) × 2배 미만
동업종 소속 5사 이하 : 전체평균 × 1.5배 미만	동업종 소속 5사 이하 : 전체 평균 × 2배 미만

○ 회사정리 · 화의 절차진행 법인의 상장폐지제도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부칙 4조 2항 : 2004/12/27 개정 · 시행)

— 회사정리 · 화의절차 진행으로 퇴출이 유예되고 있는 법인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을 유지하여 자구기회를 부여

-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우량법인 등 투자적격성이 인정되는 법정관리 · 화의 기업에 대하여는 상장을 유지(관리종목으로 지정)

— 2005년 3월 31일(12월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하여, 200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상장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상장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

기 존	개 정
신규 법정관리·화의기업 : 즉시 퇴출	변경내용 없음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2004년 말까지 상장폐지 유예 : 2004년 말까지 미종결시 상장폐지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2005년 3월 31일까지 상장폐지 유예 : 200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상장요건 미충족시 상장폐지

○ 신규상장 심사수수료의 부과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 3항, 별표 : 2004/5/3 개정, 6/1 시행)

— 부과시기 : 예비심사 청구시

— 부과금액 : 500만원

-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주권의 신규상장을 하는 경우, 신규상장수수료를 면제 또는 신규상장심사수수료를 공제한 신규상장수수료를 부과

○ 변경상장수수료 부과기준의 명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 2004/5/3 개정, 6/1 시행)

— 감사 및 액면분할 등 변경상장의 사유가 다수이더라도 변경상장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1건의 수수료를 징수

- 변경상장수수료는 1건당 100만원

- 선박투자회사의 상장신청서, 신고사항 및 상상수수료 관련 규정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조의12, 10조의4 3항, 별표, 별지4-4호 : 2004/7/28 개정, 8/2 시행)
 - 선박투자회사주권은 일반주권 상상수수료 및 연부과금의 1/3만 징수

- 공시관련벌점제 도입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시기 관련규정 정비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7조 1항 10호 : 2004/7/28 개정, 10/1 시행)
 - 공시규정의 벌점제 도입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시기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에서 벌점부과일로 변경

- 국내외 동시공모상장 관련절차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조의6 3호 : 2004/7/28 개정, 8/2 시행)
 - 국내외 동시공모상장시, 외국에서 발행하는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확인을 상장일 전일까지로 하여, 국내외 동시공모시 상장시기를 일치시킴

- 주권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서식의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1호, 1-1호 서식 : 2004/10/27 개정 · 시행)
 - 주권 예비상장심사청구법인의 예비상장심사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및 주요항목별 세부내용요약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중합의견 등을 첨부

○ 거래소의 직접공시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상장법인 공시규정 20조의2 1항 2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 결의 및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직접 공시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30분간) 근거 마련

○ 매매거래정지 예외기준의 명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2항 : 2004/9/1 개정, 10/1 시행)

- 매매거래정지사유* 중 경미한 공시의무위반사항**에 해당하여 부과별점이 낮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동 사유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매매거래정지(1일간) 대상에서 제외

* 매매거래정지사유 : 공시변복·변경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중요내용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경미한 공시의무위반사항 : 공정공시, 자진공시, 기공내용의 변동신고 사항 위반 및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

○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조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3항 1호 : 2004/9/1 개정, 10/1 시행)

- 매매거래정지 및 중단제도 개선 검토에 따라, 기업의 중요내용 공시(불성실공시 지정예고 포함)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 1시간 → 30분

•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한 최소기간으로 단축하여, 투자자의 현금성 제한을 최소화

-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련된 공시사항 등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의 근거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1항 3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검찰고발·통보) 및 검찰기소사항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의 근거 마련
 - 동일 사안에 대한 거래소 및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사항 중, 공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거래를 정지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기·소송허가 신청, 소송허가 결정, 기타 법원의 판결·결정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의 근거 마련
 - 동일 사안에 대한 거래소 및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사항 중, 공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거래를 정지

- 코스닥기업의 외자유치 지원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5조 1항 14호 마목 : 2004/1/30 개정, 2/2 시행)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변동 제한요건의 예외로 인정함
 - 지분변동제한 예외조치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취득일로부터 1년간 취득주식의 처분을 금지

- 벤처금융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지분변동제한 예외 적용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5조 1항 14호 자목 : 2004/1/30 개정, 2/2 시행)
 -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가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분변동 제한요건 예외를 인정
 - 단, 최대주주 변동은 금지

- 합병시 유상증자 초과분 보호예수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18조의2
1항 : 2004/1/30 개정, 2/2 시행)
 - 코스닥기업과 비공개기업과의 합병 또는 주식교환시, 비공개기업의 주
주 중 유상증자 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 신설
 - 보호예수기간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 코스닥기업의 계속성(매출액) 요건 도입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3조 1항
1호의2 : 2004/1/30 개정, 2/2 시행)
 -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30억원 미만
2사업연도 연속되면 퇴출
 - 증권거래소 : 매출액 50억 미만(관리지정), 2사업연도 연속(퇴출)

- 공시위반 퇴출기준의 완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8조 1항 6호 가목 단서
: 2004/1/30 개정, 2/2 시행)
 - 공시의무위반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 지정 이후에
발생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퇴출기준을 적용

- 최소주가 및 시가총액 관련 퇴출요건의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8조
1항 17호, 18호 : 2004/1/30 개정, 2/2 시행)
 - 관리종목 지정후 감자 등의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소주가 및 시가총액 관련 퇴출요건을 개선
 - 관리종목 지정 이후 등록취소까지의 유예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90일 동안 주가가 액면가의 30%(2004/7/1 이후 40%)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또는 3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 회계처리기준 위반 법인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조치 시점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3조 1항 : 2004/12/24 개정, 2005/1/1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법인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등록예비심사 기각 및 승인효력 불인정 등의 시점을 증선위 의결시점으로 규정

○ 최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매매거래정지조치 시점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4조 1항 : 2004/12/24 개정, 2005/1/1 시행)

-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증선위의 조치를 받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시점을 증선위의 의결시점으로 규정

○ 주금 납입사실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10조 1항 7호, 12조 1항 12호, 13조 1항 6호 : 2004/1/14 개정·시행)

- 신규등록, 변경 및 추가등록시 주금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법인 등기부등본과 별도로 제출
- 종전에는 코스닥시장의 유상증자 대상주권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변경등록을 승인

-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의 해제시기 명시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16조 1항 4호 : 2004/1/30 개정, 2/2 시행)
 - 주가가 액면가액 일정비율 이상인 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30일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
 - 시가총액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매출액(30억원)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명시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16조 1항 1호의2 : 2004/1/30 개정, 2/2 시행)
 - 지정시기 :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시기 :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해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 외국투자자의 주식취득시 보호예수증명서 징구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3조 2항 9호의2 : 2004/1/30 개정, 2/2 시행)
 - 외국투자자의 취득주식 처분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속보유확약서 및 보호예수증명서를 징구

- 변경등록시 소액공모실적보고서의 징구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13조 1항 3호 : 2004/1/30 개정, 2/2 시행)
 - 변경(추가)등록 신청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는 해당하나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실적보고서 미제출시에는 보호예수증명서를 징구하여 이에 갈음함

- 주식분산미달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근거서류 명시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15조 6항 : 2004/1/30 개정, 2/2 시행)
 — 주주명부요약표, 실질주주명부 등 근거서류를 명시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예비심사 청구법인에 대한 전문가집단 의견청취절차 근거규정 마련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9조의2 2항 : 2004/3/3 개정, 3/15 시행)
 — 등록예비심사 청구법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분석 등 전문적·객관적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집단의 구성 및 의견청취절차를 명시

- 코스닥기업의 결산기 변경시 단기 사업연도 불산입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16조 8항 : 2004/3/3 개정, 3/15 시행)
 — 협회등록법인의 결산기 변경시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및 등록취소 일부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당해사업연도를 불산입
 - 단기 사업연도 불산입 : 매출액, 경상손실, 시가총액

- 주식분산기준 관련 투자유의종목지정 근거서류 제출시기 변경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15조 5항 : 2004/3/3 개정, 3/15 시행)
 — 주식분산관련 투자유의종목 근거서류의 제출시기와 시장조치시기 사이의 간격을 줄여 시장조치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근거서류의 제출시기를 변경

-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투자유의종목 지정·해제시기 개정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15조 1항 3호 : 2004/4/6 개정·시행)

- 관계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6% 미만으로 하락하여 투자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법인이 관계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도사실이 확인된 날의 익일 투자유의종목지정을 해제함

○ 주된 영업활동정지에 해당하는 사유 추가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5조 3항 2호 : 2004/9/6 개정, 9/7 시행)

-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 제외)으로 주된 영업이 분할로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를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에 해당되는 사유로 추가
 - 분할로 인해 존속법인의 실체가 형해화되는 경우, 이를 주된 영업의 정지로 보아 관리종목 지정 및 등록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업종변경기준의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16조 2항 4호 : 2004/9/6 개정, 9/7 시행)

-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 제외)”으로 주된 영업이 분할로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존속법인의 업종변경을 불허함
 - 분할후 실체가 형해화된 존속법인이 업종변경을 통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어 퇴출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관련 업종변경시기의 통일 (유가증권 협회등록 규정 시행세칙 5조 4항 2호 : 2004/11/10 개정, 11/11 시행)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관련 업종변경시기를 “당해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로 통일

- 종전에는 업종변경시기가 분할·영업양도의 경우와 합병·영업양수의 경우에 서로 상이하여, 규제의 통일성이 부족하였음

기 준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 영업양도 시 : 당해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 합병, 영업양수 시 : 당해 사업연도 결산종료 후 (감사보고서 제출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시 : 당해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

○ 정기 업종변경 심사자료의 제출시기 명시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5조 7항 : 2004/11/10 개정, 11/11 시행)

— 정기 업종변경 대상법인은 업종분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

- 정기 업종변경(사업연도 종료후 5월의 초일)의 원활화를 위하여 업종변경에 필요한 심사자료 제출시기를 명시

○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유형의 신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2조 4호 : 2004/7/23 개정, 7/26 시행)

— 최유리지정가호가 (타방향 최우선평가가격 지정)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 최우선지정가호가 (동일방향 최우선호가가격 지정)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 매매거래수탁시 거래내용 및 통지방법의 구체화
 -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12조 3항 : 2004/7/23 개정, 7/26 시행)
 -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및 매수 등의 거래내용
 - 전화, 전보, FAX, 전자통신,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등으로 통지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적용예외 요건 신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7조의4 : 2004/1/30 개정, 2/16 시행)
 - 직전거래일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신규등록종목의 최초매매일
 - 주식병합 후 최초매매일, 재등록종목의 최초매매일
- 기준가격변동에 따른 거래량 가중평균가격(VWAP) 조정
 -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7조의3 2항 : 2004/1/30 개정, 2/16 시행)
 - 권리락, 배당락, 분배락, 주식분할, 액면분할 등으로 인해 당일의 기준가격 변동시, 전일종가와 당일기준가격의 변동비율만큼 조정된 가격으로 함

- 시간외대량매매 호가가격단위의 세분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7조의2 3항 : 2004/1/30 개정, 2/16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매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간외대량매매의 호가가격단위를 1원으로 변경

- 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담보사정가격 신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조의2 : 2004/1/30 개정, 2/16 시행)
 -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의 담보사정가격은 청약일 직전에 확정된 발행가액으로 함

-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시 IOC, FOK 체결조건 도입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조 13호 : 2004/7/23 개정, 7/26 시행)
 - 미체결잔량 즉시취소조건(IOC : Immediate Or Cancel order)
 - 당해 주문에 의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 전량즉시체결불가능시 전량즉시취소조건(FOK : Fill Or Kill order)
 - 당해주문에 의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수량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 호가입력 제한규정 신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8조의2 2항 :
2004/7/23 개정, 7/26 시행)
 -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기타 호가 중 IOC 또는 FOK 조건이 부여된 호가에 입력제한 규정을 추가
 - 동시호가 참여호가의 접수시간인 경우 호가입력을 제한

- ETF호가가격단위의 단일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 3항 :
2004/7/23 개정, 8/30 시행)
 - ETF의 호가가격단위를 5원으로 함

- 감리종목지정 해제요건 추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9조 :
2004/10/7 개정, 10/11 시행)
 - 감리종목지정일로부터 3일 이후 당일의 종가가 감리종목지정일의 전 일종가 미만인 경우에도 감리종목 지정을 해제

- 매매거래 정지 등 시장조치 개선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0조 :
2004/1/30 개정, 2/16 시행)
 -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와 관련한 매매거래 정지 등의 시장조치 근거를 마련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의 편입 및 탈퇴 공시시, 60분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후 거래 재개

- 집단소송법의 시행에 따른 중요사항 공시시, 매매거래 정지근거 신설 (협회 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0조 1항 9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일정시간(1시간) 동안 매매거래 정지

- 다만, 공시의무사항을 협회가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직접 공시하는 경우와 해당기업이 공시하는 경우 중에서 먼저 이행되는 공시에 대해서만 매매거래 정지
- 중요사항 : 소의 제기·허가신청, 소송허가·불허가 결정,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판결

- 실물펀드 상장시의 규칙 적용예외 명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2조 : 2004/9/22 개정, 10/1 시행)

— 선박펀드, 부동산펀드 등 실물펀드 상장시에는 본 규칙의 적용을 배제

2. 채권시장

가. 발행시장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인수관련규정의 삭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장 2절 : 2004/7/28 개정, 10/1 시행)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에 대한 증권회사의 인수요건은 자율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여 증권업협회로 이관

-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에 채권평가회사 추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조 : 2004/7/28 개정, 8/2 시행)
 - 채권평가회사의 유가증권 가격평가업무가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의 유가증권 공모가격의 적정성 평가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채권평가회사를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에 추가
 - 신용평가전문회사가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채권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제한

-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23조의3 1항 : 2004/3/5 개정 · 시행)
 -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등의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일반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주택저당증권 등은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한 유형이므로,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도 일반 자산의 유동화절차를 준용

- 양도등록사실확인서 발급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23조의3 3항 : 2004/3/5 개정 · 시행)
 -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시, 금융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함

○ 자산유동화관련 신용공여범위의 조정 (은행업 감독규정 3조, 별표 2 :

2004/6/30 개정, 9/30 시행)

— 자산유동화 관련 신용보강수단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

- 원화대출약정,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 후순위수익증권, 자산유동화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신용보강수단을 새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

○ 원화표시채권 발행관련 요건의 신설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4

조의2 : 2004/9/22 개정, 10/1 시행)

— 금감위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인 원화표시채권발행 관련규정이 협회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신설

— 원화표시채권발행인 요건 신설

- 무보증사채의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 유가증권을 등록발행할 것(해외판매채권의 경우 예외)
- 원화표시채권의 발행인은 외국인일 것

나. 유통시장

○ 채권유동화증권 거래조건 등의 공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18조 :

2004/3/5 제정 · 시행)

— 채권유동화거래와 관련된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

- 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미확정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 유동화된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 대출채권의 만기전 상황, 연체, 손실 현황 등을 채권유동화계획별로 매월 공시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19조 : 2004/3/5 제정 · 시행)
 -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급부를 수수하거나 이를 제의 · 요구 ·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4조 1항 : 2004/3/5 제정 · 시행)
 - 세부산정기준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50%로 함
 - * 신용환산율 :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지급보증 등 부외자산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의 지급보증대지급금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각각 50%와 100%로 함

-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산정기준 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4조 2항 : 2004/3/5 제정 · 시행)
 - 세부산정기준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잔존만기 3월 이내를 기준으로 산출

- 다만, 주택저당채권 중 채권유동화계획이 등록되었으나 유동화가 완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자산으로 인정

○ 신고시장수익률 산출방식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47조 2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신고시장수익률 산출시 가격이 높은 순으로 10%, 낮은 순으로 20%를 제외하고 평균수익률을 산출

○ 소액채권 매매제도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47조, 53조 : 2004/3/24 개정, 4/1 시행)

-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의무매수호가 금액을 상향 조정

- 당월발행 : 6억원 → 12억원
- 전월발행 : 1억원 → 2억원

- 소액채권의 동시호가 수량분배 기준금액을 변경

- 잔량 → 3억원, 5억원, 잔량순

-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의무매수호가 방법을 종류호가로 변경

○ 대응가격 산출제도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75조 4항, 77조 2항 : 2004/3/24 개정, 5/1 시행)

- ELS 및 후순위채권의 사정비율 조정

- ELS : 85% → 80%

- 후순위채권 : 기존사정비율에 추가사정비율(90%) 적용
- 보증기관 부도 등의 경우 대응증권의 기준시세 산출방법을 변경

- 자산유동화회사의 채권형저당증권 상장제도 개선
 - (유가증권 상장규정 2조 14항, 17조 1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저당증권을 수익증권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상장심사기준을 명확화

- 채권상장폐지기준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39조 6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정기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채권상장폐지기준을 완화하고 중복규정된 채권상장폐지기준을 정비

- 채권상장폐지절차의 투명성 제고 (유가증권 상장규정 35조, 43조 2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채권상장법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상장폐지 근거 마련 및 정리매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국고채권(10년)의 잔존기간 변경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3조, 4조 : 2004/11/4 개정, 12/1 시행)
 - 국고채권(10년)의 통합발행주기 확대*에 따른 잔존기간 변경
 - (종전) 9년 7월~10년 → (개정) 9년~10년
 - * 통합발행주기 확대 : 6월 → 1년

○ CD, CP 수익률 가격발견기능 제고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세칙 4조 : 2004/11/4 개정, 12/1 시행)

— 종금·은행의 CP 수익률 제출근거 마련

- 증권업계와 함께 CP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은행·종금으로부터 수익률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CP 수익률의 대표성을 강화

— CD기준물의 확대

- CD기준물을 신용평가등급이 AAA인 시중은행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 신한, 하나, 한미은행에 조흥, 우리은행이 추가됨

— 극단값 제외기준 완화를 통한 CD, CP 수익률의 변동성 확대

- 증권회사가 보고한 수익률 중 상하 각 2개 제외

→ " 각 1개 제외

3. 파생금융상품시장

○ 주식선물거래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선물거래법 31조의2, 95조의8
: 2004/1/29 개정·시행)

— 주식선물거래에 있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상장채권중 정리매매종목의 사정비율 신설 (증권거래소 선물·옵션 업무 규정 시행세칙 54조 6항 : 2004/7/29 개정, 8/2 시행)
 - 정리매매기간 동안에는 정리매매종목의 사정비율을 0%로 하여 대용증권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정리매매종목은 정리매매기간동안에는 가격변동성이 증가하고 환금성이 제약되어 담보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됨

- 우량종목의 대용증권 사정비율 상향조정 (증권거래소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53조 3항 ~ 5항, 55조 3항 : 2004/10/26 개정, 12/20 시행)
 - 대용증권의 담보가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KOSPI 50을 구성하는 우량종목은 대용증권 사정비율을 80%로 상향조정
 - 단,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사정비율을 0%로 함
 - 환금성이 우수한 종목은 담보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사정비율의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추가적인 투자수요의 창출이 억제됨

- 기존 상장주식선물거래종목에 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부칙 2조 : 2004/1/15 개정·시행)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상장주식선물거래 종목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칙에 따름

4. 증권예탁·결제

- 간접투자재산의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신설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3조, 7조의2, 12조, 13조, 23조의5, 23조의7, 23조의9, 23조의10, 23조의11 ~ 23조의23 : 2004/3/29 개정, 4/1 시행)

- 예탁대상유가증권에 “간접투자증권”을 추가

- 간접투자재산(유가증권)의 간접투자기구별 예탁

- 간접투자기구별 예탁을 위하여 간접투자기구원장을 작성·관리함
- 간접투자재산(유가증권)의 예탁 및 계좌대체의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자계좌부 및 간접투자기구원장에 기재

- 간접투자재산(유가증권)의 간접투자기구별 결제

- 간접투자재산 결제를 위하여 기관결제와 채권장외결제를 “기관투자자결제”로 통합하고, 이를 “주식결제, “채권결제” 및 “어음결제”로 구분하여 운영
- 기관투자자결제는 유가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방식으로 참가자가 정한 결제일의 오후 5시까지 처리
- 주식결제, 채권결제 및 어음결제의 업무처리절차를 정비
- 기관투자자 결제업무참가자는 결제대리인 및 운용업무대리인을 지정 가능

- 간접투자증권의 예탁·반환·계좌대체의 특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12조, 16조, 19조, 21조 : 2004/3/29 개정, 4/1 시행)

- 간접투자증권은 최초판매회사를 통하여만 예탁·반환

- 간접투자증권의 계좌대체 또는 질권의 설정·말소 청구는 최초판매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간접투자증권의 청약·환매 방법 및 절차 규정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3조의31 ~ 23조의33, 23조의35, 23조의37, 23조의38 : 2004/3/29 개정, 4/1 시행)
 - 청약·환매업무의 참가에 관한 사항을 상장지수간접투자증권 청약·환매업무 참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 상장지수간접투자증권 청약·환매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간접투자증권 청약·환매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
 - 기타 특수한 간접투자기구(모자형·전환형)의 청약·환매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간접투자증권의 권리행사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2조의2 : 2004/3/29 개정, 4/1 시행)
 - 예탁된 간접투자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예탁주권의 권리행사 방법을 준용

- 간접투자기구 예탁결제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 연기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부칙 : 2004/6/29 개정, 7/1 시행)
 - 2004년 7월 1일 → 동 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날

-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업무취급시간 변경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5조 1항, 부칙 2조 : 2004/6/29 개정, 7/1 시행)
 - 토요일은 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함
 - 업무취급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5시 (현행과 동일)

- 채권결제대금 주선거래의 시행근거 마련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8조의10 : 2004/10/5 개정, 10/12 시행)
 - 규정 23조의7에 근거하여, 증권예탁원이 채권결제대금의 차입을 주선
 - 반대매도의 약정(반대매도거래)이 있는 매수거래에 대해서만 가능

- 차입과 상환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반영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8조의11, 28조의12 : 2004/10/5 개정, 10/12 시행)
 - 결제대금 차입자는 매수채권을 대여자에게 담보로 제공
 - 대여금의 지급과 담보의 인도는 동시결제로 처리

- 위임에 의한 고객소유 유가증권의 대여 근거명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13조 2항 3호 : 2004/2/10 개정, 3/2 시행)
 - 참가자가 고객의 위임을 받아 당해 고객소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대차증권 상환연기 신청기한 및 동의기한 조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1조의7 : 2004/2/10 개정, 3/2 시행)
 - 차입자의 상환연기 신청기한 조정

- 경쟁거래 및 지정거래 :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4영업일전까지
 - 맞춤거래 : 상환일까지
 - 대여자의 상환연기 동의기한 조정
 - 경쟁거래 및 지정거래 :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까지
 - 맞춤거래 : 상환일까지
- 대차증권의 배당금 등 지급방식 개선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7조 : 2004/2/10 개정, 3/2 시행)
- 대차증권에 신주인수권증서가 부여된 경우 이를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함
 - 맞춤 거래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상호합의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맞춤거래 합의종료의 사유 및 절차의 구체화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9조의6 2항 : 2004/2/12 개정, 3/2 시행)
- 참가자의 부도·파산 또는 대차증권의 유동성 부족 등의 경우에 한하여 합의종료 인정
 - 맞춤거래 합의종료 인정시 대여자 및 차입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 담보평가방법 조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 2004/2/12 개정, 3/2 시행)
- 금융채, 회사채, 간접투자증권, 기업어음의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을 조정

- 채권대차수수료의 산정방식 변경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4조 1항 : 2004/6/10 개정, 9/13 시행)
 - 채권대차수수료에 한하여, 대차거래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2일 이상인 채권대차거래에 대해 종료일을 거래기간에서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

- 투자회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한도 폐지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22조의2 : 2004/3/29 개정, 4/1 시행)
 -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수료의 최고금액 한도(700만원)를 폐지

-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제청구내역의 판매회사 통지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29조의2, 36조 : 2004/3/29 개정, 4/1 시행)
 - 비상장·비등록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사고신고, 공시최고 신고, 압류·가압류·가처분명령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최초판매 회사에 통지
 - 이를 위하여 비상장·비등록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청구시 청구인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증권예탁원에 제출

- 투자회사 주주명부의 관리업무 추가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42조, 44조의3 : 2004/3/29 개정, 4/1 시행)
 - 비상장·비등록 투자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의 취득일자 및 최초판매 회사명을 추가로 기재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의 이익분배금, 청산분배금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에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증권예탁원은 당해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수를 위탁회사에 통지

- 규정의 명칭 변경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 2004/3/29 개정, 4/1 시행)
 -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을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간접투자재산의 간접투자기구별 예탁에 관한 규정 신설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6조의2, 12조 1항, 13조 1항 : 2004/3/29 개정, 4/1 시행)
 - 간접투자기구별 예탁을 위하여 간접투자기구 원장을 작성·관리함
 - 간접투자재산결제의 경우 계좌대체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 간접투자재산의 간접투자기구별 결제에 관한 사항 신설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 19조의2 : 2004/3/29 개정, 4/1 시행)
 -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중 채권결제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

- 콜자금과 담보의 동시결제에 대한 예외 인정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10조 3항 단서 : 2004/7/21 개정, 8/10 시행)
 - 콜자금과 담보의 동시결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담보콜거래 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시기에 이행하기로 정한 경우 분리결제를 허용

○ 상환결제시한 변경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11조 3항 : 2004/7/21 개정,
8/10 시행)

— 오후 2시 30분 → 오후 5시로 연장

○ 동시결제 예외시의 결제방법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 3항
: 2004/7/22 개정, 8/10 시행)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과 담보납부를 다른 시기에 이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분리결제를 허용

- 자금대여자는 자금차입자에게 거래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결산서류 작성시기 변경 (일반사무수탁업무규정 9조 : 2004/3/29 개정,
4/1 시행)

— 증권예탁원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위탁회사
의 이사회 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탁회사에 제출

○ 기준가격 공고·게시방법 신설 (일반사무수탁업무규정 14조 3항 : 2004/3/29
개정, 4/1 시행)

— 투자회사재산의 회계처리 결과에 따라 산출한 투자회사 주식가격을
증권예탁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게시

○ 수익자명부관리의 업무범위 (수익자명부관리 등에 관한 규정 3조 : 2004/3/29
제정, 4/1 시행)

— 수익자명부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서
증권예탁원에 부여한 업무로 규정

- 수익자명부의 작성
- 수익증권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말소, 신탁재산의 표시·말소
처리
- 사고증권의 처리
- 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
- 위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수익자명부의 작성 (수익자명부관리 등에 관한 규정 6조, 7조 : 2004/3/29
제정, 4/1 시행)

— 수익자명부는 투자신탁별로 수익자의 주소, 성명, 수익권의 좌수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함

— 증권예탁원은 기준일의 수익자별 수익권 좌수를 자산운용회사에 통지

○ 수익자명부 관련 청구·신고 (수익자명부관리 등에 관한 규정 8조 ~ 20조
: 2004/3/29 제정, 4/1 시행)

— 수익증권의 명의개서 등 청구·신고에 관한 사항을 유가증권 명의개
서대행 업무규정상 주식에 준하여 규정

- 명의개서

- 질권의 등록·말소
 - 신탁재산의 표시·말소
 - 사고·공시최고의 신고
 - 위·변조 및 제권판결시의 처리 등
- 증권예탁원은 비상장·비등록 수익증권의 명의개서 등 청구·신고내역을 판매회사에 통지
- 수익증권의 명의개서 등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

○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총회결과의 통지 (수익자명부관리 등에 관한 규정 21조, 22조 : 2004/3/29 제정, 4/1 시행)

- 증권예탁원은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일시 등을 기재한 통지서, 의결권행사서면 및 참고자료를 수익자에게 통지
- 자산운용회사 등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일시 등을 증권예탁원에 통지
-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에서 보수·수수료의 인상 및 합병에 따른 수익증권의 배정사항 등을 의결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은 그 내역을 수익자에게 통지

5. 기업공시

-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예외사항 설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87조 : 2004/3/31 개정·시행)
 - 일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거나 공정성이 확보되는 자산양수·도 등은,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더라도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범위에서 제외

- 자산양수·도 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마련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88조 ~ 90조 : 2004/3/31 개정·시행)
 - 제출시기
 -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 지체없이 신고서를 제출
 - 기재사항
 - 자산양수·도의 개요에는 목적, 양수·도 가액, 외부평가의견 등을 기재
 - 종료보고
 - 자산양수·도 종료시 지체없이 종료보고서를 제출

- 주식교환·이전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마련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77조의2, 91조 ~ 91조의3 : 2004/3/31 개정·시행)
 - 제출시기

-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에서 주식교환·이전에 관한 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서를 제출

— 기재사항 등

- 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주식교환·이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및 주총소집 통지·공고 등과 관련한 절차는 합병의 경우를 준용

○ 합병신고서의 기재사항 개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80조 2항, 3항 : 2004/3/31 개정·시행)

- 정부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합병으로서 신고서 제출 당시에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추후제출을 인정
-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서류 첨부기준을 개선하여 외부감사 의무법인으로서는 3사업연도 미경과법인은 경과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만 제출
 - 합병 상대회사가 비상장·비등록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감사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영업양수·도 신고서 기재사항 개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88조의2, 88조의3 : 2004/3/31 개정·시행)

- 영업양수·도 가액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의무화에 따라 평가의견을 신고서에 기재
- 당사회사의 재무서류는 최근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의 무법인이 아닌 경우 회사제시 재무제표)를 제출

- 분할신고서 기재사항 개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93조, 94조 : 2004/3/31 개정·시행)
 - 준용형식의 기재방식에서 직접 규정방식으로 전환
 - 분할신고서의 개요에 분할과 분할합병을 구분하여 기재

- 주식워런트증권·주가연계증권의 일괄신고서 기재사항 마련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8조 1항, 2항 : 2004/3/31 개정·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증권에 관한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을 마련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신고기준 개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71조 1항, 3항 : 2004/3/31 개정·시행)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신고를 「모든 거래기준」에서 「일정규모 이상 거래기준」으로 변경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
 -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행위 등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

- 수시공시사항의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기준으로 전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4/7/28 개정, 10/1 시행)
 - 수시공시사항 중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기준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위험감내능력과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68조의2 3항·4항, 69조 1항)

- 기존의 일률적인 비율기준을 공시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함으로써 공시의 과도한 누락을 방지

* 10% → 5%, 3%, 1% 등

- 자본잠식법인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간주하고, 기존 비율기준(10%)을 유지

— 자기자본의 산정방식 (2조 3항 : 2004/7/28 시행)

-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변동내역 중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자본금·자본잉여금의 증감액만을 자기자본에 반영

○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신설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4/7/28 개정, 10/1 시행)

— 증시환경변화에 따른 투자판단자료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항을 수시공시항목으로 신설

- 대표이사의 변경 및 횡령사고 발생에 대한 공시의무 부여 (69조 1항 2호)

— 선박투자회사의 상장에 대비, 선박투자회사의 특성이 반영된 수시공시 사항 마련 (68조 10항, 69조 1항 15호의2 : 2004/7/28 시행)

- 선박의 건조·매매·대선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여

○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조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 2004/7/28 개정, 10/1 시행)

— 수시공시사항 중 공시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제도의 취지와 괴리가 있는 항목은 중요성·적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

- 공시대상 매출액변동기준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 등
 - 출자·고정자산취득 공시의무에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한 출자·고정자산취득을 포함시켜 공시의 일관성 제고 및 공시회피행위를 방지
 -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 범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공시부담을 완화
 -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 " 10%
-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삭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1항 : 2004/7/28 개정, 10/1 시행)
- 정보가치가 낮으면서도 기업에게 공시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 등을 공시항목에서 삭제
 - 해외직접투자 공시 등 4개 항목(12개 세부사항)
 - 자본도입공시 등 14개 항목(69개 세부사항) 중 37개 세부사항
- 제조원가명세서 삭제 등 기업공시부담 완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72조 : 2004/12/30 개정·시행)
-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인 부속명세서는 기업기밀에 해당될 소지가 크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중복사항이 많아 공시정보로서의 가치는 낮으므로 삭제
 - 제조원가, 예금 등, 유가증권, 재고자산, 주요채권, 단기차입금, 주요채무, 장기차입금, 사채, 감가상각비 등, 법인세 등 11개 부속명세서
 - 수시공시를 통해 이미 공시한 주요경영사항은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주요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변경

- 국내회계기준 적용의 예외 확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7조, 48조 : 2004/12/30 개정 · 시행)
 - 외국기업의 공시서류 제출시 재무관련 사항의 기재 및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IAS) 및 미국 회계처리기준(US GAAP)을 인정함
 - 기존에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한 외국기업에만 인정하던 것을 주식, 주식예탁증서 등을 발행한 외국기업으로 확대

- 상장법인 등의 국내외 공시정보의 불균형 해소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6항 : 2004/12/30 개정 · 시행)
 -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 · 코스닥등록법인은 해외공시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에서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시장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

- 정부의 공공적 법인의 주식거래 등에 대한 금감위 승인 면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42조 1항 : 2004/12/30 개정 · 시행)
 - 공공적 법인(한국전력)이 발행한 주식을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거나 정부가 동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면제
 - 정보소유의 공공적 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치므로, 금감위의 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일괄신고서 추가서류의 첨부서류 명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조 2항 : 2004/12/30 개정 ·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과 추가연계증권이 일괄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첨부서류를 정함

○ 수시공시의무사항 중 비율공시기준의 합리성 제고

(상장법인 공시규정 4조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기업의 실질규모(위험감내능력)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기준으로 변경하되, 공시사항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비율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특별손익, 시설투자 : 자본금 10%(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대규모법인인 5%) → 자기자본 10%(대규모법인인 5%) 또는 1천억원

(2004/8/2 시행)

- 출자·출자지분 : 자본금 10%(대규모법인인 5%) → 자기자본 5%
-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면제, 손해배상소송, 금전대여, 관계회사부도 : 자본금 10%(대규모법인인 5%) → 자기자본 3%(대규모법인인 1.5%)
- 벌금·과태료, 증여·수증 : 자본금 10%(대규모법인인 5%) → 자기자본 1%(대규모법인인 0.5%)
- 자본잠식법인은 기존대로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인 5%)를 적용

○ 공시의무사항의 추가·삭제·조정 등 재정비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대두된 사항을 추가(9개 사항)

(4조 1항)

- 대표이사변경, 회계처리기준 위반·최근매출액 50억원 미만, 임직원의 횡령행위(자기자본 1% 이상) 등

—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은 삭제(53개 사항)

(4조 1항, 4조 2항)

- 해외직접투자, 기술도입기간 만료, 손자회사 편입·탈퇴, 파생상품 미결제잔액, 조세범칙 등 조사·조사결과 등의 공시사항을 삭제
- 공시사항 중 타항목과 유사한 사항은 통합하고, 공시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조정(38개 사항) (4조 1항, 4조 2항)
- 손익구조변경공시, 고정자산취득·처분 등

○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범위 축소 (상장법인 공시규정 4조의2 :

2004/7/23 개정, 10/1 시행)

-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범위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공시부담완화
 - 지주회사 소유 자회사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
→ 10% 이상으로 상향조정
 - 단, 자회사 부도·해산·회사정리절차 신청시에는, 모든 자회사를 공시대상으로 함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신고 의무사항 개선 (상장법인 공시규정 5조 :

2004/7/23 개정, 8/2 시행)

- 거래신고 대상을 “모든 거래기준”에서 “자기자본 1% 또는 10억원 이상 거래기준”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
- 자산양·수도 사항(일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양·수도는 제외) 및 출자지분처분 사항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사항에 추가

○ 비치공시 의무사항 삭제 (상장법인 공시규정 2장 3절 : 2004/7/23 개정, 10/1 시행)

— 2001년 이후 모든 신고공시사항의 완전 전자화로 실효성을 상실

○ 비율기준금액(자기자본, 매출액, 생산액, 자산총액) 및 적용기간 명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2조의2 3항·4항 : 2004/7/23 개정, 10/1 시행)

— 적용기준금액

-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최근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최근사업보고서상 감사의견 한정(범위제한)·부적정·의견거절인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

— 적용기간

- 사업연도 종료후 3월 경과시점부터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 (공시사항 중 당해사업연도의 누적금액의 누계산정기간도 동일하게 적용)

○ 적시공시체계의 구축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공시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공시시한 단축 (당일 공시화)

- 익일공시사항 중 사업목적변경, 시설투자, 출자, 차입, 회계변경, 손익구조 변경, 증여·수증 등 (25개 항목) (4조 7호의2·21호 ~ 44호)

— 익일공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익일 매매시간 종료(16시) 전까지로 공시시한을 단축 (25조)

- 특허취득, 최대주주·주요주주·계열사 변경, 파생상품 손익발생, 공사수주, 관계회사 부도 등 (12개 항목)

○ 불성실공시대상외의 합리성 제고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4/7/23 개정, 10/1 시행)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공시사항을 불성실공시대상범위에 추가 (17조 1항)

- 감자·주식소각, 분할·분할합병 : 20% 이상 비율변경시
- 고정자산처분, 공급계약체결,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금전가지급·대여, 증여, 특별손익 : 50% 이상 금액 변경시

— 조회공시 번복금지기간 단축 (6조 2항)

- 30일 → 15일

○ 공시위반에 따른 제재의 차등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공시위반사유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을 기존 공시위반회수에서 누적벌점기준으로 변경 (17조의5 2항)

- 벌점부과는 불성실공시내용의 중요도 및 공시지연정도 등에 따라 거래소가 정하는 차등화 기준을 적용
- 불성실공시내용이 허위공시이면 벌점을 가중(3~5점)하고, 공시의무 위반시점이 3년 이상 경과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면 벌점 미부과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고 기능 강화 (18조)

- 공시위반시마다 공시위반내용과 누진점수를 공시

○ 공시위원회 신설을 통한 제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20조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공시업무를 전담하는 공시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함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19조의3 : 2004/7/23 개정, 10/1 시행)

-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재발방지를 위해 공시위반 누적벌점이 10점(관리종목 지정우려단계) 또는 20점(관리종목 지정단계) 해당시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 공시위반개선계획서를 공시(1개월간)하고 미제출시 벌점(3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시책임자의 범위 확대 및 공시담당자의 복수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2조

2항, 20조의5 1항·2항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공시책임자를 등기이사가 아니라도,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자도 공시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현실화
- 공시담당자의 공시업무공백으로 인한 공시위반 방지를 위해, 공시담당자를 기존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복수화

○ 공시책임자·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20조의5 3항·

4항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게 거래소가 지정하는 교육이수의무를 부과

- 교육 미이수시 공시책임자·담당자 교체요구(불응시 3점 이내의 별점 부과근거 마련)

○ 선박투자회사의 수시공시사항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4조의4 : 2004/7/23 개정, 8/2 시행)

—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기존 주권상장법인의 수시공시의무사항 적용 외에, 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의무사항으로 함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업무수행을 하므로, 해외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서도 공시의무화

○ 선박투자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수시공시항목 신설

(상장법인 공시규정 13개 항목 : 2004/7/23 개정, 10/1 시행)

— 해외자회사 설립결정, 수입분배 결정, 선박의 건조·매매·대선계약의 체결 또는 당해계약의 변경·해지, 차입·사채발행 결정 등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공시사항의 직접공시 근거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3조의2 4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법규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아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거래소가 직접 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송의 제기, 소송허가신청 및 소송허가결정 등

- 상장법인을 상대로 소송제기시 소송관련사항을 공시의무사항으로 규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4조 1항 22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을 피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소송관련사항을 공시의무사항으로 규정
 - 소송의 제기(상소 포함) ·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결정, 소송불허가결정, 소송 취하(상소 취하 포함) · 화해 · 청구 포기(상소 포기 포함)의 허가신청 · 결정,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

-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 의결에 대한 거래소의 직접공시 근거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3조의2 3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검찰고발 · 통보)의결을 거래소가 확인한 시점에서 거래소가 직접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 의결시 조회공시요구를 통해 공시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거래소가 의결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당해 사항을 직접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가 가능하도록 함

- 거래소의 직접공시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상장법인 공시규정 20조의2 1항 2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 결의 및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직접 공시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30분간) 근거 마련

- 불성실공시 제재와 관련된 세부적인 별점부과기준 및 운용방안 마련
 -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7조의5, 별표 1호 : 2004/9/1 개정, 10/1 시행)
 - 공시위반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별점범위 내에서 공시 지연정도(미공시, 자진신고)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별점부과기준 마련
 - 중요공시위반(12점~8점) : 12점/10점/8점
 - 일반공시위반(10점~6점) : 10점/8점/6점
 - 공정공시·자진공시위반 : 5점/3점
 - 기타 경미한 공시위반 : 4점/2점
 - 동일한 사안이 2가지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별점부과
 -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시, 공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중·경감사유가 인정되면, 정해진 별점범위 내에서 별점을 조정

-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7조의2 : 2004/9/1 개정, 10/1 시행)
 - 규정상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기준을 정함
 -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기준*의 1/2 이상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 * 증자비율 등 공시내용의 20% 이상 변경 또는 투자금액 등 공시내용의 50% 이상 변경
 - 자진공시내용 중 그 비율, 금액, 수량 등을 1/2 이상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사실 및 벌점부과 사실 공표 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8조 : 2004/9/1 개정, 10/1 시행)

기 존	개 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시 : 그 명단 및 지정사유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1년간 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미제출·의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벌점 부과시 : 그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2년간 게재
< 신 설 >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점의 누계를 상시 게재

○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관련 세부사항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8조의2, 별지 1호 : 2004/9/1 개정, 10/1 시행)

—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거래소 제출요구일로부터 10일 내 (매매거래일 기준)에 거래소 제출을 의무화

- 제출일, 제출법인명
-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 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선계획서 미제출시 벌점(2점) 부과가 가능하나, 동 벌점부과로 당해 법인의 상장주권이 퇴출기준(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 등 개선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10조 : 2004/9/1 개정, 10/1 시행)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의 의무이수 교육대상 및 교육대상자 등을 명확화

이수교육대상	교육대상자	교육이수기한
① 공시책임자 교육 (거래소·협의회 개설)	공시책임자	연 1회
② 공시담당자 교육 (거래소·협의회 개설)	공시담당자	신규등록일로부터 6월 내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신규 상장일로부터 6월 내)
③ 공시관련 법규설명회 등 (거래소·협의회 개최)	1사당 공시책임 자·담당자 중 1 인 이상	연 1회 (법규설명회 등이 미개최되는 경우에는 제외)
④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공시책임자·공시 담당자	거래소가 정함
⑤ 기타 거래소가 인정하는 교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거래소가 정함

- 공시담당자 복수화에 따라 2004년 10월 1일까지 추가 신규등록하는 공시담당자는 2004년 12월말까지 공시담당자 교육이수를 의무화

— ①~④의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내에 교육을 미이수한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교체요구일로부터 1월 내에 미교체시 벌점(2점)을 부과할 수 있으나, 동 벌점부과로 당해 법인의 상장주권이 퇴출기준(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 가능

○ 매매거래정지 예외기준의 명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2항 :
2004/9/1 개정, 10/1 시행)

— 매매거래정지사유* 중 경미한 공시의무위반사항**에 해당하여 부과별
점이 낮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동 사유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매매거래정지(1일간) 대상에서 제외

* 매매거래정지사유 : 공시번복·변경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중요내용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경미한 공시의무위반사항 : 공정공시, 자진공시, 기공내용의 변동신고
사항 위반 및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

○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조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3항 1호 :
2004/9/1 개정, 10/1 시행)

— 매매거래정지 및 중단제도 개선 검토에 따라, 기업의 중요내용 공시
(불성실공시 지정예고 포함)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 1시간 → 30분

•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한 최소기간으로 단축하여, 투자자의 환금
성 제한을 최소화

○ 일수계산의 적용예외 신설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12조 2항 :
2004/9/1 개정, 10/1 시행)

—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중요정보 없음”으로 공시) 번복
금지기간(15일 이내)의 산정일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함

- 거래소의 토요일무제 실시에 따라 불성실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관련 기간 및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산정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규정 : 2004/9/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련된 공시사항 등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의 근거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1항 3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검찰고발·통보) 및 검찰기소사항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의 근거 마련
 - 동일 사안에 대한 거래소 및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사항 중, 공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거래를 정지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기·소송허가 신청, 소송허가 결정, 기타 법원의 판결·결정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의 근거 마련
 - 동일 사안에 대한 거래소 및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사항 중, 공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거래를 정지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범위 개정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2조 7항 : 2004/7/23 개정, 8/2 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서 투자회사의 이사가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와 감독이사로 구분됨에 따라, 실제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이사를 투자회사의 공시책임자의 범위에 포함

-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문서 제출방법 인정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3조의2 : 2004/7/23 개정, 8/2 시행)
 - 전자문서로 공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가 가능하도록 함

- 공시문안조정 삭제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11조 : 2004/7/23 개정, 8/2 시행)
 - 사전공시문안조정제도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의 공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삭제

- 공정공시 시한에 대한 협회중개시장의 공시규정 준용
(공정공시제도 운영기준 7조 : 2004/9/22 개정, 10/1 시행)
 - 공정공시 시한을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상의 공시시한과 일치시켜 공시규정과 운영기준의 통일을 기함

- 지주회사의 수시공시 의무사항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7호 차목 : 2004/1/30 개정, 3/2 시행)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및 탈퇴시 해당 사항을 당일 공시

-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련 수시공시 의무사항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6조의2 : 2004/1/30 개정, 3/2 시행)
 - 지주회사 소유의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인 자회사에 공시의무사항이 발생하거나, 자산총액의 5% 미만인 자회사에 부도·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익일까지 공시

- 다만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부도·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공시

자회사 비중	당일공시	익일공시
10% 이상	부도·해산 등	기타 공시사항
5% 이상	—	모든 공시사항
5% 미만	—	부도·해산 등

- 대표이사 변경관련 사항의 공시의무화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
차목 : 2004/1/30 개정, 3/2 시행)

— 기존 시장신고사항이었던 대표이사 변경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공시사항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부과

-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관련사항의 공시시한 단축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 2004/1/30 개정, 3/2 시행)

— 상법상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관련 공시사항을 익일공시사항에서 당일 공시사항으로 단축함

- 집단소송법의 시행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반영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 2004/12/24 개정, 2005/1/1 시행)

— 협회등록법인을 피고로 소가 제기된 경우 공시하도록 한 법정공시사항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

- 집단소송법상의 공시사항은 법원에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법원에서 소송허가결정을 통보한 내용임

— 집단소송법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은 협회가 직접 공시하고 기타 사항은 당해 법인이 공시하도록 함

- 기타 사항은 소송불허가 결정·항고, 소취하·화해·청구포기에 대한 법원 허가 및 확정판결 등임

○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 의결시의 공시시점 개선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4/12/24 개정, 2005/1/1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증선위가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 공시하도록 규정

- 증선위의 의결사실 확인시 당해 사항을 협회가 직접 공시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설에 따른 공시시한 개선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조 : 2004/1/30 개정, 3/2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설에 따라 당일 공시의무사항에 대한 공시의 무시한을 일부 단축

- 익일 오전 8:30까지 공시시 당일공시로 의제 → " 7:20까지 "

○ 공시번복 적용면제사항의 추가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8조 : 2004/1/30 개정, 3/2 시행)

— 등록기업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공시번복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 등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등을 요구받은 때
- 채권금융기관 관리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사실 확인시
- 자본도입·기술도입 등에 관한 계약의 해지
- 증여를 받기로 한 때

○ 매매거래 정지 등 시장조치 개선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0조 : 2004/1/30 개정, 2/16 시행)

—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와 관련한 매매거래 정지 등의 시장조치 근거를 마련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의 편입 및 탈퇴 공시시, 60분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후 거래 재개

○ 집단소송법의 시행에 따른 중요사항 공시시, 매매거래 정지근거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0조 1항 9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일정시간(1시간) 동안 매매거래 정지

- 다만, 공시의무사항을 협회가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직접 공시하는 경우와 해당기업이 공시하는 경우 중에서 먼저 이행되는 공시에 대해서만 매매거래 정지
- 중요사항 : 소의 제기·허가신청, 소송허가·불허가 결정,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판결

II. 증권산업

1. 증권회사

가. 진입규제

-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기관경고조치로 인한 결격기간 단축

(증권업 감독규정 별표 3: 2004/5/19 개정·시행)

-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주요출자자인 최대주주가 받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로 인한 결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나. 영업 및 상품규제

- 일임매매에 대한 선관의무 부담 및 금지행위 규정 (증권거래법 107조 2항 : 2004/1/29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부담

- 증권회사의 금지되는 행위를 명시

-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상대방 확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조의18 2항 5호·7호 : 2004/4/1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상대방에 외국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자 및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법인을 추가

-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미수금처리 자율화 (증권업 감독규정 4-29조 : 2004/5/19 개정·시행)
 -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증권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증권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기관고객의 경우 결제능력 자체 보다는 일시적 사유(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해외휴일 등)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음

- 신용거래시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 삭제 (증권업 감독규정 5-12조 : 2004/5/19 개정·시행)
 - 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에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의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을 삭제하여, 증권회사의 자율에 일임

- 증권회사 등의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 자율화 (증권업 감독규정 5-32조 : 2004/5/19 개정·시행)
 -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여부를 개별 증권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의무 규정을 삭제

- 자산 및 부채의 평가·산정기준의 합리화 (증권업 감독규정 별표 16 : 2004/5/19 개정·시행)
 - 채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평가시, 수익률(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아니한 것 등에 대하여는 공정가액(순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 증권회사의 장외거래실적 보고의무 폐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48조 : 2004/7/23 개정, 7/26 시행)
 - 증권회사가 매월의 매매거래실적 및 매월말 현재의 등록종목별 상품 보유현황을 협회에 보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

- 유가증권의 정의 신설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2조 : 2004/1/13 개정·시행)
 -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유가증권 정의규정을 신설
 -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 유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 위에 준하는 투자물

- 증권회사 직원의 준수 의무 및 제재사유에 선물거래법령 추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4/1/13 개정·시행)
 - 선물관련 부당권유행위 금지 (1-2조 2항)
 - 임직원의 자기매매, 일임매매 금지 (4-6조)

○ 투자상담사 용어의 변경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19조 :
2004/1/13 개정·시행)

— 선물·옵션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선물거래상담사로 통일시켜, 1·2
종 투자상담사라는 용어를 변경함

- 1종 투자상담사 → 선물거래상담사
- 2종 투자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

○ 자산관리자의 범위 축소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20조 1항 3호
: 2004/1/13 개정·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투자자문회
사·신탁회사·연기금 등의 임원 및 재산의 운용 기타 관리에 참여하
는 자

- 종전에는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모두 자산관리자
로 규정

○ 편익제공의 한도 및 절차 조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20조,
1-21조 : 2004/1/13 개정·시행)

— 섭의용품 및 식사 등의 제공한도를 상향조정

- 2만원 → 3만원

— 편익제공 사전승인권자를 완화

-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1회당 한도(20만원)를 초과하여 편익을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완화
-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 사후보고 허용

- 자기주식취득(처분) 위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 허용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15조 1항 : 2004/4/26 개정·시행)
 - 자기주식취득(처분)위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를 허용하되, 조사분석자료에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함

- 재무위험관리사에 대한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인정규정 삭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19조의2 1호 : 2004/4/26 개정·시행)
 -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을 불인정하기로 함

- 전담투자상담사의 보수환수사유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34조 2항 : 2004/4/26 개정·시행)
 - 전담투자상담사가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실현한 약정을 보수미지급(환수)대상으로 명시

- 투자일임업무의 제3자 위탁에 따른 고객보호 근거조항 마련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21조의2 : 2004/7/12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업무를 제3자(투자자문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에 대한 증권회사의 의무를 규정
 - 증권회사는 제3자에 대한 투자일임업무의 위탁 및 제3자의 교체시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
 - 제3자 위탁시 고객에게 투자일임업무 수행에 관한 절차·지침, 임직원의 성명·경력 등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함

-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 임직원의 자격요건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자문 전문인력으로 정함
- 증권회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정함

○ 애널리스트 등의 증권업협회 등록의무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18조 2항 : 2004/8/6 개정, 9/1 시행)

- 조사분석자료 작성자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승인담당자의 증권업협회 등록을 의무화
 - 적격성 심사를 거친 자만이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현재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2004년 8월 31일까지 협회에 등록하도록 함

○ 애널리스트 등의 증권업협회 등록요건 마련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22조 : 2004/8/6 개정, 9/1 시행)

- 투자상담사 및 FP에게 적용하고 있는 결격사유* 준용
 - * 투자상담사 및 FP의 등록결격사유
 -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등록거부기간 미경과자
 - 증권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기간 미경과자
 - 등록신청일 현재 타 증권회사 재직자
- 조사분석업무의 전문성 및 증권회사의 자율적인 검증관행 등을 고려하여, 애널리스트에 대한 별도의 자격시험제도는 배제함

○ 애널리스트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26조 3항 : 2004/8/6 개정, 9/1 시행)

— 애널리스트가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등록효력 정지 조치 부과

- 제재조치 부과시 일정 기간동안 애널리스트로서의 업무수행 불가

○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확인 제도 도입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13조의2 1항 ~ 3항 : 2004/8/6 개정, 9/1 시행)

—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조사분석자료에 기술하도록 함

-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당해 조사분석자료의 변경 등에 관여한 심사·승인담당자가 확인
- 애널리스트의 확인 및 기술내용 예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 ○ ○

—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에 대하여 이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가 확인·기술한 경우에 한하여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가능함

— 조사분석자료를 당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경우, 조사분석자료에 당해 제3자의 성명(또는 법인명)을 기재하여 공표

- 조사분석자료의 정의 변경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12조 1항
1호 : 2004/8/6 개정, 9/1 시행)
 - “증권회사가 작성한 것” → “증권회사 명의로 공표된 것”
 - 작성주체와 관계없이 증권회사 명의로 공표되면, 동 규정상의 조사
분석자료에 해당

- 추천의견에 대한 사후검증 제도 강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18조 3항 : 2004/8/6 개정, 2004/11/1 시행)
 - 조사분석법인에 대한 증권회사의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계
재대상 기간을 연장
 - 1년간 → 2년간
 - 증권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내역을 그래프로 표기
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비교편의성을 제고함

- 애널리스트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14조 1항 : 2004/8/6 개정, 9/1 시행)
 - 조사분석업무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에
대한 증권회사의 부당한 압력 및 권한 행사 금지를 명문화함

- 애널리스트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35조 : 2004/8/6 개정, 9/1 시행)
 - 애널리스트의 도덕성 제고 등을 위해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 2년 1회, 8시간

- 증권회사 공표내용의 신뢰도 제고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6-5조의2 1항 : 2004/11/4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공표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순위 등을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순위로 한정
 - 금감원, 협회 기타 증권관계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

-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6-5조의2 2항 : 2004/11/4 개정·시행)
 - 협회는 시장점유율 등의 순위를 발표한 증권회사에 대해 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신용거래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자율화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8조 2항 : 2004/6/10 개정·시행)
 -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던 추가담보 제공기간(4일)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

- 생계형저축의 한도증액 및 가입대상 확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4 3조 2호, 4조 3호 : 2004/8/4 개정·시행)
 - 생계형저축의 가입한도 확대 및 가입대상 확대
 - 가입한도 : 2,000만원 → 3,000만원
 - 가입대상 : 만 65세 → 만 60세

다. 재무건전성 규제

○ 증권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 신설

(증권거래법 시행령 37조의7 2항 : 2004/4/1 개정·시행)

-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에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함

○ 비상장 증권회사의 경영공시 대상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

(증권업 감독규정 2-70조 : 2004/2/5 개정·시행)

- 기존에 부실여신 발생 등 경영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었던 비상장 증권회사의 수시공시 대상에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상장 증권회사에 적용하고 있던 수시공시 대상을 추가함

-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증권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재산 등의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증권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수시공시의 내용 및 방법 등은 증권업협회장에게 위임

○ 후순위차입금의 인정요건 강화 (증권업 감독규정 2-14조, 2-15조 : 2004/5/19
개정·시행)

-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으로 인정하는 후순위차입의 인정한도를 축소하고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을 연장
 - 후순위차입금 인정한도 축소 : 순재산액의 100% → 50% 내부회계
 -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 연장 : 2년 → 5년
 - 잔존만기 5년 미만시 매년 20%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
- 실질적 자금유입이 없는 후순위차입에 대한 영업용순자본 불인정을 명시
-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한도초과가능 조항을 삭제

○ 수익증권위험액 산정방법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2-13조, 별표 8 : 2004/5/19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보유한 수익증권 중 현금화 곤란자산이 편입되어 있어 시장성이 없으면서 단기간 내에 해지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현금화 곤란자산분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시장성 없는 자산 등에 대하여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신용집중위험액 산정의 합리화 (증권업 감독규정 2-18조, 2-26조 : 2004/5/19
개정·시행)

- 인수업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신용집중위험액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위험액을 산정

- 단, 주식보유집중위험액은 주식의 유동성에 관한 위험으로 주식위험액계산에 반영하고, 예외조항 중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전환사채 등)은 동 위험액의 예외를 인정

○ 증권회사의 경영관련 보고부담 경감 (증권업 감독규정 6-2조 : 2004/5/19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월별로 보고하는 점포변동관련사항을 업무보고서의 항목에 편입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 회계계정의 세분화 및 명확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 : 2004/5/19 개정·시행)

- 경영·부수업무에 대한 회계의 집중 및 계정과목의 세분화
 - 자산관리수수료 →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으로 세분화
 - 대출채권매각이익 → 영업외수익항목에서 영업수익항목으로 변경
- 증권미수금을 주식·채권·선물옵션 미수금으로 세분화

○ 환율변동위험이 없는 외화표시자산·부채는 외국환포지션 관리대상에서 제외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5조의2 1호 : 2004/12/1 개정, 2005/1/1 시행)

- 주가지수연계형채권(ELN) 등과 같이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산이나 부채는 외국환포지션 관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

○ 통화옵션 관련포지션 관리기준을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5조의2
2호 : 2004/12/1 개정, 2005/1/1 시행)

- 매수옵션(콜옵션)과 매도옵션(풋옵션)의 구분기준을 명시
- 금융회사의 실제 환율위험관리관행과 포지션 관리기준이 일치되도록
옵션거래의 포지션 산출방법을 변경
 - 다만,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위험관리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실제 관행은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이용한
수리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환율위험노출규모를 대상으로
위험회피(델타헤징)거래 실시

○ 증권회사의 경영건전성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절차·항목 신설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3-10조 1항 : 2004/3/3 개정, 3/15 시행)

- 증권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공시절차 및 항
목 등을 규정
 - 공시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 또는 유
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에 공시

○ 비상장·비등록 증권회사의 경영공시 강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3-10조 2항 : 2004/3/3 개정, 3/15 시행)

- 비상장·비등록 증권회사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비
상장·비등록 증권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주요경영사항을 상장·등록
증권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세부적인 공시절차 및 항목 등을 규정

- 공시사유발생시 해당 사실 혹은 관련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또는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여 공시

○ 고객재산의 투자대상범위의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4/7/12 개정·시행)

— 유가증권 → 투자자문자산

- 투자자문자산 = 투자증권(유가증권, CD 등)+파생금융상품+부동산

2. 자산운용회사

가. 진입규제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2조 4호의2, 144조의2 : 2004/10/5 개정, 12/5 시행)

—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상법상의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 허용

- 회사의 재산을 주식·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및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사원의 총수는 30인 이하

- 투자회사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도입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43조 5항·6항 : 2004/10/5 개정, 12/5 시행)
 - 투자회사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도입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함

-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의 금감위 허가·등록요건 마련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3조, 32조, 34조 : 2004/3/22 제정·시행)
 -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환매 등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은 운용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구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요건 마련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31조의2 ~ 131조의4 : 2004/12/3 개정, 12/6 시행)
 - 신문·방송·잡지광고 등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사원 모집 금지
 -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을 규정
 - 개인 : 20억원
 - 법인 : 50억원

- 자산운용업 등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 2004/4/20 제정·시행)
 - 은행·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업 경영허가와 자산운용회사·증권회사의 투자자문업 경영등록 심사시 적용할 주요출자자요건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만 적용 (5조 2항, 85조 별지 8호)

-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 감소 승인시 적용될 재무건전성기준 (6조 2항)
 - 감자 후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100억원) 이상,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은 200% 이상
- 신탁업겸영은행의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등록시 적용될 재무건전성 기준 (44조 3항)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8%) 이상

○ 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의 등록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47조 : 2004/4/20 제정·시행)

-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신청서에 평가체계, 평가기준 및 공시방법을 기재
- 간접투자기구간 운용성과의 비교시 비교기준을 표기하고, 평가결과 수정시 수정사실의 공시를 의무화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절차 및 첨부서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84조의2 : 2004/12/15 개정·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감위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처리절차와 첨부서류를 정함
 - 처리절차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등록사실 통지, 변경등록 신청시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을 증빙할 서류 첨부,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명령
 - 첨부서류 :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세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2조 1호 : 2004/10/22 개정, 2005/4/22 시행)

— 부동산에 대한 투자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에 따라 종류를 구분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예비인가제도 도입 (부동산투자회사법 5조 2항 : 2004/10/22 개정, 2005/4/22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6조, 11조 : 2004/10/22 개정, 2005/4/22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대상 부동산의 적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
-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 허용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제도 폐지

(부동산투자회사법 21조, 26조 2항 : 2004/10/22 개정, 2005/4/22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총자산 범위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기자본의 30% 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

나. 영업 및 상품규제

○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마련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44조의11 : 2004/10/5 개정, 12/5 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등 사원가입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집행사원 행위준칙을 제정하도록 의무화

○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및 투자회사의 「정관」의 기재사항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36조, 42조 : 2004/3/22 제정·시행)

— 투자신탁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체결하는 신탁약관과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수·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

○ 은행·보험·종금의 자산운용업무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방안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13조 ~ 117조 : 2004/3/22 제정·시행)

— 은행·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게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은행과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자산운용업무간의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정보의 공유 금지
- 은행법에 의한 업무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연계한 고객차별 대우 금지 등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마련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31조의10 : 2004/12/3 개정, 12/6 시행)

— 업무집행사원은 투자재산 운용시 불공정한 조건에 따른 거래행위 및 운용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고유재산운용에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업무집행사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

○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한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3조 : 2004/4/1 제정·시행)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함

- 해당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
- 다만, 수익증권발행 잔액이 2조원 이하인 경우, 신탁원본 가액 기준으로 4,000억원까지 수익증권 판매 가능

○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에 제공 가능한 정보의 대상 확정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11조 : 2004/4/1 제정·시행)

-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에 관한 정보, 투자증권 외의 자산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생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정보

○ 판매광고에 포함 가능한 사항의 명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17조 : 2004/4/1 제정·시행)

-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 비교광고시, 비교대상인 자산운용회사의 유형, 운용기간 및 실적, 비교기준일에 관한 사항
- 기타 판매광고 특성상 필요한 표제 및 부제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 2004/4/20 제정·시행)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시, 판매회사와 간접투자자간의 분쟁예방을 위해, 투자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이행사실을 기명날인, 녹취 및 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함 (52조 3항)

-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유지

- 부실자산은 환매연기하고 정상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에 응하는 부분환매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55조)

- 부분환매절차 : 부분환매 결정일 및 결정사유, 환매연기 자산의 비율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판매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및 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소에 게시

- 부분환매방법 : 환매연기자산과 정상자산을 분리하고, 정상자산에 대해 약관 또는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별도의 기준 가격을 산출하여 간접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
-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판매 신고전 광고 및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내 간접투자증권 판매시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 (97조, 98조, 102조)
- 자산운용회사와 계열회사간 정보제공계약 및 이해상충방지체계에 포함할 사항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23조 : 2004/4/20 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단순 매매주문 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계약 및 이해상충방지체계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정보제공계약에 포함할 사항 : 위탁계약 보수 및 계열회사가 외국 법인의 경우 대리인 선임의무
 - 이해상충방지체계에 포함할 사항 : 수탁업무 담당임·직원 지정, 동 직원의 운용업무 등 겸직금지 및 수탁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분기별 점검 등
-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71조 : 2004/4/20 제정·시행)
 - 프로그램 매매, 장내파생상품 거래 및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을 허용

○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 업무 등록관련 재무건전성 기준을 정함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 2004/6/30 개정·시행)

— 자본금 규모 : 100억원 (회사설립 최저기준) 이상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150%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 이상

○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청구일 구분의 기준시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52조의2 : 2004/12/15 개정·시행)

—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청구일 구분의 기준시간을 규정

•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간접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종료시점 이전

• 기타 간접투자기구는 17시 이전으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정하는 시점

— 판매회사는 기준시간 경과 후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가격이란 기준시간 이전에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가격

○ 은행임원의 자산운용회사 업무겸직의 범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83조의2 : 2004/12/15 개정·시행)

— 은행의 부수업무 중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우려가 있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임원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겸직이 가능

- 겸직이 금지되는 업무는 유가증권의 투자 및 대여·매출,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 기업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임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부동산투자회사법 39조의2, 47조 1항 : 2004/10/22 개정, 2005/4/22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율성 확대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외부감독과 내부통제장치를 강화

- 주주보호를 위하여 금감위가 자료제출, 보고·업무검사 등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

다. 재무건전성 규제

○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 규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44조의7 : 2004/10/5 개정, 12/5 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에 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함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투자, 또는
-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

-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규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70조 ~ 73조 : 2004/3/22 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산을 유가증권·부동산 등 실물 자산과 파생상품에 투자 가능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10%로 설정하는 등 투자자의 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제

-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정보 공시의무 부과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00조 ~ 107조 : 2004/3/22 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투자증권 등 자산의 구성내역, 간접 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기재하여 자산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시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 설정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31조의6 ~ 131조의8 : 2004/12/3 개정, 12/6 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자된 금액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기업의 경영권 참여와 SOC에 대한 투자 등에 운용하도록 의무화
 - 단기차익 목적의 유가증권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와 구별하기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 마련

-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가격산정방법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33조 : 2004/4/1 제정·시행)
 -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비상장·비등록 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비상장 위탁회사의 경영공시 대상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23조 : 2004/2/5 개정·시행)

- 기존에 부실여신 발생 등 경영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었던 비상장 위탁회사의 수시공시 대상에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상장 위탁회사에 적용하고 있던 수시공시 대상을 추가함
 -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위탁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재산 등의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수시공시의 세부공시항목 등은 투자신탁협회 기준에 위임

○ 합병·영업양수도와 관련된 자산운용회사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34조 2항, 부칙 4조 : 2004/4/20 제정·시행)

- 합병·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산운용 회사와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조치를 1년간 유예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운용관련 제도개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58조 ~ 62조, 65조 : 2004/4/20 제정·시행)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가 일시 자금예치수단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입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순자산가치의 안정성을 제고

구 분	기 존	개 정
가중평균 잔존만기	120일 (국채·통안채 제외시 90일)	90일로 단축
신용등급 요건	채권 : BBB 이상 어음 : A3 이상	상위2개 신용등급 (채권 AA 이상, 어음 A2 이상)
분산투자 요건	<신 설>	· 동일인·신용등급별 투자한도 : 최상위등급 5%, 차상위등급 2% · 동일인 투자한도 :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상위2개 신용등급 금융기관에 대한 중개콜 제외)
운용금지자산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신 설>	· 자산의 원리금이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구조설계상품, 자산의 만기 등이 미확정된 상품
위험관리 등	<신 설>	위험관리기준 제정 및 내부통제제도 구축 의무화, 질적 규제제도 도입

○ 신청서·보고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정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
규정 : 2004/4/20 제정·시행)

— 자본감소승인신청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보고서 등 신규로 도입된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정함 (6조 3항, 81조 2항)

- 각종 공시서류 등의 서식 및 작성요령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 (3조 2항, 52조 5항)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대상 자산항목의 추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84조의3 : 2004/12/15 개정 · 시행)

- 투자대상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 투자대상기업이 채권자인 금전채권,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도 운용가능자산 항목에 추가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한에 대한 예외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84조의4 : 2004/12/15 개정 · 시행)

- 사원출자 후 1년 이내에 재산의 60% 이상을 경영권참여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1항)
 -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 참여,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경영권참여 요건의 충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등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2항)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속기한 만료 등의 해산사유 발생,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에 경영권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 등을 1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3항)

-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폐지, 투자대상기업의 합병·해산·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 (4항)
- 투자증권 및 장내외 파생상품·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시 가격·시기·방법의 결정, 투자대상기업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 경영권참여 사실에 대한 신고시 첨부서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84조의6 : 2004/12/15 개정·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후 당해 사실의 금감위 보고시,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를 첨부
 - 투자대상기업의 등기부등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증빙서류, 임원의 파견·선임과 관련한 합의·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서류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 완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144조의17 : 2004/10/5 개정, 12/5 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지주회사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를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
(은행업 감독규정 49조 18호·18호의2 : 2004/12/15 개정·시행)
 -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용이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를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

-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회사로 간주 (은행업 감독규정 49조의2 : 2004/12/15 개정·시행)
 -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이나 출자총액의 30%를 초과하는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은행의 자회사로 간주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주식 등의 취득상황 보고
(은행업 감독규정 14조의3 : 2004/12/15 개정·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주식 4% 초과 취득상황 보고 (1항·3항)
 -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중심으로 한 주식보유상황의 실질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가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은행주식 4% 초과보유) 주식 4% 초과 취득상황 보고 (2항)
 - 투자목적회사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목적회사의 주식보유상황의 실질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가
 - 은행법상의 보고의무와 자산운용업법상의 보고의무를 일원화 (4항)
 - 보고의 목적 및 상대방(금감위)이 동일하므로 은행법상의 보고서식에 자산운용업법상의 보고항목을 포괄하여 일원화

3. 투자자문회사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법적 근거 변경 등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32조 ~ 145조 : 2004/3/22 제정·시행)

- 자산운용업의 일종으로 증권거래법령 등에서 규정하였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관련규정을 이관받음
- 투자의 자문·일임 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상품거래 등으로 확대
- 고객의 투자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사항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94조, 95조 : 2004/4/20 제정·시행)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요건 중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등으로, 납입자본금은 자기자본으로, 전문인력은 당해 국가전문인력요건 등으로 같음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투자일임계약체결시,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함

4. 선물회사

가. 영업 및 상품규제

○ 선물거래시 일임매매의 제한적 허용 (선물거래법 48조 3항, 4항 : 2004/1/29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선물거래에서의 일임매매를 증권거래법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
 - 거래수량, 가격 및 매매시기에 관한 결정을 일임
- 일임선물거래에 대한 선물업자는 선관주의의무 부담 및 금지행위 규정
 - 위탁자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선물거래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선물거래를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선물거래를 이용하는 행위

○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관리자 제도 운영

(선물업 감독규정 47조의2, 47조의3 : 2004/12/1 개정 · 시행)

- 점포별로 일반고객 영업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 영업관리자로 하여금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선물·옵션계좌의 개설 및 거래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영업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예방
 - 주요점검내역 : 거래내용이 고객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품유형별 거래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 여부 등

- 일중거래자 및 시스템거래자에 대한 위험 고지 (선물업 감독규정 52조의3 : 2004/12/1 개정·시행)
 - 협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없는 무모한 투자를 예방
 -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부적합한 일반고객에게 일중거래기법이나 특정시스템 거래프로그램의 이용 권유를 금지하여 일반고객을 보호

- 선물업자의 불공정거래 수탁거부를 의무화 (선물업 감독규정 52조의4 : 2004/12/1 개정·시행)
 - 선물업자로 하여금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또는 탈세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불공정거래의 주문을 거부하도록 규정
 - 선물거래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선물업자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예방

- 선물업자의 고객에 대한 손실보전행위 금지 (선물업 감독규정 52조의2 : 2004/12/1 개정·시행)
 - 선물업자로 하여금 금전제공이나 수수료 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

- 위험고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고객 확대 (선물업 감독규정 46조 : 2004/12/1 개정·시행)
 - 위험고지서 교부하지 않는 대상을 선물업자 이외에 적격기관투자자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
 - 위험고지서의 세부내용은 선물협회가 정하도록 위임

나. 재무건전성규제

- 업무보고서의 제출근거 마련 (선물업 감독규정 7조의2 : 2004/12/1 개정 · 시행)
 -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업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관련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함

- 선물업 겸영업자에 대한 보고의무 예외 인정 (선물업 감독규정 71조의2 : 2004/12/1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와 같은 선물업 겸영업자에 대해서는 선물거래법상의 보고서항이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서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보고부담을 경감

- 기초위험액 관련 경상지출비용 산정방법 개선 (선물업 감독규정 24조 : 2004/12/1 개정 · 시행)
 - 경상지출비용 산정시 대상기간을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12개월에서 당해 월을 포함하는 최근 12개월로 조정하여 감사보고서 등의 회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형자산상각비를 경상지출비용에서 차감하여 기존의 차감항목과의 형평성 유지
 - * 기초위험액 : 선물업자가 임직원의 사고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액으로, 경상지출비용의 25% 또는 유증거금의 4% 중 큰 금액

○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명칭 변경 (선물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호 :
2004/12/1 개정·시행)

—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 계정처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변경

기 존	개 정
유가증권	단기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투자유가증권	장기유가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III. 증권행정감독

1. 법적규제기관

- 금감위 소관업무의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108조, 109조 : 2004/4/20 제정·시행)
 - 금감위 소관업무 중 단순사무 집행업무와 감독실무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처리한 업무는 반기별로 금감위에 보고

-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41조 : 2004/6/1 개정·시행)
 -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금감원의 공시담당 부원장보를 추가
 -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처리사항도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므로 담당임원을 포함시킴

- 이사 개인에 대한 독립적인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 3호 Ⅱ.나, Ⅲ.1.나(1) : 2004/6/1 개정·시행)
 - 유가증권신고서 및 공개매수신고서 위반행위의 경우, 당해 법인과는 별도로 이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의 명확화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 3호 III.1.가
: 2004/6/1 개정·시행)

- 유가증권신고서 위반의 경우 기준금액을 허위기재와 미제출로 구분
 - 허위기재 :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매출가액
 - 미제출 :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

○ 과징금부과 기준율의 합리적 조정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 3호
IV.가 : 2004/6/1 개정·시행)

- 수시공시위반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위반으로 연결되는 경우, 과징금부과 기준율을 수시공시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10% → 3%

○ 과징금부과 적용률의 하향조정사유 추가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 3호
IV.나.(3) : 2004/6/1 개정·시행)

- 기업의 특성 및 투자자 보호의 실익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 적용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 위반 내용이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정기보고서 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은 경우
 - 원상회복 정도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부과로 인해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금융기관 직원문책의 일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4조 2항 : 2004/3/5 개정·시행)

-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자율조치 하도록 의뢰
- 내부통제체제가 정비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자율적인 제재능력이 미흡한 금융기관이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은 제외

○ 「주의적 경고」 및 「기관경고」 누적시 가중제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4조 : 2004/3/5 개정·시행)

- 「주의적 경고」 및 「기관경고」 누적시 가중제재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이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 주의적 경고를 받고도, 3년 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단계 가중조치
 -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영업점)영업일부 정지」 또는 「영업점폐쇄」 등으로 가중조치
 - 다만,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받은 「주의적 기관경고」는 가중요건 고려시 제재실적에서 제외

○ 제재의제제도의 폐지에 따른 감독책임 근거 명시 등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8조 1항 : 2004/3/5 개정·시행)

- 임직원의 문책사유에 「직무상 감독의무 위반책임」과 「허위보고」 등 감독당국을 기망하는 행위 포함
- 제재구분의 실익이 없는 「문책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를 「기관경고」로 일원화

○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확약서 징구 또는 양해각서 체결 활성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조의2 : 2004/3/5 개정·시행)

- 검사결과 도출된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 임원 또는 이사회로부터 확약서 징구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활성화
 - 확약서(Commitment Letter) :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임원명의로 징구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중대한 사안으로 이사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

○ 금융사고 및 부실여신 관련 기관제재기준의 상향 조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7조 1항 : 2004/3/5 개정·시행)

- 금융사고 및 부실여신 관련 「기관경고」 제재기준을 「문책기관경고」 수준으로 상향조정
- 금융사고관련 제재기준 중 손실금액 기준을 금융기관의 규모 차이를 감안하여 다단계화

- 자기자본 1조 5천억원 미만 : 100억원 초과
- " 1조 5천억원 이상 ~ 2조 5천억원 미만 : 300억원 초과
- " 2조 5천억원 이상 : 500억원 초과

—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여신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시 금액기준에 관계 없이 기관경고 조치

○ 제재의 투명성 확보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35조, 35조의2 : 2004/3/5 개정·시행)

— 제재심의회 개최전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예정내용의 사전통지 의무화

- 제재조치전 사전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절차법 위반문제를 제거

— 금융감독원장의 사전통지 등 실무절차수행과 관련하여 위임조항 신설

○ 증권·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6호 : 2004/3/5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은행)기준을 준용하되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검사실시 근거 마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3조 : 2004/5/7 개정·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검사 및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검사 및 제재규정상 검사실시 근거법규인 “금융업관련법”의 용어 정의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을 추가

○ 금융회사의 정보 보고사항 중 “거액” 개념 명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2조 : 2004/5/7 개정 · 시행)

— 금융회사의 정보 보고사항 중의 하나인 “거액의 민사소송 피소”에서 거액의 개념을 명확화함

- 자기자본의 1%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로 변경

○ 제재와 관련하여 Negative system 도입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6조 1항: 2004/12/30 개정 · 시행)

— 종래 경미한 위반사항 등 모든 위법 · 부당사항에 대하여 제재하던 것을 규정에 명시된 중대한 위법 · 부당행위만 제재

-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재대상 위법 · 부당행위

1. 금융관련법규 등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에도 취급한 여신 (출자자 대출, 동일인여신한도초과 대출, 용도의 유용 대출 등)
2. 정관 ·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부적격자(휴폐업 업체, 연체자 등)에 대한 여신 (타인명의 이용 등 우회대출 등 포함)
3. 신용조사를 부당하게 생략하거나 신용조사 또는 여신심사의 의견이 “여신 부적정”임에도 무리하게 취급한 여신
4. 적정 여신한도 초과 부당취급 (한도 미산정, 추정대출액 부풀리기, 담보물 과다평가 등 포함)
5. 신용평가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급한 여신
6.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에 있어 위법 · 부당행위를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소액·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한 임원 위주의 제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6조 2항 : 2004/12/30 개정·시행)
 - 영업점장 전결의 소액부실여신(2~3억원)에 대해 관련자까지 제재하던 것을 임원(여신협의체 여신의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한 본점 부서장 포함) 위주의 제재로 전환

- 부실여신규모에 의한 자동적 기관경고제도 폐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7조 1항 7호 라목 : 2004/12/30 개정·시행)
 - 사안별로 책임규명을 강화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경고요건에 의거하여 기관경고를 부과

- 금융감독원내 검사업무관련 업무처리절차의 명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조 : 2004/5/7 개정·시행)
 -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의 민원업무관련 검사, 검사총괄담당부서의 채심업무처리관련 검사실시 근거를 명시
 -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장 및 검사총괄 담당부서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검사실시하는 경우, 본 규정의 검사실시 관련규정을 준용

-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연결검사 실시를 규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조, 41조의2 : 2004/5/7 개정·시행)
 - 종래 내부처리절차에 의거하여 운영한 금융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에 대한 연결검사 실시를 규정화함

- 연결검사 실시계획 등을 주력자회사를 담당하는 검사부서(주검사부서)가 여타 검사부서와 협의하여 수립
- 주검사부서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검사시 검사통합기능 수행
- 연결검사실시 관련부서간 이견이 있을 경우, 검사총괄 담당부서장이 조정

○ 검사부서의 검사 사후관리 철저 유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4조 : 2004/5/7 개정 · 시행)

- 검사총괄 담당부서장은 검사 실시 합의를 검사실시 내용의 검사관리 시스템 입력여부를 확인 · 검토
 - 검사관리시스템은 검사실시 상황, 검사결과 조치내용 등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2001년도에 개발됨

○ 검사총괄부서의 재심청구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명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1조 : 2004/5/7 개정 · 시행)

- 재심청구사항 심사결과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 재검사 의뢰 가능

○ 고압적인 용어 순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8조 1항 · 2항 : 2004/5/7 개정 · 시행)

- 임점검사 착수시 금융회사에 교부되는 “검사명령서“의 명칭을 변경
 - 검사명령서 → 검사실시통보서

○ 2004년도 금융권역별 분담요율 개정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호 ~ 3호 : 2004/6/30 개정 · 시행)

— 은행 · 비은행권역은 0.6898/1만, 보험권역은 2.6303/1만, 증권 · 기타권
역은 9.1423/1만으로 결정

- 산정방식은 총부채(50%), 투입인력(40%), 총자산(5%), 영업수익(5%)
을 반영한 혼합방식 적용
- 총부채 대비 가중치는 은행 · 비은행(1) : 보험(5) : 증권 · 기타(10)

< 2004년도 금융권역별 분담요율 >

구 분	감독분담요율	법시행령상 분담요율 한도
은행 · 비은행	0.6898/10,000	3/10,000
보 험	2.6303/10,000	15/10,000
증권 · 기타	9.1423/10,000	30/10,000

○ 총부채에서 차감대상 추가 선정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3조
: 2004/6/30 개정 · 시행)

—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의 상환기간 1년 초과
차입금 중 국내운용자금

- 은행법시행령 26조 개정으로 '자본금 의제대상'에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의 상환기간 1년 초과차입금 중 국내
운용자금이 추가

— 손보험회의 부채 중 '해상 · 보세보험 특별회계'상의 부채 및 '회원회사
계정'

- ‘해상·보세보험 특별회계’상의 부채는 손보협회가 회원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이고, ‘회원회사 계정’은 일반 금융회사의 자본금 성격을 가지는 부채인 점을 감안

○ 면제대상기관의 적용기준 명확화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호 마목 : 2004/6/30 개정·시행)

—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기관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변경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외

- 생보협회 등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규정 별표 4호 가목*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정함

* 총부채 100억원 미만인 경우 분담금 면제

- 모든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어, 분담금 면제대상인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제외

○ 신고내용의 구체적인 적시요구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3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할 경우 문서·우편·Fax·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함

- 금융감독원장의 신고 접수·처리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4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금융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신고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신고접수 및 처리 내역을 증선위 위원장에게 매 분기별로 보고
 - 신고사항이 신고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조사·심사를 하지 않고 처리 종결이 가능

- 포상금의 지급대상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5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포상금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을 적발 또는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
 - 동일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별도 신고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 1인이 2건 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하나, 위반행위자 또는 종목이 중복되는 경우 동일 신고로 간주

- 포상금 지급 부적격사유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6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포상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와 무관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

○ 포상금의 지급기준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7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로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등급별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

- 기준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의 등급별로 최고 1억원 ~ 최저 200만원
- 기여율은 신고내용과 조사 및 적발기여도를 감안하여 결정

○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8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금융감독원장이 매 분기별로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그 내역을 증선위에 부의하여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선위 등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포상을 실시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9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금융감독원장은 증선위의 포상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지급
-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않음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의 비밀보호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10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또는 심사 관련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율규제기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증권거래법 2004/1/29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증권거래소 → 거래소
- 협회중개시장 → 코스닥시장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증권예탁원 → 증권예탁결제원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관련조항의 일부 삭제 (증권거래법 6장 1절, 8장 2절 : 2004/1/29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증권거래소의 조직·업무,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업무 관련사항 등을 삭제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법적 형태 및 본점 소재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4조 및 부칙 2조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 등을 합병하여 주식회사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고, 그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설치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소관업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6조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이사회 구성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8조 1항, 9조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이사장, 상임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시장감시위원장 및 12인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설치
 -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
 - 이사회 내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별로 소위원회를 설치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공익성 보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8조 1항, 9조, 13조, 14조 17조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 주요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

- 시장감시위원회의 설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7조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감리, 회원징계의 결정 등을 담당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식의 소유한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1조 1항 ~ 3항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식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5%)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금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위원회의 설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부칙 3조 : 2004/1/29 제정·시행)
 -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의 합병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위원회를 설치

- 시장 합병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절차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부칙 4조 ~ 11조 : 2004/1/29 제정 · 시행)
 -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의 합병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대차대조표 공시, 회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합병계약서 승인, 합병반대회원 또는 주주에 대한 조치, 채권자보호절차, 창립총회, 합병의 승인 및 설립등기의 순서로 진행

- 경과조치의 마련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부칙 12조 ~ 17조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간에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권리·의무관계를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선물거래, 회원,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 (부칙 12조 ~ 16조 : 2004/1/29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 (선물거래법 2장 : 2004/1/29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선물거래소의 업무, 유사시설 개설금지, 설립허가, 정관, 등기, 회원 및 임원 관련사항을 삭제

-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거래소 통보시한 변경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67조의2, 70조의3, 82조의2 : 2004/9/22 개정, 10/1 시행)
 - 매매거래수탁약관, 위탁증거금 징수기준,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하는 시한을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5일로 조정함
 - 동 세칙 시행 후 당해 약관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 공시위원회 신설을 통한 제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20조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공시업무를 전담하는 공시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함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19조의3 : 2004/7/23 개정, 10/1 시행)

-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재발방지를 위해 공시위반 누적벌점이 10점(관리종목 지정우려단계) 또는 20점(관리종목 지정단계) 해당시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 공시위반개선계획서를 공시(1개월간)하고 미제출시 벌점(3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성실공시 제재와 관련된 세부적인 벌점부과기준 및 운용방안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7조의5, 별표 1호 : 2004/9/1 개정, 10/1 시행)

- 공시위반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벌점범위 내에서 공시지연정도(미공시, 자진신고)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벌점부과기준 마련

- 중요공시위반(12점~8점) : 12점/10점/8점
- 일반공시위반(10점~6점) : 10점/8점/6점
- 공정공시·자진공시위반 : 5점/3점
- 기타 경미한 공시위반 : 4점/2점
- 동일한 사안이 2가지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벌점부과

—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시, 공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중·경감사
유가 인정되면, 정해진 벌점범위 내에서 벌점을 조정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사실 및 벌점부과 사실 공표 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8조 : 2004/9/1 개정, 10/1 시행)

기 존	개 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시 : 그 명단 및 지정사유 등을 전자공 시시스템에 1년간 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불성실공시 예 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미제출·의무교 육 미이수에 따른 벌점 부과시 : 그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 을 전자공시시스템에 2년간 게재
< 신 설 >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점의 누계 를 상시 게재

○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관련 세부사항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8조의2, 별지 1호 : 2004/9/1 개정, 10/1 시행)

—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거래소 제출요구일로부터 10일 내
(매매거래일 기준)에 거래소 제출을 의무화

- 제출일, 제출법인명
-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 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의 내용 및 일정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선계획서 미제출시 벌점(2점) 부과가 가능하나, 동 벌점부과로 당해 법인의 상장주권이 퇴출기준(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애널리스트 등의 증권업협회 등록의무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18조 2항 : 2004/8/6 개정, 9/1 시행)

- 조사분석자료 작성자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승인담당자의 증권업협회 등록을 의무화
 - 적격성 심사를 거친 자만이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현재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2004년 8월 31일까지 협회에 등록하도록 함

○ 애널리스트 등의 증권업협회 등록요건 마련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22조 : 2004/8/6 개정, 9/1 시행)

- 투자상담사 및 FP에게 적용하고 있는 결격사유* 준용
 - * 투자상담사 및 FP의 등록결격사유
 -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등록거부기간 미경과자
 - 증권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기간 미경과자
 - 등록신청일 현재 타 증권회사 재직자
- 조사분석업무의 전문성 및 증권회사의 자율적인 검증관행 등을 고려하여, 애널리스트에 대한 별도의 자격시험제도는 배제함

- 애널리스트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26조 3항 : 2004/8/6 개정, 9/1 시행)
 - 애널리스트가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등록효력 정지 조치 부과
 - 제재조치 부과시 일정 기간동안 애널리스트로서의 업무수행 불가

-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6-5조의2 2항 : 2004/11/4 개정·시행)
 - 협회는 시장점유율 등의 순위를 발표한 증권회사에 대해 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

- 기존 상장주식선물거래종목에 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부칙 2조 : 2004/1/15 개정·시행)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상장주식선물거래 종목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칙에 따름

-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공동운영을 위한 독립적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관한 규정 4조 : 2004/4/1 제정·시행)
 - 증권투자상담사 등 다른 증권전문인력자격시험의 시험관리위원회와 별개의 독립적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는 각 협회의 상근임원 2인과 협회별 개별추천위원 각 2인 및 공동위촉위원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

-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운영기준 마련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관한 규정 9조, 10조, 14조 : 2004/4/1 제정·시행)
 - 시험과목은 주가지수선물, 금리·통화선물 및 실무규약 등 3개의 대과목(12개의 세부과목)체계로 편성
 - 시험응시자격은 제한 없음
 - 시험실시방식은 1차의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함
 - 합격기준은 3개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으로서, 총점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시행 관련용어 정비 (증권전문인력 시험에 관한 규정 2조, 3조, 4조 등 : 2004/4/1 개정·시행)
 - 2종 투자상담사(Investment Counselor Series II)
 - 증권투자상담사(Certificated Securities Investment Consultant)
 - 1종 투자상담사(Investment Counselor Series I)
 - 선물거래상담사(Certificated Futures Consultant)

- 재무위험관리사 자격 관련 내용 정비 (증권전문인력 시험에 관한 규정 4조 : 2004/4/1 개정·시행)
 -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의 공동주관에 따라 재무위험관리사 시험합격자에 대한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인정제도를 폐지
 -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에서 경력요건을 폐지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4조, 5조 : 2004/11/4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분쟁조정위원회는 협회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 1인과 협회장이 위촉하는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위원으로 함

- 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 협회 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 분쟁조정의 신청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10조 ~ 13조 : 2004/11/4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협회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이유 및 상대방 등을 기재한 분쟁조정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 분쟁조정신청의 처리 절차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14조 ~ 19조 : 2004/11/4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당사자간의 합의 권고

- 협회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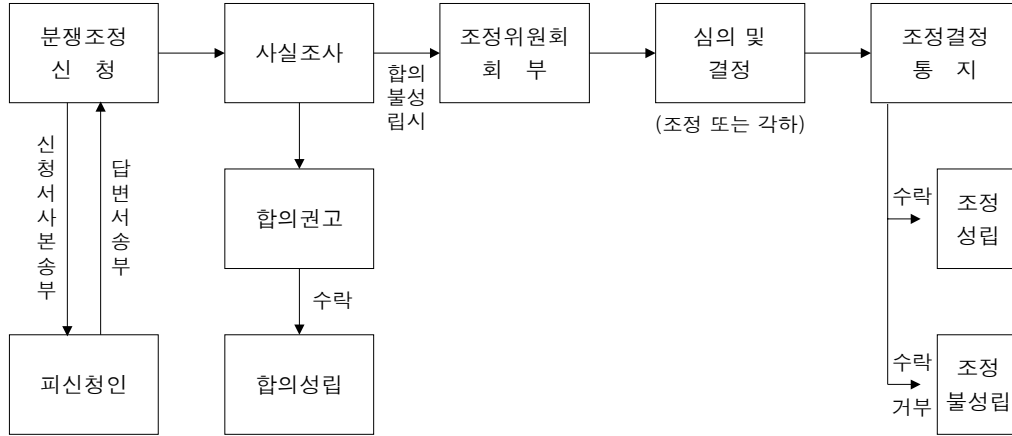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부

- 협회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회부사실, 위원명단 및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통지

—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15일 이내에서 기한연장 가능

< 증권업협회의 분쟁조정업무의 처리절차 >



○ 분쟁조정 성립 및 조정의 효력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20조, 21조 : 2004/11/4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당사자가 조정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날인하여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성립

- 당사자가 분쟁조정안 수락시, 민법상의 “사적화해계약”의 효력인정

○ 재조정신청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22조 : 2004/11/4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분쟁조정신청의 당사자는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신청 가능

IV. 발행기업

1. 기업경영감시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 명시 (증권거래법 시행령 84조의24 1항·2항 : 2004/4/1 개정·시행)
 - 임원에 대하여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5천만원 이내의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법인인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범위 확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2호 : 2004/4/1 개정·시행)
 -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기존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외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모든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협회등록 예정인 법인으로 확대

- 주기적인 회계법인 교체의무의 예외사유 마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0항·11항 : 2004/4/1 개정·시행)
 - 동일한 감사인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예외사유를 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불가피한 경우
 - 뉴욕·런던 증권거래소 등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

- 감사인 지정대상회사의 범위 확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5항 : 2004/4/1 개정·시행)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회사의 범위를 변경함
 - 신규 주권상장·협회등록 예정인 주식회사 (2006/1/1 이후 상장·등록 예정인 주식회사부터 적용)
 - 협회등록법인으로서 투자유의종목·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추가 및 전자문서 제출 허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3항 : 2004/4/1 개정·시행)
 -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회계감사 보수액, 회계감사 외의 업무에 대한 보수액, 소송현황 등을 추가
 -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강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54조 : 2004/1/14 개정·시행)
 -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건의 및 1년간 감사업무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당이사에게 주된 책임을 물어, 담당공인회계사보다 중한 조치를 함

- 상장·등록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6조의2 : 2004/6/16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

- 감사인지정 대상회사의 범위 조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0조 1항 8호, 14조 : 2004/6/16 개정·시행)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회사에 신규 상장·등록 예정인 주식회사와 협회등록법인 중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를 포함

- 감사인 지정기준일의 조기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0조 8항 : 2004/6/16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에 따른 분기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가 의무화된 법인으로서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일을 사업연도 개시 후 4월의 초일로 2개월 조기화
 - 증권선물위원회가 10조 1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 후 6월의 초일임

- 감사인 지정대상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의 감사인지정 금지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3조 3항 7호 : 2004/6/16 개정·시행)
 - 감사인 지정대상회사가 선임한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

- 감리결과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6조, 62조 3항·5항·6항 : 2004/6/16 개정·시행)
 - 감리결과 조치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감리위원회에 부의함

- 감리 재심청구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 감리결과 조치내용의 사전통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51조, 60조, 61조의2 : 2004/6/16 개정·시행)
 - 감리결과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 10일 전에 지적사항 및 조치의 내용을 조치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회계·감사 관련 용어 변경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48조 등 : 2004/6/16 개정·시행)
 - 분식회계·부실감사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개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2호 : 2004/1/14 개정·시행)
 -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 검찰통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의IV단계’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의 경우 고의IV단계도 과징금 부과 또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3월 조치 중 선택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금감위위원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인회계사가 고의 아닌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으로 위반한 경우 조치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 추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조 4항, 별지 14호 : 2004/6/16 개정·시행)
 - 회계법인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등의 보수액 현황을 추가

- 감리·조사의 회피사유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4조의2 : 2004/6/16 개정·시행)
 - 감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감리·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감리·조사를 회피하도록 함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의 정의 신설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2조 9항 : 2004/7/23 개정, 8/2 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94조 7항에 의한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

- 의결권행사내용 및 행사여부에 따른 공시사항 구체화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4조 1항 1호 ~ 3호 : 2004/7/23 개정, 8/2 시행)
 - 의결권 공시사항범위에 임원 해임 및 정관변경을 추가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모든 의결권 행사가능사항에 대하여 공시

- 의결권 행사시 :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공시
 - 의결권 불행사시 : 행사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
- 다만, 신탁회사는 신탁업법에 의거,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공시하도록 한정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범위 개정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2조 7항 : 2004/7/23 개정, 8/2 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서 투자회사의 이사가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와 감독이사로 구분됨에 따라, 실제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이사를 투자회사의 공시책임자의 범위에 포함
-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문서 제출방법 인정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3조의2 : 2004/7/23 개정, 8/2 시행)
- 전자문서로 공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가 가능하도록 함
- 공시문안조정 삭제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11조 : 2004/7/23 개정, 8/2 시행)
- 사전공시문안조정제도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의 공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삭제

2. 지원 및 관리제도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일 변경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조의12 1항 : 2004/4/1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시, 합병가액의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기준일을 변경

• 합병신고서 제출일

→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

V. 기업구조조정

1. 일반기업

-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조의2 2항·3항 : 2004/12/31 개정, 2005/4/1 시행)
 - 원활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지주회사의 건실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
 -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
 -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또는 30%로 규제

-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 1항, 7항 2호·4호 : 2004/12/31 개정, 2005/4/1 시행)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
 -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건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의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
 -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의3 : 2004/12/31 개정, 2005/4/1 시행)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및 투명성의 제고를 유도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3년 시한부 재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0조 5항 ~ 9항, 69조 1항, 부칙 2조 : 2004/12/31 개정, 2005/4/1 시행)
 -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고, 그 발동요건을 강화
 - 기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2004년 2월 4일로 유효기간이 만료

2. 금융기관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 3호, 부칙 9조 : 2004/12/31 개정, 2005/4/1 시행)
 - 계열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기존 30%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

VI. 기타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정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조 1호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 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조 1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다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됨

-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 미공개정보의 이용
- 시세조작
- 감사인의 부실감사

○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조 2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

-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 (증권관련집단소송법 5조 1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 법원의 소송관여권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0조 및 22조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고,
 -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 또는 신청에 의해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1조 3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2조 1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회사의 발행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소제기 후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소 효력에는 영향없음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어야 함
 - 소송이 구성원 전체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함
- 소송허가결정 등의 고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8조 2항·3항, 27조 4항, 35조 3항, 36조 4항, 38조 1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 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 및 제외신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8조, 37조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대표당사자 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관력을 인정하나, 이를 원하지 않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opt-out)를 하도록 함
- 소취하·화해 등의 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5조, 38조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의 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 포기, 상소 취하, 상소권 포기는 효력이 없음

○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분배업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1조 1항, 2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분배관리인을 선임
-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 업무를 담당

○ 권리의 신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9조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형사벌칙의 부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60조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1항, 3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행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동법을 적용

-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추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5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

-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8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분양주택을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36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금감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함

-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40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 있어,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3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를 정함

- 국민주택기금에서의 대출금 (일부 대출금은 제외)
- 은행, 농·수협중앙회, 보험회사 등의 주택자금대출금

○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연의 방법 및 시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4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연시기 및 방법에 관한 출연요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첨부하여 출연하도록 함

○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 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4조
1항 : 2004/3/5 제정·시행)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8% 이상

—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 100% 이상

○ 보유자산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6조, 7조 : 2004/3/5 제정·시행)

—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 학자금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지급보증대지급금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

자산건전성 분류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	0.25%	1%	20%	50%	100%

○ 경영개선지도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11조 ~ 13조 : 2004/3/5 제정 · 시행)

- 금융감독원장은 주택금융공사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경영개선을 지도할 수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직운영의 개선, 고정자산투자 및 신규출자제한, 이익배당제한, 특별대손충당금설정, 위험자산보유제한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경우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 미달이 명백한 경우

○ 내부통제체제와 위험관리체제 구축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8조 : 2004/3/5 제정 · 시행)

- 주택금융공사가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와 자산·부채관리체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함으로써 신용위험·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회계처리원칙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9조 : 2004/3/5 제정 · 시행)

- 채권유동화대상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대상이 아닌 자산과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
- 회계처리는 한국회계연구원이 정한 기업회계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 준칙을 준용

○ 경영공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17조 : 2004/3/5 제정·시행)

— 정기공시

- 경영지표 및 채권유동화업무 관련사항 등을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분기별 가결산시 2월 이내)에 공시

— 수시공시

-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의 발생, 원화유동성비율 지도기준 위반 등으로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공시

< 부록 >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1. 증권거래법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 (2004/1/29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증권거래소 → 거래소
 - 협회중개시장 → 코스닥시장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증권예탁원 → 증권예탁결제원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관련조항의 일부 삭제 (6장 1절, 8장 2절 : 2004/1/29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증권거래소의 조직·업무,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업무 관련사항 등을 삭제

- 일임매매에 대한 선관의무 부담 및 금지행위 규정 (107조 2항 : 2004/1/29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부담
 - 증권회사의 금지되는 행위를 명시
 -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2. 증권거래법 시행령

○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의무화

(5조의8 : 2004/4/1 개정·시행)

- 대표이사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다음의 사실을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함
 -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기재 또는 허위표시가 없다는 사실
 -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

○ 증권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 신설

(37조의7 2항 : 2004/4/1 개정·시행)

-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에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함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83조의15 : 2004/4/1 개정, 7/1 시행)
 -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예외사유 명시 (84조의24 1항·2항 : 2004/4/1 개정·시행)
 - 임원에 대하여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5천만원 이내의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법인인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제도 적용 (2조의3 : 2004/4/1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에 대하여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모집·매출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일괄 신고서 제출을 허용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일 변경
(36조의12 1항 : 2004/4/1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시, 합병가액의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기준일을 변경

- 합병신고서 제출일

→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

-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상대방 확대 (36조의18 2항 5호·7호 : 2004/4/1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상대방에 외국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자 및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법인을 추가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2조 4호의2, 144조의2 : 2004/10/5 개정, 12/5 시행)

—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상법상의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 허용

- 회사의 재산을 주식·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및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사원의 총수는 30인 이하

- 투자회사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도입 (143조 5항·6항 : 2004/10/5 개정, 12/5 시행)
 - 투자회사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도입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함

-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 규제 (144조의7 : 2004/10/5 개정, 12/5 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에 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함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투자, 또는
 -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

-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마련 (144조의11 : 2004/10/5 개정, 12/5 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등 사원가입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집행사원 행위준칙을 제정하도록 의무화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 완화 (144조의17 : 2004/10/5 개정, 12/5 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지주회사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의 금감위 허가·등록요건 마련

(13조, 32조, 34조 : 2004/3/22 제정·시행)

-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환매 등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은 운용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구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함

○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및 투자회사의 「정관」의 기재사항

(36조, 42조 : 2004/3/22 제정·시행)

- 투자신탁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체결하는 신탁약관과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수·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

○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규제 (70조 ~ 73조 : 2004/3/22 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산을 유가증권·부동산 등 실물 자산과 파생상품에 투자 가능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10%로 설정하는 등 투자자의 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제

○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정보 공시의무 부과 (100조 ~ 107조 : 2004/3/22
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투자증권 등 자산의 구성내역, 간접 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기재하여 자산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시

○ 은행·보험·종금의 자산운용업무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방안
(113조 ~ 117조 : 2004/3/22 제정·시행)

- 은행·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게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은행과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자산운용업무간의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정보의 공유 금지
 - 은행법에 의한 업무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연계한 고객차별 대우 금지 등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법적 근거 변경 등 (132조 ~ 145조 : 2004/3/22
제정·시행)

- 자산운용업의 일종으로 증권거래법령 등에서 규정하였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관련규정을 이관받음
- 투자의 자문·일임 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상품거래 등으로 확대
- 고객의 투자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요건 마련 (131조의2 ~ 131조의4 : 2004/12/3 개정, 12/6 시행)

— 신문·방송·잡지광고 등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사원 모집 금지

—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을 규정

• 개인 : 20억원

• 법인 : 50억원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 설정 (131조의6 ~ 131조의8 : 2004/12/3 개정, 12/6 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자된 금액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기업의 경영권 참여와 SOC에 대한 투자 등에 운용하도록 의무화

• 단기차익 목적의 유가증권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와 구별하기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 마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마련 (131조의10 : 2004/12/3 개정, 12/6 시행)

— 업무집행사원은 투자재산 운용시 불공정한 조건에 따른 거래행위 및 운용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고유재산운용에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업무집행사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

6.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한도 (3조 : 2004/4/1
제정·시행)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함

- 해당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
- 다만, 수익증권발행 잔액이 2조원 이하인 경우, 신탁원본 가액 기준으로 4,000억원까지 수익증권 판매 가능

○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에 제공 가능한 정보의 대상 확정

(11조 : 2004/4/1 제정·시행)

—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에 관한 정보, 투자증권 외의 자산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생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정보

○ 판매광고에 포함 가능한 사항의 명시 (17조 : 2004/4/1 제정·시행)

—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 비교광고시, 비교대상인 자산운용회사의 유형, 운용기간 및 실적, 비교기준일에 관한 사항

— 기타 판매광고 특성상 필요한 표제 및 부제

-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가격산정방법 (33조 : 2004/4/1 제정·시행)
 -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비상장·비등록 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7.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정의 (2조 1호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 제한 (3조 1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다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됨
 -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 미공개정보의 이용

- 시세조작
 - 감사인의 부실감사
-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제한 (3조 2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
-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 (5조 1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 법원의 소송관여권 (10조 및 22조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고,
 -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 또는 신청에 의해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11조 3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12조 1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회사의 발행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소제기 후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소 효력에는 영향없음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어야 함

— 소송이 구성원 전체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함

○ 소송허가결정 등의 고지 (18조 2항·3항, 27조 4항, 35조 3항, 36조 4항, 38조 1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 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 및 제외신고 (28조, 37조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대표당사자 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관력을 인정하나, 이를 원하지 않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opt-out)를 하도록 함

- 소취하·화해 등의 제한 (35조, 38조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의 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 포기, 상소 취하, 상소권 포기는 효력이 없음

-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분배업무 (41조 1항, 2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분배관리인을 선임
 -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 업무를 담당

- 권리의 신고 (49조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형사벌칙의 부과 (60조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일 (부칙 1항, 3항 : 2004/1/20 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행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동법을 적용

8.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법적 형태 및 본점 소재지 (4조 및 부칙 2조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 등을 합병하여 주식회사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고, 그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설치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소관업무 (6조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이사회 구성 (8조 1항, 9조 : 2004/1/29 제정, 한국
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이사장, 상임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시장감시
위원장 및 12인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설치
 -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
 - 이사회 내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별로 소위원회를
설치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공익성 보장 (8조 1항, 9조, 13조, 14조 17조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 주요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
에서 직접 규정

- 시장감시위원회의 설치 (17조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등기일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감리, 회원징계의 결정 등을 담당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식의 소유한도 (21조 1항 ~ 3항 : 2004/1/29 제정, 한
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식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5%)를 설정하고 이
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금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위원회의 설치 (부칙 3조 : 2004/1/29 제정·시행)
 -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의 합병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위원회를 설치

- 시장 합병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절차 (부칙 4조 ~ 11조 : 2004/1/29 제정·시행)
 -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의 합병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대차대조표 공시, 회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합병계약서 승인, 합병반대회원 또는 주주에 대한 조치, 채권자보호절차, 창립총회, 합병의 승인 및 설립등기의 순서로 진행

- 경과조치의 마련 (부칙 12조 ~ 17조 : 2004/1/29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등기일 시행)
 -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간에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권리·의무관계를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선물거래, 회원,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 (부칙 12조 ~ 16조 : 2004/1/29 시행)

9. 선물거래법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2장 : 2004/1/29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선물거래소의 업무, 유사시설 개설금지, 설립허가, 정관, 등기, 회원 및 임원 관련사항을 삭제

- 주식선물거래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31조의2, 95조의8 : 2004/1/29 개정·시행)
 - 주식선물거래에 있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선물거래시 일임매매의 제한적 허용 (48조 3항, 4항 : 2004/1/29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선물거래에서의 일임매매를 증권거래법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
 - 거래수량, 가격 및 매매시기에 관한 결정을 일임
 - 일임선물거래에 대한 선물업자는 선관주의의무 부담 및 금지행위 규정
 - 위탁자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선물거래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선물거래를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선물거래를 이용하는 행위

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범위 확대 (2조 1항 2호 : 2004/4/1 개정 · 시행)
 -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기존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외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모든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 · 협회등록 예정인 법인으로 확대

- 주기적인 회계법인 교체의무의 예외사유 마련 (3조 10항 · 11항 : 2004/4/1 개정 · 시행)
 - 동일한 감사인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예외사유를 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불가피한 경우
 - 뉴욕 · 런던 증권거래소 등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

- 감사인 지정대상회사의 범위 확대 (4조 5항 : 2004/4/1 개정 · 시행)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회사의 범위를 변경함
 - 신규 주권상장 · 협회등록 예정인 주식회사 (2006/1/1 이후 상장 · 등록 예정인 주식회사부터 적용)
 - 협회등록법인으로서 투자유의종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추가 및 전자문서 제출 허용

(5조 1항·3항 : 2004/4/1 개정·시행)

-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회계감사 보수액, 회계감사 외의 업무에 대한 보수액, 소송현황 등을 추가
-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8조의2 2항·3항 : 2004/12/31 개정, 2005/4/1 시행)

- 원활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지주회사의 건실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
 -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
 -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또는 30%로 규제

○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10조 1항, 7항 2호·4호 : 2004/12/31 개정, 2005/4/1 시행)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
 -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건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의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
-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11조 3호, 부칙 9조 : 2004/12/31 개정, 2005/4/1 시행)

- 계열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기존 30%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11조의3 : 2004/12/31 개정, 2005/4/1 시행)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및 투명성의 제고를 유도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3년 시한부 재도입 (50조 5항 ~ 9항, 69조 1항, 부칙 2조 : 2004/12/31 개정, 2005/4/1 시행)
 -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고, 그 발동요건을 강화
 - 기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2004년 2월 4일로 유효기간이 만료

13.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세분화 (2조 1호 : 2004/10/22 개정, 2005/4/22 시행)
 - 부동산에 대한 투자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자산의 투자·이용방법에 따라 종류를 구분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예비인가제도 도입 (5조 2항 : 2004/10/22 개정, 2005/4/22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6조, 11조 : 2004/10/22 개정, 2005/4/22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대상 부동산의 적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
-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 허용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제도 폐지

(21조, 26조 2항 : 2004/10/22 개정, 2005/4/22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총자산 범위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기자본의 30% 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39조의2, 47조 1항 : 2004/10/22 개정, 2005/4/22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율성 확대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외부감독과 내부통제장치를 강화

- 주주보호를 위하여 금감위가 자료제출, 보고·업무검사 등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추가 (5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

-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 (28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분양주택을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 (36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금감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함

-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 범위 (40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 있어,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3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를 정함
 - 국민주택기금에서의 대출금 (일부 대출금은 제외)
 - 은행, 농·수협중앙회, 보험회사 등의 주택자금대출금

-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연의 방법 및 시기 (4조 : 2004/2/28 제정, 3/1 시행)
 -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연시기 및 방법에 관한 출연요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첨부하여 출연하도록 함

16. 법인세법

-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범위 확대 (51조의2 1항 2호·4호 : 2004/12/31 개정, 2005/1/1 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배당가능금액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 2005/1/1 시행
 - 위탁관리부동산회사 : 2005/4/24 시행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73조 8항, 98조의3 1항 :

2004/12/31 개정, 2005/7/1 시행)

- 내국법인이 만기도래 전의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채권을 매도하는 때에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
 - 종전에는 당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직접 이자를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였음
 - 채권의 중도 매도시, 이자소득세가 채권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채권가격의 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채권거래의 효율성을 제고

17. 소득세법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46조 : 2004/12/31 개정, 2005/7/1 시행)

- 채권 매도시마다 채권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중도매매자가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
 - 채권매도시 채권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채권매도가액에 전가하는 기존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

○ 종합소득세율 및 이자·배당세율의 인하 (55조 1항, 129조 1항·2항 :

2004/12/31 개정, 2005/1/1 시행)

- 종합소득세율 : 1% 인하
- 이자소득 및 배당세율 : 15%에서 14%로 1% 인하

18. 증권거래세법

○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신설 (14조 1호 : 2004/12/31 개정, 2005/1/1 시행)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여 미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

- 종래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었음
- 증권거래세 납부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 및 납부를 유도

○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도과시 미납일수에 비례한 가산세 차등부과

(14조 2호 : 2004/12/31 개정, 2005/1/1 시행)

—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도과시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

- 연체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기한 익일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연체이자율
- 증권거래세 미납시 미납기간에 관계없이 1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문제점을 개선

19.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의 범위 확대 (1조 : 2004/10/1 개정·시행)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의 범위를 명시함

- 동경증권거래소
- 런던증권거래소
- 도이치증권거래소
- 이들 거래소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표준화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

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상범위 확대

(33조 1항 4호 사목·자목·차목 : 2004/12/31 개정, 2005/1/1 시행)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상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확대

-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 관리용역 공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을 유지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기대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예외사항 설정 (87조 : 2004/3/31 개정·시행)
 - 일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거나 공정성이 확보되는 자산양수·도 등은,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더라도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범위에서 제외

- 자산양수·도 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마련 (88조 ~ 90조 : 2004/3/31 개정·시행)
 - 제출시기
 -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 지체없이 신고서를 제출
 - 기재사항
 - 자산양수·도의 개요에는 목적, 양수·도 가액, 외부평가의견 등을 기재
 - 종료보고
 - 자산양수·도 종료시 지체없이 종료보고서를 제출

- 주식교환·이전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마련 (77조의2, 91조 ~ 91조의3 : 2004/3/31 개정·시행)
 - 제출시기

-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에서 주식교환·이전에 관한 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서를 제출

— 기재사항 등

- 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주식교환·이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및 주총소집 통지·공고 등과 관련한 절차는 합병의 경우를 준용

○ 합병신고서의 기재사항 개선 (80조 2항, 3항 : 2004/3/31 개정·시행)

— 정부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합병으로서 신고서 제출 당시에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추후제출을 인정

—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서류 첨부기준을 개선하여 외부감사 의무법인으로서는 3사업연도 미경과법인은 경과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만 제출

- 합병 상대회사가 비상장·비등록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감사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영업양수·도 신고서 기재사항 개선 (88조의2, 88조의3 : 2004/3/31 개정·시행)

— 영업양수·도 가액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의무화에 따라 평가의견을 신고서에 기재

— 당사회사의 재무서류는 최근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의 무법인이 아닌 경우 회사제시 재무제표)를 제출

- 분할신고서 기재사항 개선 (93조, 94조 : 2004/3/31 개정 · 시행)
 - 준용형식의 기재방식에서 직접 규정방식으로 전환
 - 분할신고서의 개요에 분할과 분할합병을 구분하여 기재

- 주식워런트증권 · 주가연계증권의 일괄신고서 기재사항 마련
(18조 1항, 2항 : 2004/3/31 개정 ·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 ·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증권에 관한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을 마련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신고기준 개선 (71조 1항, 3항 : 2004/3/31 개정 · 시행)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신고를 「모든 거래기준」에서 「일정규모 이상 거래기준」으로 변경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
 -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행위 등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

- 수시공시사항의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기준으로 전환 (2004/7/28 개정, 10/1 시행)
 - 수시공시사항 중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기준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위험감내능력과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68조의2 3항 · 4항, 69조 1항)

- 기존의 일률적인 비율기준을 공시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함으로써 공시의 과도한 누락을 방지

* 10% → 5%, 3%, 1% 등

- 자본잠식법인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간주하고, 기존 비율기준(10%)을 유지

— 자기자본의 산정방식 (2조 3항 : 2004/7/28 시행)

-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변동내역 중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자본금·자본잉여금의 증감액만을 자기자본에 반영

○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신설 (2004/7/28 개정, 10/1 시행)

— 증시환경변화에 따른 투자판단자료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항을 수시공시항목으로 신설

- 대표이사의 변경 및 횡령사고 발생에 대한 공시의무 부여 (69조 1항 2호)

— 선박투자회사의 상장에 대비, 선박투자회사의 특성이 반영된 수시공시 사항 마련 (68조 10항, 69조 1항 15호의2 : 2004/7/28 시행)

- 선박의 건조·매매·대선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여

○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조정 (69조 : 2004/7/28 개정, 10/1 시행)

— 수시공시사항 중 공시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제도의 취지와 괴리가 있는 항목은 중요성·적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

- 공시대상 매출액변동기준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 등

- 출자·고정자산취득 공시의무에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한 출자·고정 자산취득을 포함시켜 공시의 일관성 제고 및 공시회피행위를 방지
-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 범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공시부담을 완화
 -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 " 10%

○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삭제 (69조 1항 : 2004/7/28 개정, 10/1 시행)

- 정보가치가 낮으면서도 기업에게 공시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 등을 공시항목에서 삭제
 - 해외직접투자 공시 등 4개 항목(12개 세부사항)
 - 자본도입공시 등 14개 항목(69개 세부사항) 중 37개 세부사항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인수관련규정의 삭제

(4장 2절 : 2004/7/28 개정, 10/1 시행)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에 대한 증권회사의 인수요건은 자율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여 증권업협회로 이관

○ 제조원가명세서 삭제 등 기업공시부담 완화 (72조 : 2004/12/30 개정·시행)

-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인 부속명세서는 기업기밀에 해당될 소지가 크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중복사항이 많아 공시정보로서의 가치는 낮으므로 삭제
 - 제조원가, 예금 등, 유가증권, 재고자산, 주요채권, 단기차입금, 주요채무, 장기차입금, 사채, 감가상각비 등, 법인세 등 11개 부속명세서

— 수시공시를 통해 이미 공시한 주요경영사항은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주요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변경

○ 국내회계기준 적용의 예외 확대 (37조, 48조 : 2004/12/30 개정·시행)

— 외국기업의 공시서류 제출시 재무관련 사항의 기재 및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IAS) 및 미국 회계처리기준(US GAAP)을 인정함

- 기존에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한 외국기업에만 인정하던 것을 주식, 주식예탁증서 등을 발행한 외국기업으로 확대

○ 상장법인 등의 국내외 공시정보의 불균형 해소 (69조 6항 : 2004/12/30 개정·시행)

—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코스닥등록법인은 해외공시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에서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시장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

○ 정부의 공공적 법인의 주식거래 등에 대한 금감위 승인 면제

(142조 1항 : 2004/12/30 개정·시행)

— 공공적 법인(한국전력)이 발행한 주식을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거나 정부가 동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면제

- 정보소유의 공공적 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치므로, 금감위의 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일괄신고서 추가서류의 첨부서류 명시 (20조 2항 : 2004/12/30 개정 ·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과 추가연계증권이 일괄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첨부서류를 정함

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에 채권평가회사 추가 (4조 : 2004/7/28 개정, 8/2 시행)
 - 채권평가회사의 유가증권 가격평가업무가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의 유가증권 공모가격의 적정성 평가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채권평가회사를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에 추가
 - 신용평가전문회사가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채권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제한

3. 증권업 감독규정

- 비상장 증권회사의 경영공시 대상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
(2-70조 : 2004/2/5 개정 · 시행)
 - 기존에 부실여신 발생 등 경영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었던 비상장 증권회사의 수시공시 대상에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상장 증권회사에 적용하고 있던
수시공시 대상을 추가함

-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증권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재산 등의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증권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수시공시의 내용 및 방법 등은 증권업협회장에게 위임

○ 후순위차입금의 인정요건 강화 (2-14조, 2-15조 : 2004/5/19 개정·시행)

—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으로 인정하는 후순위차입의 인정한도를 축소하고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을 연장

- 후순위차입금 인정한도 축소 : 순재산액의 100% → 50% 내부회계
-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 연장 : 2년 → 5년
- 잔존만기 5년 미만시 매년 20%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

— 실질적 자금유입이 없는 후순위차입에 대한 영업용순자본 불인정을 명시

—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한도초과가능 조항을 삭제

- 수익증권위험액 산정방법 개선 (2-13조, 별표 8 : 2004/5/19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가 보유한 수익증권 중 현금화 곤란자산이 편입되어 있어 시장성이 없으면서 단기간 내에 해지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현금화 곤란자산분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시장성 없는 자산 등에 대하여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신용집중위험액 산정의 합리화 (2-18조, 2-26조 : 2004/5/19 개정 · 시행)
 - 인수업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신용집중위험액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위험액을 산정
 - 단, 주식보유집중위험액은 주식의 유동성에 관한 위험으로 주식위험액계산에 반영하고, 예외조항 중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전환사채 등)은 동 위험액의 예외를 인정

-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미수금처리 자율화 (4-29조 : 2004/5/19 개정 · 시행)
 - 해외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증권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증권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기관고객의 경우 결제능력 자체 보다는 일시적 사유(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해외휴일 등)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음

- 신용거래시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 삭제 (5-12조 : 2004/5/19 개정 · 시행)
 - 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에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의 추가담보 납부시한(4일)을 삭제하여, 증권회사의 자율에 일임

- 증권회사 등의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 자율화 (5-32조 : 2004/5/19 개정 · 시행)
 -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여부를 개별 증권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의무 규정을 삭제

- 증권회사의 경영관련 보고부담 경감 (6-2조 : 2004/5/19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가 월별로 보고하는 점포변동관련사항을 업무보고서의 항목에 편입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기관경고조치로 인한 결격기간 단축

(별표 3 : 2004/5/19 개정 · 시행)

 -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주요출자자인 최대주주가 받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로 인한 결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자산 및 부채의 평가·산정기준의 합리화 (별표 16 : 2004/5/19 개정 · 시행)
 - 채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평가시, 수익률(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아니한 것 등에 대하여는 공정가액(순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령의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2004/5/19 개정·시행)
 - 증권투자신탁업법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 상장지수 간접투자신탁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4.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회계계정의 세분화 및 명확화 (별표 12 : 2004/5/19 개정·시행)
 - 경영·부수업무에 대한 회계의 집중 및 계정과목의 세분화
 - 자산관리수수료 →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으로 세분화
 - 대출채권매각이익 → 영업외수익항목에서 영업수익항목으로 변경
 - 증권미수금을 주식·채권·선물옵션 미수금으로 세분화

- 환율변동위험이 없는 외화표시자산·부채는 외국환포지션 관리대상에서 제외 (2-15조의2 1호 : 2004/12/1 개정, 2005/1/1 시행)
 - 주가지수연계형채권(ELN) 등과 같이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산이나 부채는 외국환포지션 관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

- 통화옵션 관련포지션 관리기준을 개선 (2-15조의2 2호 : 2004/12/1 개정, 2005/1/1 시행)
 - 매수옵션(콜옵션)과 매도옵션(풋옵션)의 구분기준을 명시

- 금융회사의 실제 환율위험관리관행과 포지션 관리기준이 일치되도록 옵션거래의 포지션 산출방법을 변경
 - 다만,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위험관리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실제 관행은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이용한 수리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환율위험노출규모를 대상으로 위험회피(델타헤징)거래 실시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 비상장 위탁회사의 경영공시 대상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23조 : 2004/2/5 개정·시행)

- 기존에 부실여신 발생 등 경영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었던 비상장 위탁회사의 수시공시 대상에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상장 위탁회사에 적용하고 있던 수시공시 대상을 추가함
 -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위탁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재산 등의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수시공시의 세부공시항목 등은 투자신탁협회 기준에 위임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령의 시행에 따른 자산운용감독 관련규정의 통합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 2004/4/20 제정·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자산운용감독 관련규정을 통폐합하고 금감위에 신규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마련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으로 통합

○ 자산운용업 등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2004/4/20 제정·시행)

- 은행·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업 경영허가와 자산운용회사·증권회사의 투자자문업 경영등록 심사시 적용할 주요출자자요건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만 적용 (5조 2항, 85조 별지 8호)
-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 감소 승인시 적용될 재무건전성기준 (6조 2항)
- 감자 후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100억원) 이상,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은 200% 이상
- 신탁업경영은행의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등록시 적용될 재무건전성 기준 (44조 3항)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8%) 이상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2004/4/20 제정 · 시행)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시, 판매회사와 간접투자자간의 분쟁예방을 위해, 투자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이행사실을 기명날인, 녹취 및 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함 (52조 3항)
 -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 · 유지
 - 부실자산은 환매연기하고 정상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에 응하는 부분환매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55조)
 - 부분환매절차 : 부분환매 결정일 및 결정사유, 환매연기 자산의 비율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판매회사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및 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소에 게시
 - 부분환매방법 : 환매연기자산과 정상자산을 분리하고, 정상자산에 대해 약관 또는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별도의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간접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
 -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판매 신고전 광고 및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내 간접투자증권 판매시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 (97조, 98조, 102조)

- 자산운용회사와 계열회사간 정보제공계약 및 이해상충방지체계에 포함할 사항 (23조 : 2004/4/20 제정 · 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단순 매매주문 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계약 및 이해상충방지체계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정보제공계약에 포함할 사항 : 위탁계약 보수 및 계열회사가 외국 법인의 경우 대리인 선임의무
- 이해상충방지체계에 포함할 사항 : 수탁업무 담당임·직원 지정, 동 직원의 운용업무 등 겸직금지 및 수탁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분기별 점검 등

○ 합병·영업양수도와 관련된 자산운용회사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34조 2항, 부칙 4조 : 2004/4/20 제정·시행)

- 합병·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산운용회사와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1년간 유예

○ 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의 등록 (47조 : 2004/4/20 제정·시행)

-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신청서에 평가체계, 평가기준 및 공시방법을 기재
- 간접투자기구간 운용성과의 비교시 비교기준을 표기하고, 평가결과 수정시 수정사실의 공시를 의무화

○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71조 : 2004/4/20 제정·시행)

- 프로그램 매매, 장내파생상품 거래 및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을 허용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운용관련 제도개선

(58조 ~ 62조, 65조 : 2004/4/20 제정·시행)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가 일시 자금예치수단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입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순자산가치의 안정성을 제고

구 분	기 준	개 정
가중평균 잔존만기	120일 (국채·통안채 제외시 90일)	90일로 단축
신용등급 요건	채권 : BBB 이상 어음 : A3 이상	상위2개 신용등급 (채권 AA 이상, 어음 A2 이상)
분산투자 요건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신용등급별 투자한도 : 최상위등급 5%, 차상위등급 2% · 동일인 투자한도 :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상위2개 신용등급 금융기관에 대한 중개콜 제외)
운용금지자산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신 설>	· 자산의 원리금이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구조설계상품, 자산의 만기 등이 미확정된 상품
위험관리 등	<신 설>	위험관리기준 제정 및 내부통제제도 구축 의무화, 질적 규제제도 도입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사항 (94조, 95조 : 2004/4/20 제정 · 시행)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 일임업 등록요건 중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등으로, 납입자본금은 자기자본으로, 전문인력은 당해 국가전문인력요건 등으로 같음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투자일임계약체결시,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 · 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함

- 신청서 · 보고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정비 (2004/4/20 제정 · 시행)
 - 자본감소승인신청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보고서 등 신규로 도입된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정함 (6조 3항, 81조 2항)
 - 각종 공시서류 등의 서식 및 작성요령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 (3조 2항, 52조 5항)

- 금감위 소관업무의 금융감독원장예의 위탁 (108조, 109조 : 2004/4/20 제정 · 시행)
 - 금감위 소관업무 중 단순사무 집행업무와 감독실무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처리한 업무는 반기별로 금감위에 보고

-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 업무 등록관련 재무건전성 기준을 정함 (2004/6/30 개정 · 시행)
 - 자본금 규모 : 100억원 (회사설립 최저기준) 이상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150%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 이상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절차 및 첨부서류 (84조의2 : 2004/12/15 개정 · 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감위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처리절차와 첨부서류를 정함

- 처리절차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등록사실 통지, 변경등록 신청시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을 증빙할 서류 첨부,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명령
- 첨부서류 :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대상 자산항목의 추가 (84조의3 : 2004/12/15 개정 · 시행)

— 투자대상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 투자대상기업이 채권자인 금전채권,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도 운용가능자산 항목에 추가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한에 대한 예외 (84조의4 : 2004/12/15 개정 · 시행)

— 사원출자 후 1년 이내에 재산의 60% 이상을 경영권참여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1항)

-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 참여,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경영권참여 요건의 충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등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2항)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속기한 만료 등의 해산사유 발생,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에 경영권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 등을 1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3항)
 -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폐지, 투자대상기업의 합병·해산·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 (4항)
 - 투자증권 및 장내외 파생상품·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시 가격·시기·방법의 결정, 투자대상기업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 경영권참여 사실에 대한 신고시 첨부서류 (84조의6 : 2004/12/15 개정·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참여 후 당해 사실의 금감위 보고시,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를 첨부
 - 투자대상기업의 등기부등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증빙서류, 임원의 파견·선임과 관련한 합의·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서류
-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청구일 구분의 기준시간
(52조의2 : 2004/12/15 개정·시행)
-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청구일 구분의 기준시간을 규정
 -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간접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종료시점 이전

- 기타 간접투자기구는 17시 이전으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정하는 시점
- 판매회사는 기준시간 경과 후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가격이란 기준시간 이전에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가격

○ 은행임원의 자산운용회사 업무겸직의 범위 (83조의2 : 2004/12/15 개정 · 시행)

- 은행의 부수업무 중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우려가 있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임원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겸직이 가능
 - 겸직이 금지되는 업무는 유가증권의 투자 및 대여·매출,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 기업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임

6. 선물업 감독규정

○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관리자 제도 운영

(47조의2, 47조의3 : 2004/12/1 개정 · 시행)

- 점포별로 일반고객 영업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 영업관리자로 하여금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선물·옵션계좌의 개설 및 거래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영업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예방

- 주요점검내역 : 거래내용이 고객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품유형별 거래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 여부 등

○ 일중거래자 및 시스템거래자에 대한 위험 고지 (52조의3 : 2004/12/1 개정 · 시행)

- 협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없는 무모한 투자를 예방
-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부적합한 일반고객에게 일중거래기법이나 특정시스템 거래프로그램의 이용 권유를 금지하여 일반고객을 보호

○ 선물업자의 불공정거래 수탁거부를 의무화 (52조의4 : 2004/12/1 개정 · 시행)

- 선물업자로 하여금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또는 탈세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불공정거래의 주문을 거부하도록 규정
 - 선물거래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선물업자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예방

○ 선물업자의 고객에 대한 손실보전행위 금지 (52조의2 : 2004/12/1 개정 · 시행)

- 선물업자로 하여금 금전제공이나 수수료 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

- 위험고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고객 확대 (46조 : 2004/12/1 개정 · 시행)
 - 위험고지서 교부하지 않는 대상을 선물업자 이외에 적격기관투자자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
 - 위험고지서의 세부내용은 선물협회가 정하도록 위임

- 업무보고서의 제출근거 마련 (7조의2 : 2004/12/1 개정 · 시행)
 -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업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관련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함

- 선물업 겸영업자에 대한 보고의무 예외 인정 (71조의2 : 2004/12/1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와 같은 선물업 겸영업자에 대해서는 선물거래법상의 보고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보고부담을 경감

- 기초위험액 관련 경상지출비용 산정방법 개선 (24조 : 2004/12/1 개정 · 시행)
 - 경상지출비용 산정시 대상기간을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12개월에서 당해 월을 포함하는 최근 12개월로 조정하여 감사보고서 등의 회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형자산상각비를 경상지출비용에서 차감하여 기존의 차감항목과의 형평성 유지

- * 기초위험액 : 선물업자가 임직원의 사고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액으로, 경상지출비용의 25% 또는 유증거금의 4% 중 큰 금액

7. 선물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명칭 변경 (별지 1호 : 2004/12/1 개정·시행)

-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 계정처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변경

기 준	개 정
유가증권	단기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투자유가증권	장기유가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8.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41조 : 2004/6/1 개정·시행)
 -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금감원의 공시담당 부원장보를 추가
 -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처리사항도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므로 담당임원을 포함시킴

- 이사 개인에 대한 독립적인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별표 3호 Ⅱ.나, Ⅲ.1.나(1) : 2004/6/1 개정·시행)
 - 유가증권신고서 및 공개매수신고서 위반행위의 경우, 당해 법인과는 별도로 이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의 명확화 (별표 3호 Ⅲ.1.가 : 2004/6/1 개정·시행)
 - 유가증권신고서 위반의 경우 기준금액을 허위기재와 미제출로 구분
 - 허위기재 :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매출가액
 - 미제출 :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

- 과징금부과 기준율의 합리적 조정 (별표 3호 Ⅳ.가 : 2004/6/1 개정·시행)
 - 수시공시위반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위반으로 연결되는 경우, 과징금부과 기준율을 수시공시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10% → 3%

○ 과징금부과 적용률의 하향조정사유 추가 (별표 3호 IV.나.(3) : 2004/6/1
개정·시행)

— 기업의 특성 및 투자자 보호의 실익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 적용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 위반 내용이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정기보고서 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은 경우
- 원상회복 정도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부과로 인해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9.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강화 (54조 : 2004/1/14 개정·시행)

—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건의 및 1년간 감사업무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당이사에게 주된 책임을 물어, 담당공인회계사보다 중한 조치를 함

- 상장·등록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6조의2 : 2004/6/16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

- 감사인지정 대상회사의 범위 조정 (10조 1항 8호, 14조 : 2004/6/16 개정·시행)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회사에 신규 상장·등록 예정인 주식회사와 협회등록법인 중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를 포함

- 감사인 지정기준일의 조기화 (10조 8항 : 2004/6/16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에 따른 분기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가 의무화된 법인으로서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일을 사업연도 개시 후 4월의 초일로 2개월 조기화
 - 증권선물위원회가 10조 1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 후 6월의 초일임

- 감사인 지정대상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의 감사인지정 금지

(13조 3항 7호 : 2004/6/16 개정·시행)

 - 감사인 지정대상회사가 선임한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

- 감리결과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26조, 62조 3항·5항·6항 : 2004/6/16 개정·시행)
 - 감리결과 조치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감리위원회에 부의함
 - 감리 재심청구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 감리결과 조치내용의 사전통지 (51조, 60조, 61조의2 : 2004/6/16 개정·시행)
 - 감리결과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 10일 전에 지적사항 및 조치의 내용을 조치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회계·감사 관련 용어 변경 (48조 등 : 2004/6/16 개정·시행)
 - 분식회계·부실감사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

1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개선 (별표 2호 : 2004/1/14 개정·시행)
 -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 검찰통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의Ⅳ단계’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의 경우 고의Ⅳ단계도 과징금 부과 또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3월 조치 중 선택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금감위위원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인회계사가 고의 아닌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으로 위반한 경우 조치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 추가 (6조 4항, 별지 14호 : 2004/6/16 개정·시행)
- 회계법인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등의 보수액 현황을 추가
- 감리·조사의 회피사유 규정 (14조의2 : 2004/6/16 개정·시행)
- 감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감리·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감리·조사를 회피하도록 함

1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금융기관 직원문책의 일임 (14조 2항 : 2004/3/5 개정·시행)
-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자율조치하도록 의뢰
 - 내부통제체제가 정비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자율적인 제재능력이 미흡한 금융기관이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은 제외

- 「주의적 경고」 및 「기관경고」 누적시 가중제재 (24조 : 2004/3/5 개정 · 시행)
 - 「주의적 경고」 및 「기관경고」 누적시 가중제재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이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 주의적 경고를 받고도, 3년 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단계 가중조치
 -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영업점)영업일부 정지」 또는 「영업점폐쇄」 등으로 가중조치
 - 다만,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받은 「주의적 기관경고」는 가중요건 고려시 제재실적에서 제외

- 제재의제제도의 폐지에 따른 감독책임 근거 명시 등 (18조 1항 : 2004/3/5 개정 · 시행)
 - 임직원의 문책사유에 「직무상 감독의무 위반책임」과 「허위보고」 등 감독당국을 기망하는 행위 포함
 - 체재구분의 실익이 없는 「문책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를 「기관경고」로 일원화

-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확약서 징구 또는 양해각서 체결 활성화 (20조의2 : 2004/3/5 개정 · 시행)
 - 검사결과 도출된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 임원 또는 이사회로부터 확약서 징구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활성화

- 약속서(Commitment Letter) :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임원명의로
징구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중대한 사안으로 이사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

○ 금융사고 및 부실여신 관련 기관제재기준의 상향 조정

(17조 1항 : 2004/3/5 개정·시행)

- 금융사고 및 부실여신 관련 「기관경고」 제재기준을 「문책기관경고」 수준으로 상향조정
- 금융사고관련 제재기준 중 손실금액 기준을 금융기관의 규모 차이를 감안하여 다단계화
 - 자기자본 1조 5천억원 미만 : 100억원 초과
 - " 1조 5천억원 이상 ~ 2조 5천억원 미만 : 300억원 초과
 - " 2조 5천억원 이상 : 500억원 초과
-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여신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시 금액기준에 관계 없이 기관경고 조치

○ 제재의 투명성 확보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35조, 35조의2 : 2004/3/5 개정·시행)

- 제재심의회 개최전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예정내용의 사전통지 의무화
 - 제재조치전 사전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절차법 위반문제를 제거
- 금융감독원장의 사전통지 등 실무절차수행과 관련하여 위임조항 신설

- 증권·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별표2 6호 : 2004/3/5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은행)기준을 준용하되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검사실시 근거 마련 (3조 : 2004/5/7 개정·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검사 및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검사 및 제재규정상 검사실시 근거법규인 “금융업관련법”의 용어 정의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을 추가

- 금융회사의 정보 보고사항 중 “거액” 개념 명확화 (42조 : 2004/5/7 개정·시행)
 - 금융회사의 정보 보고사항 중의 하나인 “거액의 민사소송 피소”에서 거액의 개념을 명확화함
 - 자기자본의 1%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로 변경

- 제재와 관련하여 Negative system 도입 (26조 1항 : 2004/12/30 개정·시행)
 - 종래 경미한 위반사항 등 모든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제재하던 것을 규정에 명시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만 제재

•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1. 금융관련법규 등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에도 취급한 여신 (출자자 대출, 동일인여신한도초과 대출, 용도의 유용 대출 등)
2. 정관·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부적격자(휴폐업 업체, 연체자 등)에 대한 여신 (타인명의 이용 등 우회대출 등 포함)
3. 신용조사를 부당하게 생략하거나 신용조사 또는 여신심사의 의견이 “여신 부적정”임에도 무리하게 취급한 여신
4. 적정 여신한도 초과 부당취급 (한도 미산정, 추정매출액 부풀리기, 담보물 과다평가 등 포함)
5. 신용평가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급한 여신
6.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에 있어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소액·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한 임원 위주의 제재 (26조 2항 : 2004/12/30 개정·시행)

- 영업점장 전결의 소액부실여신(2~3억원)에 대해 관련자까지 제재하던 것을 임원(여신협의체 여신의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한 본점 부서장 포함) 위주의 제재로 전환

○ 부실여신규모에 의한 자동적 기관경고제도 폐지 (17조 1항 7호 라목 : 2004/12/30 개정·시행)

- 사안별로 책임규명을 강화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경고요건에 의거하여 기관경고를 부과

1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금융감독원내 검사업무관련 업무처리절차의 명확화 (2조 : 2004/5/7 개정 · 시행)
 -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의 민원업무관련 검사, 검사총괄담당부서의 재심업무처리관련 검사실시 근거를 명시
 -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장 및 검사총괄 담당부서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검사실시하는 경우, 본 규정의 검사실시 관련규정을 준용

-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연결검사 실시를 규정화 (4조, 41조의2 : 2004/5/7 개정 · 시행)
 - 종래 내부처리절차에 의거하여 운영한 금융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에 대한 연결검사 실시를 규정화함
 - 연결검사 실시계획 등을 주력자회사를 담당하는 검사부서(주검사부서)가 여타 검사부서와 협의하여 수립
 - 주검사부서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검사시 검사통할기능 수행
 - 연결검사실시 관련부서간 이견이 있을 경우, 검사총괄 담당부서장이 조정

- 검사부서의 검사 사후관리 철저 유도 (14조 : 2004/5/7 개정 · 시행)
 - 검사총괄 담당부서장은 검사 실시 협의시 검사실시 내용의 검사관리 시스템 입력여부를 확인 · 검토

- 검사관리시스템은 검사실시 상황, 검사결과 조치내용 등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2001년도에 개발됨
- 검사총괄부서의 재심청구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명확화 (61조 : 2004/5/7 개정·시행)
 - 재심청구사항 심사결과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 재검사 의뢰 가능
- 고압적인 용어 순화 (18조 1항·2항 : 2004/5/7 개정·시행)
 - 임점검사 착수시 금융회사에 교부되는 “검사명령서“의 명칭을 변경
 - 검사명령서 → 검사실시통보서

13.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 2004년도 금융권역별 분담요율 개정 (별표 1호 ~ 3호 : 2004/6/30 개정·시행)
 - 은행·비은행권역은 0.6898/1만, 보험권역은 2.6303/1만, 증권·기타권역은 9.1423/1만으로 결정
 - 산정방식은 총부채(50%), 투입인력(40%), 총자산(5%), 영업수익(5%)을 반영한 혼합방식 적용
 - 총부채 대비 가중치는 은행·비은행(1) : 보험(5) : 증권·기타(10)

< 2004년도 금융권역별 분담요율 >

구 분	감독분담요율	법시행령상 분담요율 한도
은행·비은행	0.6898/10,000	3/10,000
보 험	2.6303/10,000	15/10,000
증권·기타	9.1423/10,000	30/10,000

- 총부채에서 차감대상 추가 선정 (3조 : 2004/6/30 개정·시행)
 -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의 상환기간 1년 초과 차입금 중 국내운용자금
 - 은행법시행령 26조 개정으로 '자본금 의제대상'에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의 상환기간 1년 초과차입금 중 국내 운용자금이 추가
 - 손보협회의 부채 중 '해상·보세보험 특별회계'상의 부채 및 '회원회사 계정'
 - '해상·보세보험 특별회계'상의 부채는 손보협회가 회원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이고, '회원회사 계정'은 일반 금융회사의 자본금 성격을 가지는 부채인 점을 감안

- 면제대상기관의 적용기준 명확화 (별표 4호 마목 : 2004/6/30 개정·시행)
 -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기관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변경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외
 - 생보협회 등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규정 별표 4호 가목*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정함

* 총부채 100억원 미만인 경우 분담금 면제

- 모든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어, 분담금 면제대상인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제외

14.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신고내용의 구체적인 적시요구 (3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할 경우 문서·우편·Fax·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함
- 금융감독원장의 신고 접수·처리 (4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금융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신고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신고접수 및 처리 내역을 증선위 위원장에게 매 분기별로 보고
 - 신고사항이 신고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조사·심사를 하지 않고 처리 종결이 가능
- 포상금의 지급대상 (5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포상금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을 적발 또는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

- 동일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별도 신고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 1인이 2건 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하나, 위반 행위자 또는 종목이 중복되는 경우 동일 신고로 간주

○ 포상금 지급 부적격사유 (6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포상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와 무관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

○ 포상금의 지급기준 (7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로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등급별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

- 기준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의 등급별로 최고 1억원 ~ 최저 200만원
- 기여율은 신고내용과 조사 및 적발기여도를 감안하여 결정

○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8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금융감독원장이 매 분기별로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그 내역을 증선위에 부의하여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선위 등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포상을 실시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9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금융감독원장은 증선위의 포상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지급
-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않음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의 비밀보호 (10조 : 2004/5/31 제정, 7/1 시행)

—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또는 심사 관련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15.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23조의3 1항 : 2004/3/5 개정 · 시행)

—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등의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일반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주택저당증권 등은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한 유형이므로,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도 일반 자산의 유동화절차를 준용

○ 양도등록사실확인서 발급 (23조의3 3항 : 2004/3/5 개정·시행)

-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시, 금융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함

16.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 설정 (4조 1항 : 2004/3/5 제정·시행)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8% 이상
-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 100% 이상

○ 보유자산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6조, 7조 : 2004/3/5 제정·시행)

-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 학자금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지급보증대지급금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

자산건전성 분류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	0.25%	1%	20%	50%	100%

○ 경영개선지도 (11조 ~ 13조 : 2004/3/5 제정 · 시행)

- 금융감독원장은 주택금융공사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경영개선을 지도할 수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직운영의 개선, 고정자산투자 및 신규출자제한, 이익배당제한, 특별대손충당금설정, 위험자산보유제한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경우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 미달이 명백한 경우

○ 내부통제체제와 위험관리체제 구축 (8조 : 2004/3/5 제정 · 시행)

- 주택금융공사가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와 자산·부채관리체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함으로써 신용위험·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회계처리원칙 (9조 : 2004/3/5 제정 · 시행)

- 채권유동화대상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대상이 아닌 자산과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
- 회계처리는 한국회계연구원이 정한 기업회계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준용

○ 경영공시 (17조 : 2004/3/5 제정 · 시행)

— 정기공시

- 경영지표 및 채권유동화업무 관련사항 등을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분기별 가결산시 2월 이내)에 공시

— 수시공시

-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의 발생, 원화유동성비율 지도기준 위반 등으로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공시

○ 채권유동화증권 거래조건 등의 공시 (18조 : 2004/3/5 제정 · 시행)

— 채권유동화거래와 관련된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

- 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미확정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 유동화된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 대출채권의 만기전 상환, 연체, 손실 현황 등을 채권유동화계획별로 매월 공시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9조 : 2004/3/5 제정 · 시행)

—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급부를 수수하거나 이를 제의 · 요구 ·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17.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제시 (4조 1항 : 2004/3/5
제정·시행)

- 세부산정기준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50%로 함
 - * 신용환산율 :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지급보증 등 부외자산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의 지급보증대지급금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각각 50%와 100%로 함

○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산정기준 제시

(4조 2항 : 2004/3/5 제정·시행)

- 세부산정기준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잔존만기 3월 이내를 기준으로 산출
 - 다만, 주택저당채권 중 채권유동화계획이 등록되었으나 유동화가 완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자산으로 인정

18. 은행업 감독규정

- 자산유동화관련 신용공여범위의 조정 (3조, 별표 2 : 2004/6/30 개정, 9/30 시행)
 - 자산유동화 관련 신용보강수단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
 - 원화대출약정,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 후순위수익증권, 자산유동화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신용보강수단을 새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

-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를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
(49조 18호·18호의2 : 2004/12/15 개정·시행)
 -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용이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를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

-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회사로 간주 (49조의2 : 2004/12/15 개정·시행)
 -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이나 출자총액의 30%를 초과하는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은행의 자회사로 간주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주식 등의 취득상황 보고 (14조의3 : 2004/12/15 개정·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주식 4% 초과 취득상황 보고 (1항·3항)

-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중심으로 한 주식보유상황의 실질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가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은행주식 4% 초과보유) 주식 4% 초과 취득상황 보고 (2항)
 - 투자목적회사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목적회사의 주식보유상황의 실질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가
 - 은행법상의 보고의무와 자산운용업법상의 보고의무를 일원화 (4항)
 - 보고의 목적 및 상대방(금감위)이 동일하므로 은행법상의 보고서식에 자산운용업법상의 보고항목을 포괄하여 일원화
- 중소기업은행 주식보유시 은행법의 적용관계 명시 (93조 1항 : 2004/12/15 개정·시행)
- 동일인의 중소기업은행 주식보유의 경우에도, 일반은행의 주식보유와 같이 한도를 초과한 보유에 대하여 승인절차 및 서식을 동일하게 적용

19.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상호저축은행의 한마음금융(주) 등 배드뱅크 참여 지원 (2004/6/1 개정·시행)
- 상호저축은행이 한마음금융(주)에 참여하는 경우,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출자증권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비상장·비등록 유가증권은 자

기자본의 5% 이내 및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 (9조 1항 7호)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으로 분류 (8조의3 1항 9호)

III. 증권거래소 규정

1. 업무규정

- 시간외바스켓매매 가격범위 확대 (32조의2 2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시간외바스켓 매매의 가격범위를 종가기준 $\pm 7\%$ 이내의 가격으로 확대(당일의 상·하한가 이내)하고 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 의한 매매를 허용

- 위탁증거금 징수특례 적용 예외근거의 신설 (70조의2, 80조 2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공매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결제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면, 위탁증거금 징수특례(위탁증거금 100%를 3개월간 징수)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회원에 대한 통보의무도 면제
 - 특례규정 미적용시, 회원에게 관련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부여

- 신고시장수익률 산출방식 개선 (47조 2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신고시장수익률 산출시 가격이 높은 순으로 10%, 낮은 순으로 20%를 제외하고 평균수익률을 산출

- 미수계좌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주문 제한 (66조 4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해 장개시전 시간외시장매매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미수정리를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되어 결제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문수탁을 허용

- 정리매매채권의 대용증권 지정 제외 (70조 2항 2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정리매매대상 상장채권을 대용증권지정대상에서 제외

2. 업무규정 시행세칙

- 소액채권 매매제도 개선 (47조, 53조 : 2004/3/24 개정, 4/1 시행)
 -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의무매수호가 금액을 상향 조정
 - 당월발행 : 6억원 → 12억원
 - 전월발행 : 1억원 → 2억원
 - 소액채권의 동시호가 수량분배 기준금액을 변경
 - 잔량 → 3억원, 5억원, 잔량순
 -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의무매수호가 방법을 종류호가로 변경

- 대용가격 산출제도 개선 (75조 4항, 77조 2항 : 2004/3/24 개정, 5/1 시행)
 - ELS 및 후순위채권의 사정비율 조정
 - ELS : 85% → 80%
 - 후순위채권 : 기존사정비율에 추가사정비율(90%) 적용
 - 보증기관 부도 등의 경우 대용증권의 기준시세 산출방법을 변경

- 상장지수펀드의 유동성공급호가 관련규정 이관 및 정비 (2004/7/26 개정, 8/2 시행)
 - 상장지수펀드의 유동성공급호가에 관한 규정 중 매매수량단위에 관한 규정을 업무규정시행세칙으로 이관 (7조의2)
 - 호가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의 여부를 표시하고, 유동성공급호가의 경우 조건(IOC, FOK) 부여를 제한 (9조, 11조)

- 외국인 투자자집단에 대한 심리업무기반 강화 (2004/7/26 개정, 8/2 시행)
 - 외국인 투자자집단이 대표투자자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제출시에 대표투자자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9조 : 2004/10/1 시행)
 -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의 계좌정보 및 배분내역, 회원 등의 명의로 투자등록한 경우 그 계산주체인 외국인의 기본정보 등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94조)

- 시간외바스켓매매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산정 근거마련
 - (37조의2 : 2004/7/26 개정, 8/2 시행)
 - 시간외바스켓매매의 경우에도 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 의한 매매를 허용함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산정규정을 준용

○ 간접투자기구의 운용대상 다양화에 따른 대응증권제도 개선

(71 ~ 73조, 76조, 76조의2, 78조 : 2004/7/26 개정, 8/2 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해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응증권의 인정범위를 확대
 -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은 대응증권지정에서 제외

○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등 감리종목지정제도 개선

(86조, 87조 : 2004/7/26 개정, 8/2 시행)

- 감리종목지정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감리종목지정요건 중 “30일 중 최고가격” 요건을 삭제
- 일반감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우선주감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감리종목 지정요건을 우선적용
- 이원화되어 있는 감리종목지정 해제요건의 단순화
 - 감리지정종목으로서, 감리종목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서 당일 종가가 3일전의 날의 종가 미만인 경우

○ 최유리·최우선 지정가호가의 정정근거 신설 (13조 2항 1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최유리·최우선 지정가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 수량의 정정 및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매매거래중단시의 매매거래 재개시간 단축 (26조 : 2004/9/22 개정, 10/1 시행)

— 풍문으로 인한 매매거래중단의 경우 조회결과를 공시한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

- 다만, 공시시점이 당일 장개시 전인 경우 장개시후 30분 경과시 매매거래재개, 장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재개

○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거래소 통보시한 변경 (67조의2, 70조의3, 82조의2 : 2004/9/22 개정, 10/1 시행)

— 매매거래수탁약관, 위탁증거금 징수기준,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하는 시한을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5일로 조정함

- 동 세칙 시행 후 당해 약관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 고가 종목의 매매수량단위 하향조정 (21조의2 : 2004/10/19 개정, 12/20 시행)

— 10만원 이상 고가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를 1주로 인하함

- 매매수량단위의 변경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기준
- 호가일에 배당락·권리락 등으로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기준

— 시가기준가 종목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되, 신규상장종목은 10주로 함

○ 우량종목의 대용증권 사정비율 상향조정 (74조 : 2004/10/19 개정, 12/20 시행)

— KOSPI 50을 구성하는 우량종목의 대용증권 사정비율을 인상

- 종래 70% → 현행 80%
- 이 비율 내에서 증권회사가 사정비율을 변경할 수 있음

3.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상장채권중 정리매매종목의 사정비율 신설 (54조 6항 : 2004/7/29 개정, 8/2 시행)

— 정리매매기간 동안에는 정리매매종목의 사정비율을 0%로 하여 대용증권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정리매매종목은 정리매매기간동안에는 가격변동성이 증가하고 환금성이 제약되어 담보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됨

○ 우량종목의 대용증권 사정비율 상향조정 (53조 3항 ~ 5항, 55조 3항 : 2004/10/26 개정, 12/20 시행)

— 대용증권의 담보가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KOSPI 50을 구성하는 우량종목은 대용증권 사정비율을 80%로 상향조정

- 단,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사정비율을 0%로 함

— 환금성이 우수한 종목은 담보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사정비율의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추가적인 투자수요의 창출이 억제됨

4. 유가증권 상장규정

- 선박투자회사의 상장기준 마련 (15조 11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선박투자회사법의 인가를 받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 선박운항회사와 임대(대선)계약을 체결하고
 - 주식분산요건(모집·매출 30% 이상 및 주주수 30명 이상)을 충족할 것

- 선박투자회사의 관리종목지정기준 (42조의2 3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주주에게 수입의 미분배,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부적정, 공시의무 위반시

- 선박투자회사의 상장폐지기준 (37조 3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2년 연속 주주에게 수입의 미분배, 해산사유 해당, 업무 전부의 정지, 2년 연속 사업보고서 미제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부적정,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재차 공시의무 위반시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SOC펀드)의 상장요건 개선
(15조의4 1항 3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SOC펀드)로서, 모집·매출실적이 10% 이상이고 주주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 국내외 동시공모 퇴출요건 (37조 1항 7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국내외 동시공모상장시 진입과 동일하게 분산퇴출기준 적용예외를 인정

- 공시규정의 별점제 도입사항 반영 (37조 1항 12호, 42조의2 1항 10호·4항 3호 : 2004/7/26 개정, 10/1 시행)
 - 공시규정에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별점제 도입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기준을 “회수”에서 “점수”로 전환
 - 별점 20점(종전 2회) : 관리종목 지정
 - 별점 30점(종전 3회) : 상장폐지

- 상장지수펀드의 상장폐지우려예고제도 개선 (42조의2 1항 5호·2항 4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상장지수펀드의 빈번한 괴리율 요건미달 공시로 인한 신뢰저하 방지
 - 괴리율 3% 초과 1일 → 5일 연속 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괴리율 3% 초과일수가 10일 이상

- 자산유동화회사의 채권형저당증권 상장제도 개선
(2조 14항, 17조 1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저당증권을 수익증권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상장심사기준을 명확화

- 채권상장폐지기준 개선 (39조 6호 : 2004/7/26 개정, 8/2 시행)
 - 정기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채권상장폐지기준을 완화하고 중복규정된 채권상장폐지기준을 정비

○ 채권상장폐지절차의 투명성 제고 (35조, 43조 2항 : 2004/7/26 개정, 8/2 시행)

— 채권상장법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상장폐지 근거 마련 및 정리때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신규상장요건 중 부채비율 요건 현실화 (15조 1항 5호 가목, 8항 4호 가목 : 2004/12/27 개정·시행)

— 상장법인의 부채비율 감소현상 등을 감안하여 부채비율 적용기준 및 적용배율을 개선하여 부채비율 요건을 현실화

- 부채비율 적용기준을 동업종 평균부채비율과 전체 주권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 중 높은 비율로 변경(다만, 5사 이하인 경우에는 종래와 동일하게 전체 주권상장법인의 평균부채비율 적용)
- 적용 부채비율을 동업종 (전체)평균의 1.5배에서 2배로 확대

기 준	개 정
동업종 소속 6사 이상 : 업종평균 × 1.5배 미만	동업종 소속 6사 이상 : MAX(업종평균, 전체평균) × 2배 미만
동업종 소속 5사 이하 : 전체평균 × 1.5배 미만	동업종 소속 5사 이하 : 전체 평균 × 2배 미만

○ 회사정리·화의 절차진행 법인의 상장폐지제도 개선

(부칙 4조 2항 : 2004/12/27 개정·시행)

— 회사정리·화의절차 진행으로 퇴출이 유예되고 있는 법인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을 유지하여 자구기회를 부여

-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우량법인 등 투자적격성이 인정되는 법정관리·화의 기업에 대하여는 상장을 유지(관리종목으로 지정)
- 2005년 3월 31일(12월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하여, 200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상장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상장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

기 준	개 정
신규 법정관리·화의기업 : 즉시 퇴출	변경내용 없음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2004년 말까지 상장폐지 유예 : 2004년 말까지 미종결시 상장폐지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2005년 3월 31일까지 상장폐지 유예 : 200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상장요건 미충족시 상장폐지

5.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신규상장 심사수수료의 부과 (19조 3항, 별표 : 2004/5/3 개정, 6/1 시행)

— 부과시기 : 예비심사 청구시

— 부과금액 : 500만원

-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주권의 신규상장을 하는 경우, 신규상장수수료를 면제 또는 신규상장심사수수료를 공제한 신규상장수수료를 부과

- 변경상장수수료 부과기준의 명확화 (별표 : 2004/5/3 개정, 6/1 시행)
 - 감자 및 액면분할 등 변경상장의 사유가 다수이더라도 변경상장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1건의 수수료를 징수
 - 변경상장수수료는 1건당 100만원

- 선박투자회사의 상장신청서, 신고사항 및 상상수수료 관련 규정 신설
 - (1조의12, 10조의4 3항, 별표, 별지4-4호 : 2004/7/28 개정, 8/2 시행)
 - 선박투자회사주권은 일반주권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의 1/3만 징수

- 공시관련벌점제 도입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시기 관련규정 정비
 - (17조 1항 10호 : 2004/7/28 개정, 10/1 시행)
 - 공시규정의 벌점제 도입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시기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에서 벌점부과일로 변경

- 국내외 동시공모상장 관련절차 개선 (1조의6 3호 : 2004/7/28 개정, 8/2 시행)
 - 국내외 동시공모상장시, 외국에서 발행하는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확인을 상장일 전일까지로 하여, 국내외 동시공모시 상장시기를 일치시킴

- 주권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서식의 개정 (별지 1호, 1-1호 서식 : 2004/10/27 개정·시행)
 - 주권 예비상장심사청구법인의 예비상장심사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및 주요항목별 세부내용요약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중합의견 등을 첨부

6. 상장법인 공시규정

○ 수시공시의무사항 중 비율공시기준의 합리성 제고 (4조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기업의 실질규모(위험감내능력)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기준으로 변경하되, 공시사항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비율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특별손익, 시설투자 : 자본금 10%(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대규모법인인 5%) → 자기자본 10%(대규모법인인 5%) 또는 1천억원

(2004/8/2 시행)

- 출자·출자지분 : 자본금 10%(대규모법인인 5%) → 자기자본 5%
-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면제, 손해배상소송, 금전대여, 관계회사부도 : 자본금 10%(대규모법인인 5%) → 자기자본 3%(대규모법인인 1.5%)
- 벌금·과태료, 증여·수증 : 자본금 10%(대규모법인인 5%) → 자기자본 1%(대규모법인인 0.5%)
- 자본잠식법인은 기존대로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인 5%)를 적용

○ 공시의무사항의 추가·삭제·조정 등 재정비 (2004/7/23 개정, 10/1 시행)

—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대두된 사항을 추가(9개 사항)

(4조 1항)

- 대표이사변경, 회계처리기준 위반·최근매출액 50억원 미만, 임직원의 횡령행위(자기자본 1% 이상) 등

—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은 삭제(53개 사항)

(4조 1항, 4조 2항)

- 해외직접투자, 기술도입기간 만료, 손자회사 편입·탈퇴, 파생상품 미결제잔액, 조세범칙 등 조사·조사결과 등의 공시사항을 삭제

— 공시사항 중 타항목과 유사한 사항은 통합하고, 공시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조정(38개 사항) (4조 1항, 4조 2항)

- 손익구조변경공시, 고정자산취득·처분 등

○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범위 축소 (4조의2 : 2004/7/23 개정, 10/1 시행)

—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범위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공시부담완화

- 지주회사 소유 자회사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
→ 10% 이상으로 상향조정

- 단, 자회사 부도·해산·회사정리절차 신청시에는, 모든 자회사를 공시대상으로 함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신고 의무사항 개선 (5조 : 2004/7/23 개정, 2004/8/2 시행)

- 거래신고 대상을 “모든 거래기준”에서 “자기자본 1% 또는 10억원 이상 거래기준”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
- 자산양·수도 사항(일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양·수도는 제외) 및 출자지분처분 사항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사항에 추가

○ 비치공시 의무사항 삭제 (2장 3절 : 2004/7/23 개정, 10/1 시행)

- 2001년 이후 모든 신고공시사항의 완전 전자화로 실효성을 상실

○ 비율기준금액(자기자본, 매출액, 생산액, 자산총액) 및 적용기간 명확화

(2조의2 3항·4항 : 2004/7/23 개정, 10/1 시행)

— 적용기준금액

-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최근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최근사업보고서상 감사의견 한정(범위제한)·부적정·의견거절인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

— 적용기간

- 사업연도 종료후 3월 경과시점부터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 (공시사항 중 당해사업연도의 누적금액의 누계산정기간도 동일하게 적용)

○ 적시공시체계의 구축 (2004/7/23 개정, 10/1 시행)

— 공시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공시시한 단축 (당일 공시화)

- 익일공시사항 중 사업목적변경, 시설투자, 출자, 차입, 회계변경, 손익구조 변경, 증여·수증 등 (25개 항목) (4조 7호의2·21호 ~ 44호)

— 익일공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익일 매매시간 종료(16시) 전까지로 공시시한을 단축 (25조)

- 특허취득, 최대주주·주요주주·계열사 변경, 파생상품 손익발생, 공사수주, 관계회사 부도 등 (12개 항목)

○ 불성실공시대상의 합리성 제고 (2004/7/23 개정, 10/1 시행)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공시사항을 불성실공시대상범위에 추가 (17조 1항)

- 감자·주식소각, 분할·분할합병 : 20% 이상 비율변경시
- 고정자산처분, 공급계약체결,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금전가지급·대여, 증여, 특별손익 : 50% 이상 금액 변경시

— 조회공시 번복금지기간 단축 (6조 2항)

- 30일 → 15일

○ 공시위반에 따른 제재의 차등화 (2004/7/23 개정, 10/1 시행)

— 공시위반사유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을 기존 공시위반회수에서 누적벌점기준으로 변경 (17조의5 2항)

- 벌점부과는 불성실공시내용의 중요도 및 공시지연정도 등에 따라 거래소가 정하는 차등화 기준을 적용

- 불성실공시내용이 허위공시이면 별점을 가중(3~5점)하고, 공시의무 위반시점이 3년 이상 경과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면 별점 미부과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고 기능 강화 (18조)
 - 공시위반시마다 공시위반내용과 누진점수를 공시
- 공시위원회 신설을 통한 제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20조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공시업무를 전담하는 공시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함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 (19조의3 : 2004/7/23 개정, 10/1 시행)
 -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재발방지를 위해 공시위반 누적별점이 10점(관리종목 지정우려단계) 또는 20점(관리종목 지정단계) 해당시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 공시위반개선계획서를 공시(1개월간)하고 미제출시 별점(3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시책임자의 범위 확대 및 공시담당자의 복수화
(2조 2항, 20조의5 1항·2항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공시책임자를 등기이사가 아니라도,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자도 공시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현실화
 - 공시담당자의 공시업무공백으로 인한 공시위반 방지를 위해, 공시담당자를 기존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복수화

- 공시책임자·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20조의5 3항·4항 : 2004/7/23 개정, 10/1 시행)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게 거래소가 지정하는 교육이수의무를 부과
 - 교육 미이수시 공시책임자·담당자 교체요구(불응시 3점 이내의 별점 부과근거 마련)

- 선박투자회사의 수시공시사항 마련 (4조의4 : 2004/7/23 개정, 8/2 시행)
 -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기존 주권상장법인의 수시공시의무사항 적용 외에, 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의무사항으로 함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업무수행을 하므로, 해외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서도 공시의무화

- 선박투자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수시공시항목 신설 (13개 항목 : 2004/7/23 개정, 10/1 시행)
 - 해외자회사 설립결정, 수입분배 결정, 선박의 건조·매매·대선계약의 체결 또는 당해계약의 변경·해지, 차입·사채발행 결정 등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공시사항의 직접공시 근거 마련
 - (3조의2 4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법규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아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거래소가 직접 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송의 제기, 소송허가신청 및 소송허가결정 등

- 상장법인을 상대로 소송제기시 소송관련사항을 공시의무사항으로 규정
(4조 1항 22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을 피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소송관련사항을 공시의무사항으로 규정
 - 소송의 제기(상소 포함) ·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결정, 소송불허가결정, 소송 취하(상소 취하 포함) · 화해 · 청구 포기(상소 포기 포함)의 허가신청 · 결정,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

-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 의결에 대한 거래소의 직접공시 근거 마련
(3조의2 3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검찰고발 · 통보)의결을 거래소가 확인한 시점에서 거래소가 직접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 의결시 조회공시요구를 통해 공시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거래소가 의결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당해 사항을 직접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가 가능하도록 함

- 거래소의 직접공시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20조의2 1항 2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 결의 및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직접 공시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30분간) 근거 마련

7.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불성실공시 제재와 관련된 세부적인 별점부과기준 및 운용방안 마련

(7조의5, 별표 1호 : 2004/9/1 개정, 10/1 시행)

— 공시위반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별점범위 내에서 공시 지연정도(미공시, 자진신고)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별점부과기준 마련

- 중요공시위반(12점~8점) : 12점/10점/8점
- 일반공시위반(10점~6점) : 10점/8점/6점
- 공정공시·자진공시위반 : 5점/3점
- 기타 경미한 공시위반 : 4점/2점
- 동일한 사안이 2가지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별점부과

—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시, 공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중·경감사유가 인정되면, 정해진 별점범위 내에서 별점을 조정

○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7조의2 : 2004/9/1 개정, 10/1 시행)

— 규정상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기준을 정함

-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기준*의 1/2 이상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 증자비율 등 공시내용의 20% 이상 변경 또는 투자금액 등 공시내용의 50% 이상 변경

- 자진공시내용 중 그 비율, 금액, 수량 등을 1/2 이상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사실 및 벌점부과 사실 공표 강화

(8조 : 2004/9/1 개정, 10/1 시행)

기 존	개 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시 : 그 명단 및 지정사유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1년간 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미제출·의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벌점 부과시 : 그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2년간 게재
< 신 설 >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점의 누계를 상시 게재

○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관련 세부사항 마련

(8조의2, 별지 1호 : 2004/9/1 개정, 10/1 시행)

—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거래소 제출요구일로부터 10일 내 (매매거래일 기준)에 거래소 제출을 의무화

- 제출일, 제출법인명
-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 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선계획서 미제출시 벌점(2점) 부과가 가능하나, 동 벌점부과로 당해 법인의 상장주권이 퇴출기준(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 등 개선 (10조 : 2004/9/1 개정, 10/1 시행)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의 의무이수 교육대상 및 교육대상자 등을 명확화

이수교육대상	교육대상자	교육이수기한
① 공시책임자 교육 (거래소·협의회 개설)	공시책임자	연 1회
② 공시담당자 교육 (거래소·협의회 개설)	공시담당자	신규등록일로부터 6월 내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신규 상장일로부터 6월 내)
③ 공시관련 법규설명회 등 (거래소·협의회 개최)	1사당 공시책임 자·담당자 중 1 인 이상	연 1회 (법규설명회 등이 미개최되는 경우에는 제외)
④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공시책임자·공시 담당자	거래소가 정함
⑤ 기타 거래소가 인정하는 교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거래소가 정함

- 공시담당자 복수화에 따라 2004년 10월 1일까지 추가 신규등록하는 공시담당자는 2004년 12월말까지 공시담당자 교육이수를 의무화

— ①~④의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내에 교육을 미이수한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교체요구일로부터 1월 내에 미교체시 벌점(2점)을 부과할 수 있으나, 동 벌점부과로 당해 법인의 상장주권이 퇴출기준(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 가능

○ 매매거래정지 예외기준의 명확화 (9조 2항 : 2004/9/1 개정, 10/1 시행)

— 매매거래정지사유* 중 경미한 공시의무위반사항**에 해당하여 부과벌점이 낮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동 사유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매매거래정지(1일간) 대상에서 제외

* 매매거래정지사유 : 공시번복·변경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중요내용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경미한 공시의무위반사항 : 공정공시, 자진공시, 기공내용의 변동 신고사항 위반 및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

○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조정 (9조 3항 1호 : 2004/9/1 개정, 10/1 시행)

— 매매거래정지 및 중단제도 개선 검토에 따라, 기업의 중요내용 공시(불성실공시 지정예고 포함)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 1시간 → 30분

•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한 최소기간으로 단축하여, 투자자의 환금성 제한을 최소화

○ 일수계산의 적용예외 신설 (12조 2항 : 2004/9/1 개정, 10/1 시행)

—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중요정보 없음"으로 공시) 번복 금지기간(15일 이내)의 산정일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함

— 거래소의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따라 불성실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관련 기간 및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산정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규정 : 2004/9/1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련된 공시사항 등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의 근거 마련
(9조 1항 3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검찰고발·통보) 및 검찰기소사항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의 근거 마련

- 동일 사안에 대한 거래소 및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사항 중, 공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거래를 정지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기·소송허가 신청, 소송허가 결정, 기타 법원의 판결·결정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의 근거 마련

- 동일 사안에 대한 거래소 및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사항 중, 공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거래를 정지

8.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규정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의 제정에 따른 규정제목 및 자구수정

(1조 등 : 2004/7/23 개정, 8/2 시행)

— 규정의 명칭변경

-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 “자산운용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
 - “증권투자신탁회사 등” → “자산운용회사 등”
 - 규정의 근거법률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으로 변경하고, 신탁회사의 의결권행사 공시근거를 신탁업법으로 변경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의 정의 신설 (2조 9항 : 2004/7/23 개정, 8/2 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94조 7항에 의한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
- 의결권행사내용 및 행사여부에 따른 공시사항 구체화
- (4조 1항 1호 ~ 3호 : 2004/7/23 개정, 8/2 시행)
- 의결권 공시사항범위에 임원 해임 및 정관변경을 추가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모든 의결권 행사가능사항에 대하여 공시
 - 의결권 행사시 :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공시
 - 의결권 불행사시 : 행사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
 - 다만, 신탁회사는 신탁업법에 의거,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공시하도록 한정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범위 개정 (2조 7항 : 2004/7/23 개정, 8/2 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서 투자회사의 이사가 법인이사인 자산운용 회사와 감독이사로 구분됨에 따라, 실제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이사를 투자회사의 공시책임자의 범위에 포함

-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문서 제출방법 인정 (3조의2 : 2004/7/23 개정, 8/2 시행)
 - 전자문서로 공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가 가능 하도록 함

- 공시문안조정 삭제 (11조 : 2004/7/23 개정, 8/2 시행)
 - 사전공시문안조정제도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의 공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삭제

9. 공정공시제도 운영기준

- 공정공시 시한에 대한 협회중개시장의 공시규정 준용 (7조 : 2004/9/22 개정, 10/1 시행)
 - 공정공시 시한을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상의 공시시한과 일치시켜 공시규정과 운영기준의 통일을 기함

IV. 증권업협회 규정

1.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코스닥기업의 외자유치 지원 (5조 1항 14호 마목 : 2004/1/30 개정, 2/2 시행)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변동 제한요건의 예외로 인정함

- 지분변동제한 예외조치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취득일로부터 1년간 취득주식의 처분을 금지

○ 벤처금융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지분변동제한 예외 적용

(5조 1항 14호 자목 : 2004/1/30 개정, 2/2 시행)

—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가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분변동 제한요건 예외를 인정

- 단, 최대주주 변동은 금지

○ 합병시 유상증자 초과분 보호예수 신설 (18조의2 1항 : 2004/1/30 개정, 2/2 시행)

— 코스닥기업과 비공개기업과의 합병 또는 주식교환시, 비공개기업의 주주 중 유상증자 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 신설

- 보호예수기간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 코스닥기업의 계속성(매출액) 요건 도입 (23조 1항 1호의2 : 2004/1/30 개정, 2/2 시행)
 -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30억원 미만이 2사업연도 연속되면 퇴출
 - 증권거래소 : 매출액 50억 미만(관리지정), 2사업연도 연속(퇴출)

- 공시위반 퇴출기준의 완화 (28조 1항 6호 가목 단서 : 2004/1/30 개정, 2/2 시행)
 - 공시의무위반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 지정 이후에 발생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퇴출기준을 적용

- 최소주가 및 시가총액 관련 퇴출요건의 개선 (28조 1항 17호, 18호 : 2004/1/30 개정, 2/2 시행)
 - 관리종목 지정후 감자 등의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소주가 및 시가총액 관련 퇴출요건을 개선
 - 관리종목 지정 이후 등록취소까지의 유예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90일 동안 주가가 액면가의 30%(2004/7/1 이후 40%)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또는 3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 회계처리기준 위반 법인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조치 시점 개선

(23조 1항 : 2004/12/24 개정, 2005/1/1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법인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등록예비심사 기각 및 승인효력 불인정 등의 시점을 증선위 의결시점으로 규정

○ 최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매매거래정지조치 시점 개선

(24조 1항 : 2004/12/24 개정, 2005/1/1 시행)

-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증선위의 조치를 받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시점을 증선위의 의결시점으로 규정

2.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주금 납입사실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10조 1항 7호, 12조 1항 12호, 13조 1항 6호 : 2004/1/14 개정 · 시행)

- 신규등록, 변경 및 추가등록시 주금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법인 등기부등본과 별도로 제출
 - 종전에는 코스닥시장의 유상증자 대상주권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변경등록을 승인

○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의 해제시기 명시

(16조 1항 4호 : 2004/1/30 개정, 2/2 시행)

- 주가가 액면가액 일정비율 이상인 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30일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
 - 시가총액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매출액(30억원)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 명시 (16조 1항 1호의2 : 2004/1/30 개정, 2/2 시행)
 - 지정시기 :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시기 :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해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 외국투자자의 주식취득시 보호예수증명서 징구 (3조 2항 9호의2 : 2004/1/30 개정, 2/2 시행)
 - 외국투자자의 취득주식 처분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속보유확약서 및 보호예수증명서를 징구

- 변경등록시 소액공모실적보고서의 징구 (13조 1항 3호 : 2004/1/30 개정, 2/2 시행)
 - 변경(추가)등록 신청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는 해당하나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실적보고서 미제출시에는 보호예수증명서를 징구하여 이에 갈음함

- 주식분산미달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근거서류 명시

(15조 6항 : 2004/1/30 개정, 2/2 시행)

 - 주주명부요약표, 실질주주명부 등 근거서류를 명시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예비심사 청구법인에 대한 전문가집단 의견청취절차 근거규정 마련
(9조의2 2항 : 2004/3/3 개정, 3/15 시행)
 - 등록예비심사 청구법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분석 등 전문적·객관적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집단의 구성 및 의견청취절차를 명시

- 코스닥기업의 결산기 변경시 단기 사업연도 불산입 (16조 8항 : 2004/3/3 개정, 3/15 시행)
 - 협회등록법인의 결산기 변경시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및 등록취소 일부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당해사업연도를 불산입
 - 단기 사업연도 불산입 : 매출액, 경상손실, 시가총액

- 주식분산기준 관련 투자유의종목지정 근거서류 제출시기 변경
(15조 5항 : 2004/3/3 개정, 3/15 시행)
 - 주식분산관련 투자유의종목 근거서류의 제출시기와 시장조치시기 사이의 간격을 줄여 시장조치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근거서류의 제출시기를 변경
 -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투자유의종목 지정·해제시기 개정 (15조 1항 3호 : 2004/4/6 개정·시행)
 - 관계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6% 미만으로 하락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법인이 관계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도사실이 확인된 날의 익일 투자유의종목지정을 해제함

○ 주된 영업활동정지에 해당하는 사유 추가 (5조 3항 2호 : 2004/9/6 개정, 9/7 시행)

—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 제외)으로 주된 영업을 분할로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를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에 해당되는 사유로 추가

- 분할로 인해 존속법인의 실체가 형해화되는 경우, 이를 주된 영업을 정지로 보아 관리종목 지정 및 등록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업종변경기준의 강화 (16조 2항 4호 : 2004/9/6 개정, 9/7 시행)

—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 제외)”으로 주된 영업을 분할로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존속법인의 업종변경을 불허함

- 분할후 실체가 형해화된 존속법인이 업종변경을 통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어 퇴출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관련 업종변경시기의 통일

(5조 4항 2호 : 2004/11/10 개정, 11/11 시행)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관련 업종변경시기를 “당해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로 통일

- 종전에는 업종변경시기가 분할·영업양도의 경우와 합병·영업양수의 경우에 서로 상이하여, 규제의 통일성이 부족하였음

기 존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 영업양도 시 : 당해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 합병, 영업양수 시 : 당해 사업연도 결산종료 후 (감사보고서 제출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시 : 당해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입증 자료가 제출된 때

- 정기 업종변경 심사자료의 제출시기 명시 (5조 7항 : 2004/11/10 개정, 11/11 시행)
 - 정기 업종변경 대상법인은 업종분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
 - 정기 업종변경(사업연도 종료후 5월의 초일)의 원활화를 위하여 업종변경에 필요한 심사자료 제출시기를 명시

3.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유형의 신설 (2조 4호 : 2004/7/23 개정, 7/26 시행)
 - 최유리지정가호가 (타방향 최우선호가가격 지정)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 최우선지정가호가 (동일방향 최우선호가가격 지정)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 매매거래수탁시 거래내용 및 통지방법의 구체화 (12조 3항 : 2004/7/23 개정, 7/26 시행)
 -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및 매수 등의 거래내용
 - 전화, 전보, FAX, 전자통신,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등으로 통지

- 증권회사의 장외거래실적 보고의무 폐지 (48조 : 2004/7/23 개정, 7/26 시행)
 - 증권회사가 매월의 매매거래실적 및 매월말 현재의 등록종목별 상품 보유현황을 협회에 보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

4.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적용예외 요건 신설 (27조의4 : 2004/1/30 개정, 2/16 시행)
 - 직전거래일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신규등록종목의 최초매매일
 - 주식병합 후 최초매매일, 재등록종목의 최초매매일
- 기준가격변동에 따른 거래량 가중평균가격(VWAP) 조정
(27조의3 2항 : 2004/1/30 개정, 2/16 시행)
- 권리락, 배당락, 분배락, 주식분할, 액면분할 등으로 인해 당일의 기준가격 변동시, 전일종가와 당일기준가격의 변동비율만큼 조정된 가격으로 함
- 시간외대량매매 호가가격단위의 세분화 (27조의2 3항 : 2004/1/30 개정, 2/16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매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간외대량매매의 호가가격단위를 1원으로 변경
- 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담보사정가격 신설 (14조의2 : 2004/1/30 개정, 2/16 시행)
-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의 담보사정가격은 청약일 직전에 확정된 발행가액으로 함
-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시 IOC, FOK 체결조건 도입
(5조 13호 : 2004/7/23 개정, 7/26 시행)
- 미체결잔량 즉시취소조건(IOC : Immediate Or Cancel order)

- 당해 주문에 의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 전량즉시체결불가능시 전량즉시취소조건(FOK : Fill Or Kill order)
- 당해주문에 의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수량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 호가입력 제한규정 신설 (18조의2 2항 : 2004/7/23 개정, 7/26 시행)
-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기타 호가 중 IOC 또는 FOK 조건이 부여된 호가에 입력제한 규정을 추가
- 동시호가 참여호가의 접수시간인 경우 호가입력을 제한
- ETF호가가격단위의 단일화 (24조 3항 : 2004/7/23 개정, 8/30 시행)
- ETF의 호가가가격단위를 5원으로 함
- 감리종목지정 해제요건 추가 (39조 : 2004/10/7 개정, 10/11 시행)
- 감리종목지정일로부터 3일 이후 당일의 종가가 감리종목지정일의 전일종가 미만인 경우에도 감리종목 지정을 해제

5.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지주회사의 수시공시 의무사항 신설 (6조 1항 7호 차목 : 2004/1/30 개정, 3/2 시행)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및 탈퇴시 해당 사항을 당일 공시

○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련 수시공시 의무사항 신설 (6조의2 : 2004/1/30 개정, 3/2 시행)

— 지주회사 소유의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인 자회사에 공시의무사항이 발생하거나, 자산총액의 5% 미만인 자회사에 부도·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익일까지 공시

• 다만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부도·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공시

자회사 비중	당일공시	익일공시
10% 이상	부도·해산 등	기타 공시사항
5% 이상	—	모든 공시사항
5% 미만	—	부도·해산 등

○ 대표이사 변경관련 사항의 공시의무화 (6조 1항 2호 차목 : 2004/1/30 개정, 3/2 시행)

— 기존 시장신고사항이었던 대표이사 변경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공시사항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부과

-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관련사항의 공시시한 단축 (6조 1항 : 2004/1/30 개정, 3/2 시행)
 - 상법상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관련 공시사항을 익일공시사항에서 당일 공시사항으로 단축함

- 집단소송법의 시행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반영 (6조 1항 : 2004/12/24 개정, 2005/1/1 시행)
 - 협회등록법인을 피고로 소가 제기된 경우 공시하도록 한 법정공시사항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
 - 집단소송법상의 공시사항은 법원에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법원에서 소송허가결정을 통보한 내용임
 - 집단소송법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은 협회가 직접 공시하고 기타 사항은 당해 법인이 공시하도록 함
 - 기타 사항은 소송불허가 결정·항고, 소취하·화해·청구포기에 대한 법원 허가 및 확정판결 등임

-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 의결시의 공시시점 개선 (2004/12/24 개정, 2005/1/1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증선위가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 공시하도록 규정
 - 증선위의 의결사실 확인시 당해 사항을 협회가 직접 공시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6.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설에 따른 공시시한 개선 (3조 : 2004/1/30 개정, 3/2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설에 따라 당일 공시의무사항에 대한 공시의 무시한을 일부 단축
 - 익일 오전 8:30까지 공시시 당일공시로 의제 → " 7:20까지 "

- 공시번복 적용면제사항의 추가 (8조 : 2004/1/30 개정, 3/2 시행)
 - 등록기업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공시번복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 채권금융기관협회의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 등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등을 요구받은 때
 - 채권금융기관 관리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사실 확인시
 - 자본도입·기술도입 등에 관한 계약의 해지
 - 증여를 받기로 한 때

- 매매거래 정지 등 시장조치 개선 (10조 : 2004/1/30 개정, 2/16 시행)
 -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와 관련한 매매거래 정지 등의 시장조치 근거를 마련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의 편입 및 탈퇴 공시시, 60분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후 거래 재개

- 집단소송법의 시행에 따른 중요사항 공시시, 매매거래 정지근거 신설
 - (10조 1항 9호 : 2004/12/29 개정, 2005/1/1 시행)
 -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일정시간(1시간) 동안 매매거래 정지
 - 다만, 공시의무사항을 협회가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직접 공시하는 경우와 해당기업이 공시하는 경우 중에서 먼저 이행되는 공시에 대해서만 매매거래 정지
 - 중요사항 : 소의 제기·허가신청, 소송허가·불허가 결정,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판결

7.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원화표시채권 발행관련 요건의 신설 (14조의2 : 2004/9/22 개정, 10/1 시행)
 - 금감위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인 원화표시채권발행 관련규정이 협회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신설
 - 원화표시채권발행인 요건 신설
 - 무보증사채의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 유가증권을 등록발행할 것(해외판매채권의 경우 예외)
 - 원화표시채권의 발행인은 외국인일 것
- 실물펀드 상장시의 규칙 적용예외 명시 (2조 : 2004/9/22 개정, 10/1 시행)
 - 선박펀드, 부동산펀드 등 실물펀드 상장시에는 본 규칙의 적용을 배제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정에 따른 용어정비 (2004/9/22 개정, 10/1 시행)
 -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운영되던 사항이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수정함

기 존	개 정
증권투자신탁업법 · 증권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투자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	투자회사
증권투자신탁	투자신탁
고수익증권투자신탁	고수익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협회	자산운용협회

8. 채권장의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국고채권(10년)의 잔존기간 변경 (3조, 4조 : 2004/11/4 개정, 12/1 시행)
 - 국고채권(10년)의 통합발행주기 확대*에 따른 잔존기간 변경
 - (종전) 9년 7월~10년 → (개정) 9년~10년
 - * 통합발행주기 확대 : 6월 → 1년
- CD, CP 수익률 가격발견기능 제고 (4조 : 2004/11/4 개정, 12/1 시행)
 - 종금·은행의 CP 수익률 제출근거 마련

- 증권업계와 함께 CP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은행·종금으로부터 수익률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CP 수익률의 대표성을 강화
- CD기준물의 확대
 - CD기준물을 신용평가등급이 AAA인 시중은행으로 확대
 - * 기존의 국민, 신한, 하나, 한미은행에 조흥, 우리은행이 추가됨
- 극단값 제외기준 완화를 통한 CD, CP 수익률의 변동성 확대
 - 증권회사가 보고한 수익률 중 상하 각 2개 제외
 - " " 각 1개 제외

9.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유가증권의 정의 신설 (1-2조 : 2004/1/13 개정·시행)
 -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유가증권 정의규정을 신설
 -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 유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 위에 준하는 투자물
- 증권회사 직원의 준수 의무 및 제재사유에 선물거래법령 추가

(2004/1/13 개정·시행)

 - 선물관련 부당권유행위 금지 (1-2조 2항)
 - 임직원의 자기매매, 일임매매 금지 (4-6조)

- 투자상담사 용어의 변경 (4-19조 : 2004/1/13 개정 · 시행)
 - 선물·옵션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선물거래상담사로 통일시켜, 1·2종 투자상담사라는 용어를 변경함
 - 1종 투자상담사 → 선물거래상담사
 - 2종 투자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

- 자산관리자의 범위 축소 (1-20조 1항 3호 : 2004/1/13 개정 · 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투자자문회사·신탁회사·연기금 등의 임원 및 재산의 운용 기타 관리에 참여하는 자
 - 종전에는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모두 자산관리자로 규정

- 편익제공의 한도 및 절차 조정 (1-20조, 1-21조 : 2004/1/13 개정 · 시행)
 - 섭외용품 및 식사 등의 제공한도를 상향조정
 - 2만원 → 3만원
 - 편익제공 사전승인권자를 완화
 -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1회당 한도(20만원)를 초과하여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완화
 -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 사후보고 허용

○ 증권회사의 경영건전성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절차·항목 신설

(3-10조 1항 : 2004/3/3 개정, 3/15 시행)

— 증권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공시절차 및 항목 등을 규정

- 공시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 또는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에 공시

○ 비상장·비등록 증권회사의 경영공시 강화 (3-10조 2항 : 2004/3/3 개정, 3/15 시행)

— 비상장·비등록 증권회사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비상장·비등록 증권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주요경영사항을 상장·등록 증권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세부적인 공시절차 및 항목 등을 규정

- 공시사유발생시 해당 사실 혹은 관련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또는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여 공시

○ 자기주식취득(처분) 위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 허용

(1-15조 1항 : 2004/4/26 개정·시행)

— 자기주식취득(처분)위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를 허용하되, 조사분석자료에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함

○ 재무위험관리사에 대한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인정규정 삭제

(4-19조의2 1호 : 2004/4/26 개정·시행)

—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을 불인정하기로 함

- 전담투자상담사의 보수환수사유 확대 (4-34조 2항 : 2004/4/26 개정 · 시행)
 - 전담투자상담사가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실현한 약정을 보수미지급(환수)대상으로 명시

- 고객재산의 투자대상범위의 확대 (2004/7/12 개정 · 시행)
 - 유가증권 → 투자자문자산
 - 투자자문자산 = 투자증권(유가증권, CD 등)+파생금융상품+부동산

- 투자일임업무의 제3자 위탁에 따른 고객보호 근거조항 마련
(2-21조의2 : 2004/7/12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업무를 제3자(투자자문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에 대한 증권회사의 의무를 규정
 - 증권회사는 제3자에 대한 투자일임업무의 위탁 및 제3자의 교체시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
 - 제3자 위탁시 고객에게 투자일임업무 수행에 관한 절차 · 지침, 임직원의 성명 · 경력 등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함
 -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 임직원의 자격요건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자문 전문인력으로 정함
 - 증권회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정함

- 애널리스트 등의 증권업협회 등록의무화 (4-18조 2항 : 2004/8/6 개정, 9/1 시행)
 - 조사분석자료 작성자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 · 승인담당자의 증권업협회 등록을 의무화

- 적격성 심사를 거친 자만이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현재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2004년 8월 31일까지 협회에 등록하도록 함

○ 애널리스트 등의 증권업협회 등록요건 마련 (4-22조 : 2004/8/6 개정, 9/1 시행)

— 투자상담사 및 FP에게 적용하고 있는 결격사유* 준용

* 투자상담사 및 FP의 등록결격사유

-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등록거부기간 미경과자
- 증권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기간 미경과자
- 등록신청일 현재 타 증권회사 재직자

— 조사분석업무의 전문성 및 증권회사의 자율적인 검증관행 등을 고려하여, 애널리스트에 대한 별도의 자격시험제도는 배제함

○ 애널리스트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4-26조 3항 : 2004/8/6 개정, 9/1 시행)

— 애널리스트가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등록효력 정지 조치 부과

- 제재조치 부과시 일정 기간동안 애널리스트로서의 업무수행 불가

○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확인 제도 도입 (1-13조의2 1항 ~ 3항 : 2004/8/6 개정, 9/1 시행)

—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조사분석자료에 기술하도록 함

-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당해 조사분석자료의 변경 등에 관여한 심사·승인담당자가 확인
- 애널리스트의 확인 및 기술내용 예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 ○ ○

-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에 대하여 이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가 확인·기술한 경우에 한하여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가능함
 - 조사분석자료를 당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경우, 조사분석자료에 당해 제3자의 성명(또는 법인명)을 기재하여 공표
- 조사분석자료의 정의 변경 (1-12조 1항 1호 : 2004/8/6 개정, 9/1 시행)
- “증권회사가 작성한 것” → “증권회사 명의로 공표된 것”
 - 작성주체와 관계없이 증권회사 명의로 공표되면, 동 규정상의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 추천의견에 대한 사후검증 제도 강화 (1-18조 3항 : 2004/8/6 개정, 2004/11/1 시행)
- 조사분석법인에 대한 증권회사의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게재대상 기간을 연장
 - 1년간 → 2년간

- 증권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내역을 그래프로 표기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비교편의성을 제고함

- 애널리스트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 (1-14조 1항 : 2004/8/6 개정, 9/1 시행)
 - 조사분석업무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에 대한 증권회사의 부당한 압력 및 권한 행사 금지를 명문화함

- 애널리스트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4-35조 : 2004/8/6 개정, 9/1 시행)
 - 애널리스트의 도덕성 제고 등을 위해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 2년 1회, 8시간

- 증권회사 공표내용의 신뢰도 제고 (6-5조의2 1항 : 2004/11/4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가 공표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순위 등을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순위로 한정
 - 금감원, 협회 기타 증권관계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

-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6-5조의2 2항 : 2004/11/4 개정 · 시행)
 - 협회는 시장점유율 등의 순위를 발표한 증권회사에 대해 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

10.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한국선물거래소의 상장주식 선물거래 취급에 따른 자구수정

(2004/1/15 개정 · 시행)

— 선물·옵션거래시장 개설주체의 변경, 선물거래소 업무규정의 증권거래소 선물·옵션업무규정 편입과정에서 수정된 자구를 별표2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에 반영

-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선물거래소 (1조)
- 유가증권시장 → 선물시장 (1조)
- 매매거래, 매매, 매매 기타 거래 → 거래 (2조 이하)
- 일임매매, 일임매매거래 → 일임거래 (6조)
- 매매체결, 매매보고서 → 거래체결, 거래보고서 (13조)
- 선물·옵션업무규정 → 업무규정 (22조)

○ 기존 상장주식선물거래종목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2조 : 2004/1/15 개정 · 시행)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상장주식선물거래 종목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칙에 따름

○ 신용거래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자율화 (8조 2항 : 2004/6/10 개정 · 시행)

—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던 추가담보 제공기간(4일)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등의 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 (별표5 3조 1항, 7조 2항 2호, 8조 1항·2항, 14조 : 2004/6/10 개정·시행)

— 상장지수 투자신탁 수익증권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 생계형저축의 한도증액 및 가입대상 확대 (별표4 3조 2호, 4조 3호 : 2004/8/4 개정·시행)

— 생계형저축의 가입한도 확대 및 가입대상 확대

• 가입한도 : 2,000만원 → 3,000만원

• 가입대상 : 만 65세 → 만 60세

11.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관한 규정

○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공동운영을 위한 독립적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4조 : 2004/4/1 제정·시행)

— 증권투자상담사 등 다른 증권전문인력자격시험의 시험관리위원회와 별개의 독립적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는 각 협회의 상근임원 2인과 협회별 개별추천위원 각 2인 및 공동위촉위원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

-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운영기준 마련 (9조, 10조, 14조 : 2004/4/1 제정 · 시행)
 - 시험과목은 주가지수선물, 금리·통화선물 및 실무규약 등 3개의 대과목(12개의 세부과목)체계로 편성
 - 시험응시자격은 제한 없음
 - 시험실시방식은 1차의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함
 - 합격기준은 3개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으로서, 총점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12. 증권전문인력 시험에 관한 규정

-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시행 관련용어 정비 (2조, 3조, 4조 등 : 2004/4/1 개정 · 시행)
 - 2종 투자상담사(Investment Counselor Series II)
 - 증권투자상담사(Certificated Securities Investment Consultant)
 - 1종 투자상담사(Investment Counselor Series I)
 - 선물거래상담사(Certificated Futures Consultant)

- 재무위험관리사 자격 관련 내용 정비 (4조 : 2004/4/1 개정·시행)
 -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의 공동주관에 따라 재무위험관리사 시험합격자에 대한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인정제도를 폐지
 -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에서 경력요건을 폐지

13.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4조, 5조 : 2004/11/4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분쟁조정위원회는 협회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 1인과 협회장이 위촉하는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위원으로 함
 - 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 협회 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 분쟁조정 신청 (10조 ~ 13조 : 2004/11/4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협회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이유 및 상대방 등을 기재한 분쟁조정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 분쟁조정신청의 처리 절차 (14조 ~ 19조 : 2004/11/4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당사자간의 합의 권고

- 협회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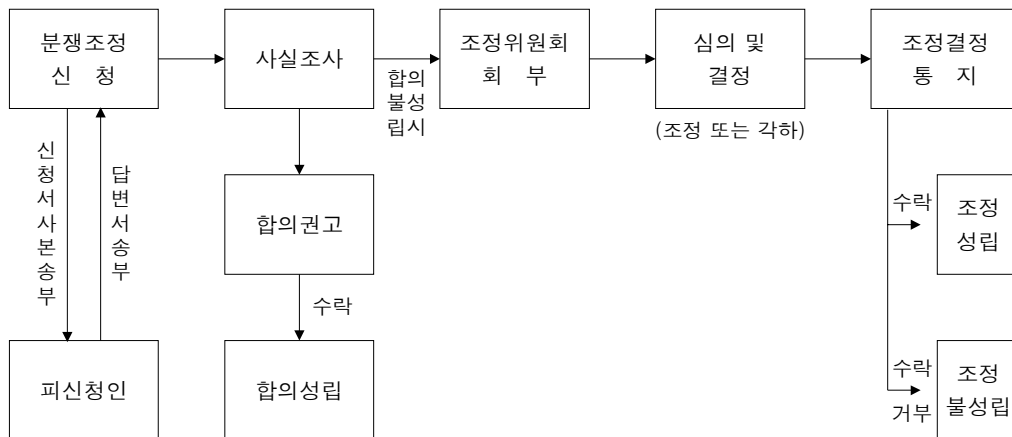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부

- 협회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회부사실, 위원명단 및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통지

—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15일 이내에서 기한연장 가능

< 증권업협회의 분쟁조정업무의 처리절차 >



○ 분쟁조정 및 조정의 효력 (20조, 21조 : 2004/11/4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당사자가 조정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날인하여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성립

- 당사자가 분쟁조정안 수락시, 민법상의 “사적화해계약”의 효력인정

- 재조정신청 (22조 : 2004/11/4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 시행)
 - 분쟁조정신청의 당사자는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신청 가능

V. 증권예탁원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간접투자재산의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신설 (3조, 7조의2, 12조, 13조, 23조의5, 23조의7, 23조의9, 23조의10, 23조의11 ~ 23조의23 : 2004/3/29 개정, 4/1 시행)

— 예탁대상유가증권에 “간접투자증권”을 추가

— 간접투자재산(유가증권)의 간접투자기구별 예탁

- 간접투자기구별 예탁을 위하여 간접투자기구원장을 작성·관리함
- 간접투자재산(유가증권)의 예탁 및 계좌대체의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자계좌부 및 간접투자기구원장에 기재

— 간접투자재산(유가증권)의 간접투자기구별 결제

- 간접투자재산 결제를 위하여 기관결제와 채권장외결제를 “기관투자자결제”로 통합하고, 이를 “주식결제, “채권결제” 및 “어음결제”로 구분하여 운영
- 기관투자자결제는 유가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방식으로 참가자가 정한 결제일의 오후 5시까지 처리
- 주식결제, 채권결제 및 어음결제의 업무처리절차를 정비
- 기관투자자 결제업무참가자는 결제대리인 및 운용업무대리인을 지정 가능

○ 간접투자증권의 예탁·반환·계좌대체의 특례 (12조, 16조, 19조, 21조 : 2004/3/29 개정, 4/1 시행)

- 간접투자증권은 최초판매회사를 통하여만 예탁·반환
- 간접투자증권의 계좌대체 또는 질권의 설정·말소 청구는 최초판매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간접투자증권의 청약·환매 방법 및 절차 규정 (23조의31 ~ 23조의33, 23조의35, 23조의37, 23조의38 : 2004/3/29 개정, 4/1 시행)

- 청약·환매업무의 참가에 관한 사항을 상장지수간접투자증권 청약·환매업무 참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 상장지수간접투자증권 청약·환매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간접투자증권 청약·환매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
- 기타 특수한 간접투자기구(모자형·전환형)의 청약·환매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간접투자증권의 권리행사 (42조의2 : 2004/3/29 개정, 4/1 시행)

- 예탁된 간접투자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예탁주권의 권리행사 방법을 준용

○ 간접투자기구 예탁결제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 연기

(부칙 : 2004/6/29 개정, 7/1 시행)

- 2004년 7월 1일 → 동 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날

-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업무취급시간 변경 (5조 1항, 부칙 2조 : 2004/6/29 개정, 7/1 시행)
 - 토요일은 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함
 - 업무취급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5시 (현행과 동일)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채권결제대금 주선거래의 시행근거 마련 (28조의10 : 2004/10/5 개정, 10/12 시행)
 - 규정 23조의7에 근거하여, 증권예탁원이 채권결제대금의 차입을 주선
 - 반대매도의 약정(반대매도거래)이 있는 매수거래에 대해서만 가능

- 차입과 상환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반영 (28조의11, 28조의12 : 2004/10/5 개정, 10/12 시행)
 - 결제대금 차입자는 매수채권을 대여자에게 담보로 제공
 - 대여금의 지급과 담보의 인도는 동시결제로 처리

3.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위임에 의한 고객소유 유가증권의 대여 근거명시 (13조 2항 3호 : 2004/2/10 개정, 3/2 시행)
 - 참가자가 고객의 위임을 받아 당해 고객소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대차증권 상환연기 신청기한 및 동의기한 조정 (21조의7 : 2004/2/10 개정, 3/2 시행)
 - 차입자의 상환연기 신청기한 조정
 - 경쟁거래 및 지정거래 :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4영업일전까지
 - 맞춤거래 : 상환일까지
 - 대여자의 상환연기 동의기한 조정
 - 경쟁거래 및 지정거래 :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까지
 - 맞춤거래 : 상환일까지

- 대차증권의 배당금 등 지급방식 개선 (27조 : 2004/2/10 개정, 3/2 시행)
 - 대차증권에 신주인수권증서가 부여된 경우 이를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함
 - 맞춤 거래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상호합의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맞춤거래 합의종료의 사유 및 절차의 구체화 (9조의6 2항 : 2004/2/12 개정, 3/2 시행)
 - 참가자의 부도·파산 또는 대차증권의 유동성 부족 등의 경우에 한하여 합의종료 인정
 - 맞춤거래 합의종료 인정시 대여자 및 차입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 담보평가방법 조정 (별표 1 : 2004/2/12 개정, 3/2 시행)
 - 금융채, 회사채, 간접투자증권, 기업어음의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을 조정

- 채권대차수수료의 산정방식 변경 (14조 1항 : 2004/6/10 개정, 9/13 시행)
 - 채권대차수수료에 한하여, 대차거래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2일 이상인 채권대차거래에 대해 종료일을 거래기간에서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

5.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 투자회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한도 폐지 (22조의2 : 2004/3/29 개정, 4/1 시행)
 -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수료의 최고금액 한도(700만원)를 폐지

○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제청구내역의 판매회사 통지

(29조의2, 36조 : 2004/3/29 개정, 4/1 시행)

— 비상장·비등록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사고신고, 공시최고 신고, 압류·가압류·가처분명령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최초판매 회사에 통지

- 이를 위하여 비상장·비등록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청구시 청구인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증권예탁원에 제출

○ 투자회사 주주명부의 관리업무 추가 (42조, 44조의3 : 2004/3/29 개정, 4/1 시행)

— 비상장·비등록 투자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의 취득일자 및 최초판매 회사명을 추가로 기재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의 이익분배금, 청산분배금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에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증권예탁원은 당해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수를 위탁회사에 통지

6.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 규정의 명칭 변경 (2004/3/29 개정, 4/1 시행)

—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을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간접투자재산의 간접투자기구별 예탁에 관한 규정 신설

(6조의2, 12조 1항, 13조 1항 : 2004/3/29 개정, 4/1 시행)

- 간접투자기구별 예탁을 위하여 간접투자기구 원장을 작성·관리함
- 간접투자재산결제의 경우 계좌대체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 간접투자재산의 간접투자기구별 결제에 관한 사항 신설

(14조의2, 19조의2 : 2004/3/29 개정, 4/1 시행)

-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중 채권결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

7.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 콜자금과 담보의 동시결제에 대한 예외 인정 (10조 3항 단서 : 2004/7/21 개정, 8/10 시행)

- 콜자금과 담보의 동시결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담보콜거래 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시기에 이행하기로 정한 경우 분리결제를 허용

○ 상환결제시한 변경 (11조 3항 : 2004/7/21 개정, 8/10 시행)

- 오후 2시 30분 → 오후 5시로 연장

8.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

- 동시결제 예외시의 결제방법 (7조 3항 : 2004/7/22 개정, 8/10 시행)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과 담보납부를 다른 시기에 이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분리결제를 허용
 - 자금대여자는 자금차입자에게 거래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른 조문 수정 (10조 3호, 12조 2항 3호 : 2004/7/22 개정, 8/10 시행)
 - 수익증권 → 간접투자증권

9. 일반사무수탁업무규정

- 규정의 명칭 변경 (2004/3/29 개정, 4/1 시행)
 - 「일반사무수탁업무규정」을 「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으로 변경

- 결산서류 작성시기 변경 (일반사무수탁업무규정 9조 : 2004/3/29 개정, 4/1 시행)
 - 증권예탁원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위탁회사의 이사회 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탁회사에 제출

- 기준가격 공고·게시방법 신설 (14조 3항 : 2004/3/29 개정, 4/1 시행)
 - 투자회사재산의 회계처리 결과에 따라 산출한 투자회사 주식가격을 증권예탁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게시

10. 수익자명부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수익자명부관리의 업무범위 (3조 : 2004/3/29 제정, 4/1 시행)
 - 수익자명부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서 증권예탁원에 부여한 업무로 규정
 - 수익자명부의 작성
 - 수익증권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말소, 신탁재산의 표시·말소 처리
 - 사고증권의 처리
 - 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
 - 위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수익자명부의 작성 (6조, 7조 : 2004/3/29 제정, 4/1 시행)
 - 수익자명부는 투자신탁별로 수익자의 주소, 성명, 수익권의 좌수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함
 - 증권예탁원은 기준일의 수익자별 수익권 좌수를 자산운용회사에 통지

- 수익자명부 관련 청구·신고 (8조 ~ 20조 : 2004/3/29 제정, 4/1 시행)
 - 수익증권의 명의개서 등 청구·신고에 관한 사항을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상 주식에 준하여 규정
 - 명의개서
 - 질권의 등록·말소
 - 신탁재산의 표시·말소
 - 사고·공시최고의 신고
 - 위·변조 및 제권판결시의 처리 등
 - 증권예탁원은 비상장·비등록 수익증권의 명의개서 등 청구·신고내역을 판매회사에 통지
 - 수익증권의 명의개서 등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

-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총회결과의 통지 (21조, 22조 : 2004/3/29 제정, 4/1 시행)
 - 증권예탁원은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일시 등을 기재한 통지서, 의결권행사서면 및 참고자료를 수익자에게 통지
 - 자산운용회사 등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일시 등을 증권예탁원에 통지
 -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에서 보수·수수료의 인상 및 합병에 따른 수익증권의 배정사항 등을 의결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은 그 내역을 수익자에게 통지